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542-10

국 가 통 계 승 인 번 호

제 1 1 7 1 0 8 호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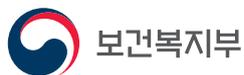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Contents

용어설명 23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31
주요 현황 39

제1장 서론 53

1. 발간목적 55
2. 법적근거 56
3. 자료수집 및 분석 56
4. 주요 분석항목 56



제2장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59

1. 신고접수 61

 가. 전체 신고접수 61

 나. 월별 신고접수 63

 다.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64

 라. 일반사례 신고접수 65

2. 신고접수 방법 66

3. 신고자 66

 가. 전체 신고자 유형 66

 나. 신고의무자 유형 69

 다. 비신고의무자 유형 71

제3장 장애인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75
1. 학대조사	77
가. 전체 학대조사	77
나.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78
2. 사례판정	79
가. 전체 사례판정	79
나.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80
3. 상담 및 지원	81
가. 전체 상담 및 지원	81
나.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82
4. 사례종결	83
5. 지역·기관별 상담원 1인당 담당사례	84



제4장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87

1. 인구사회학적 요인 89

 가. 피해장애인 89

 1) 피해장애인 성별 89

 2) 피해장애인 연령 90

 3)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및 정도 91

 4) 피해장애인 거주형태 94

 5)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94

 나. 학대행위자 95

 1) 학대행위자 성별 95

 2) 학대행위자 연령 96

 3)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97

 4) 학대행위자와 신고의무자 여부 100

 5) 학대행위자와 신고의무자 직군 101

 6)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동거여부 102

2. 장애인학대 발생현황	103
가.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103
나.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105
3. 장애인학대 유형	106
가. 장애인학대 유형	107
1)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07
2)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08
나. 장애인학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109
1)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09
2)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110
3)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11
4)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112
5)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12
다.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114
라.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116
마.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117



4.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117
가. 응급조치	117
나. 피해장애인 지원	119
다.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122
라. 사례종결	124
마. 사후 모니터링	124

제5장 특성별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127

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129

 가.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130

 나.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131

 다.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133

 1)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133

 2)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거주유형 134

 3)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34

 라.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135

 1)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135

 2)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36

 마.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현황 138

 1)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138

 2)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140

바.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141
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41
2)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42
사. 발달장애인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143
1)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143
2)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143
3) 발달장애인 학대유형별 지속기간	144
4)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44
아. 발달장애인 학대 사례지원	146
1)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146
2)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146

2. 노동력 착취사례	148
가.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149
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149
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150
3)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151
4)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51
나. 노동력 착취 행위자	152
1)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152
2)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153
3)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54
다. 노동력 착취 발생 현황	156
1)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156
2)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157
라.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사례지원	158
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158
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158



3.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159
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59
1)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59
2) 지역별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160
나. 집단이용시설사례 피해장애인	161
1) 시설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61
2) 시설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162
3) 시설유형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163
다.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신고자	164
라.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학대 지속기간	166
마.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66
1)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66
2)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68
바.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170
1)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170
2) 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72
사.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173
1) 시설유형별 응급조치	173
2)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173

제6장 정책 제언 177

부록 187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및 현황 189

표 목차

[표 1-1]	주요 분석항목	57
[표 2-1]	신고접수	62
[표 2-2]	월별 신고접수	63
[표 2-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64
[표 2-4]	일반사례 신고접수	65
[표 2-5]	전체 신고접수 방법	66
[표 2-6]	신고자 유형	67
[표 2-7]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70
[표 2-8]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72
[표 3-1]	전체 학대조사	77
[표 3-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78
[표 3-3]	전체 사례판정	79
[표 3-4]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80
[표 3-5]	2019년에 실시한 상담 및 지원	81
[표 3-6]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82
[표 3-7]	사례종결	83
[표 3-8]	지역·기관별 상담원 1인당 상담 및 지원	84
[표 4-1]	피해장애인 성별	89
[표 4-2]	피해장애인 연령	90
[표 4-3]	장애인등록 여부	91
[표 4-4]	피해장애인 주장해유형	92
[표 4-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93

[표 4-6]	피해장애인 거주형태	94
[표 4-7]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94
[표 4-8]	학대행위자 성별	95
[표 4-9]	학대행위자 연령	96
[표 4-1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98
[표 4-11]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100
[표 4-12]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 직군	101
[표 4-13]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동거여부	102
[표 4-14]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104
[표 4-15]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106
[표 4-16]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07
[표 4-17]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08
[표 4-18]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09
[표 4-19]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110
[표 4-20]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11
[표 4-21]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112
[표 4-22]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13
[표 4-23]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114
[표 4-24]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116
[표 4-25]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117
[표 4-26]	응급조치	118
[표 4-27]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19
[표 4-28]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120
[표 4-29]	지역 · 기관별 상담 및 지원	123

[표 4-30]	사례종결	124
[표 4-31]	사후 모니터링	124
[표 5-1]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130
[표 5-2]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132
[표 5-3]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133
[표 5-4]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거주유형	134
[표 5-5]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34
[표 5-6]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135
[표 5-7]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37
[표 5-8]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138
[표 5-9]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140
[표 5-10]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41
[표 5-1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42
[표 5-12]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143
[표 5-13]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143
[표 5-14]	학대발생 지속기간별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144
[표 5-15]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45
[표 5-16]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146
[표 5-17]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유형	147
[표 5-18]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147
[표 5-19]	노동력 착취 발생	148
[표 5-2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149
[표 5-2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150
[표 5-2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151

[표 5-23]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151
[표 5-24]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152
[표 5-25]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153
[표 5-26]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 관계	154
[표 5-27]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156
[표 5-28]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157
[표 5-29]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158
[표 5-3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58
[표 5-3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158
[표 5-32]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60
[표 5-33]	지역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61
[표 5-34]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62
[표 5-35]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162
[표 5-36]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163
[표 5-37]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163
[표 5-38]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신고자	165
[표 5-39]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학대 지속기간	166
[표 5-40]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67
[표 5-41]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68
[표 5-42]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170
[표 5-43]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72
[표 5-44]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응급조치	173
[표 5-45]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173
[표 5-46]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사법지원	174

그림 목차

[그림 2-1]	신고접수	62
[그림 2-2]	월별 신고접수	63
[그림 2-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65
[그림 2-4]	신고자 유형	67
[그림 2-5]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71
[그림 2-6]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72
[그림 3-1]	전체 사례판정	79
[그림 3-2]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81
[그림 3-3]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83
[그림 3-4]	지역·기관별 상담원 1인당 상담 및 지원	85
[그림 4-1]	피해장애인 성별	89
[그림 4-2]	피해장애인 연령	90
[그림 4-3]	장애인등록 여부	91
[그림 4-4]	피해장애인 주장애유형	93
[그림 4-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93
[그림 4-6]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94
[그림 4-7]	학대행위자 성별	95
[그림 4-8]	학대행위자 연령	96
[그림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대분류)	99
[그림 4-1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99
[그림 4-11]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100
[그림 4-12]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 직군	102

[그림 4-13]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104
[그림 4-14]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105
[그림 4-15]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07
[그림 4-16]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08
[그림 4-17]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109
[그림 4-18]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110
[그림 4-19]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115
[그림 4-20]	응급조치	118
[그림 4-21]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21
[그림 4-22]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122
[그림 5-1]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133
[그림 5-2]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135
[그림 5-3]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136
[그림 5-4]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139
[그림 5-5]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140
[그림 5-6]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41
[그림 5-7]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42
[그림 5-8]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146
[그림 5-9]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유형	147
[그림 5-10]	노동력 착취 발생	148
[그림 5-1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149
[그림 5-1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150
[그림 5-13]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152
[그림 5-14]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153

[그림 5-15]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155
[그림 5-16]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156
[그림 5-17]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157
[그림 5-18]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159
[그림 5-19]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60
[그림 5-20]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167
[그림 5-21]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169
[그림 5-22]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171





용어설명

용어설명

기본개념

- ▶ 장애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를 말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 장애유형: 장애유형은 15가지로 구분됨
 -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
 -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구분		장애유형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	정신장애

- ▶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그리고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 ▶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개편됨. 기존 1~3등급의 장애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으로, 4~6등급의 장애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변경됨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피해자 지원 등의 장애인학대 대응 업무와 예방업무를 수행
- ▶ 장애인학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유형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 정서적 학대: 언어적인 방법(폭언, 협박, 비하 등)이나 비언어적인 방법(무시, 비웃음 등) 등 다양한 형태로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심한 수치심,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적 학대: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의 성적 착취, 성희롱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 경제적 착취: 장애인의 금전, 가치 있는 물건 등 재산을 힘으로 빼앗거나 장애인을 속여서 스스로 내어놓도록 함으로써 행위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행위
 - 유기·방임: 유기는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후견인 등)이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방임은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
- ▶ 중복 학대: 하나의 학대사건에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의 여러 학대유형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함
- ▶ 노동력 착취: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함
- ▶ 피해장애인: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
- ▶ 학대행위자: 장애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계층으로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애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및 제2조 제1호)
- ▶ 집단이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과 같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유치원이나 학교 같은 교육기관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곳을 말하며 미신고시설도 실제 다수가 이용할 경우 집단이용시설로 봄

신고접수

- ▶ 신고접수: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알게 되는 것
- ▶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신고내용에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례
- ▶ 일반사례: 장애인학대가 의심되지 않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차별 관련 사례, 복지 및 일반 법률상담이나 기관문의 등 정보제공이 필요한 사례, 불만이나 하소연을 토로하여 위로나 인정 등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사례, 장애인학대와 무관한 개인 간의 다툼이나 분쟁과 관련된 사례
- ▶ 신고접수 방법
 - 내방신고: 신고자 또는 피해장애인 등이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접수 방법
 - 인지신고: 언론, 외부회의, 출장 등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장애인학대 사건을 알게 되는 경우의 접수 방법
- ▶ 신고의무자: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함.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
- ▶ 비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

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 ▶ 학대조사: 신고접수 된 사례의 피해자에게 장애인학대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 ▶ 응급조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한 곳에서 일시 보호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검사, 치료를 받게 하는 조치(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 ▶ 사례판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장애인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비학대사례로 판정하고 있음
- ▶ 사례회의: 신고접수 된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사례를 내부적으로 공유·논의하고 사례지원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결정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회의

-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하여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외부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위원회(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 제4호).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장애인 당사자, 관계공무원, 장애인 복지 및 법률·의료·인권활동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장애인학대 해당 여부, 학대행위자나 가족 등 관련자들의 의견 청취, 사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함. 위원회의 명단과 발언 등 회의내용은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비공개로 함
- ▶ 장애인학대사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
- ▶ 잠재위험사례: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 비학대사례이지만 향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
- ▶ 비학대사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
- ▶ 학대 발생장소: 장애인학대가 일어난 장소
- ▶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최초 학대가 시작된 시점부터 발견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 장애인학대 발생빈도: 장애인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도를 말함

피해자 등 지원

- ▶ 피해장애인 지원: 사례 판정 이후 학대로 인한 후유증의 감소, 학대의 재발 방지, 피해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으로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기타지원으로 분류
 - 의료지원: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 등의 치료와 피해의 회복을 돕는 것으로 통원치료나 검진 등을 말함
 - 심리지원: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심리진단, 심리상담,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함
 - 거주지원: 피해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는 지원으로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신청 등이 이에 해당함
 - 사법지원: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학대로 인하여 피해장애인이 입게 된 손해의 회복, 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견인 선임 등 사법절차와 관련된 지원을 말함
 - 복지지원: 장애인등록,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제도, 활동지원서비스, 취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것을 말함
 - 기타지원: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 간 중개, 피해장애인에 대한 교육 연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감사나 행정처분 요구, 피해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이뤄지는 상담 등을 말함

- ▶ 상담 및 지원: 신고접수 이후부터 사례종결 전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이 실시하는 피해장애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구체적인 피해장애인 지원 활동을 통칭
- ▶ 사례종결: 피해자 등의 지원 절차를 끝내는 것을 의미하며 필요한 지원이 완료되었거나, 지원이 불가능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경우, 타 기관에서 이미 피해자 지원이 실시되어 지원이 불필요한 경우, 타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사례가 이관된 경우에 사례를 종결함
- ▶ 사후 모니터링: 사례종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장애인의 안전과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관리 업무를 말함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절차

사례지원 개요

사례지원이란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의 접수, 장애인학대조사, 응급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회복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장애인학대사례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개입절차 전반을 말한다.

사례지원의 대상에는 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과 가족, 보호자, 학대행위자가 포함되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3에 따라 피해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례지원의 대상이 된다.

사례지원은 피해장애인의 입장에서 피해장애인의 권리와 이익에 부합하게 진행되며, 그 과정은 피해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내된다. 또한 피해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피해장애인의 의사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보호자의 의사나 욕구를 우선하지 않는다. 사례지원은 장애인학대사례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장애인학대를 예방하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옹호활동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건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사례지원 과정에서 피해장애인,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절차

장애인학대 의심사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접수 → 조사 → 사례판정 → 피해자 등 지원 → 사례종결 → 사후 모니터링’의 절차로 진행된다.

▶ 신고접수

누구나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장애인학대 신고전화(1644-8295)를 이용하여 장애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전국 18개(2019. 12. 31.기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신고를 접수받으며, 신고자의 위치로부터 가까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전화가 연결된다. 근무시간 이외 야간이나 휴일에는 112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화 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온라인 신고, 직접 기관을 찾아 오는 방문 신고, 문자메시지, 서신 등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 조사

신고접수를 받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신고 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학대조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을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학대조사 시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 등 관련자를 면담하는데, 조사나 질문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으며 피해장애인 및 관련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자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학대조사 시 피해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안전한 곳으로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는 쉼터 등에서 보호할 수 있다. 응급조치 시 성인인 피해장애인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 학대행위자는 물론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 사례판정

학대조사 이후 해당사례가 학대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부절차인 사례회의를 개최하여 학대여부를 판정한다. 사례회의에서 판정이 어려운 경우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학대여부를 판정할 수 있으며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회의 결과를 따른다.

▶ 피해자 등 지원

장애인학대사례로 판정되면 피해장애인과 충분한 상담을 실시하여 피해사실의 확인, 지원과정, 내용,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학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의료지원, 심리지원, 거주지원, 사법지원, 복지지원, 기타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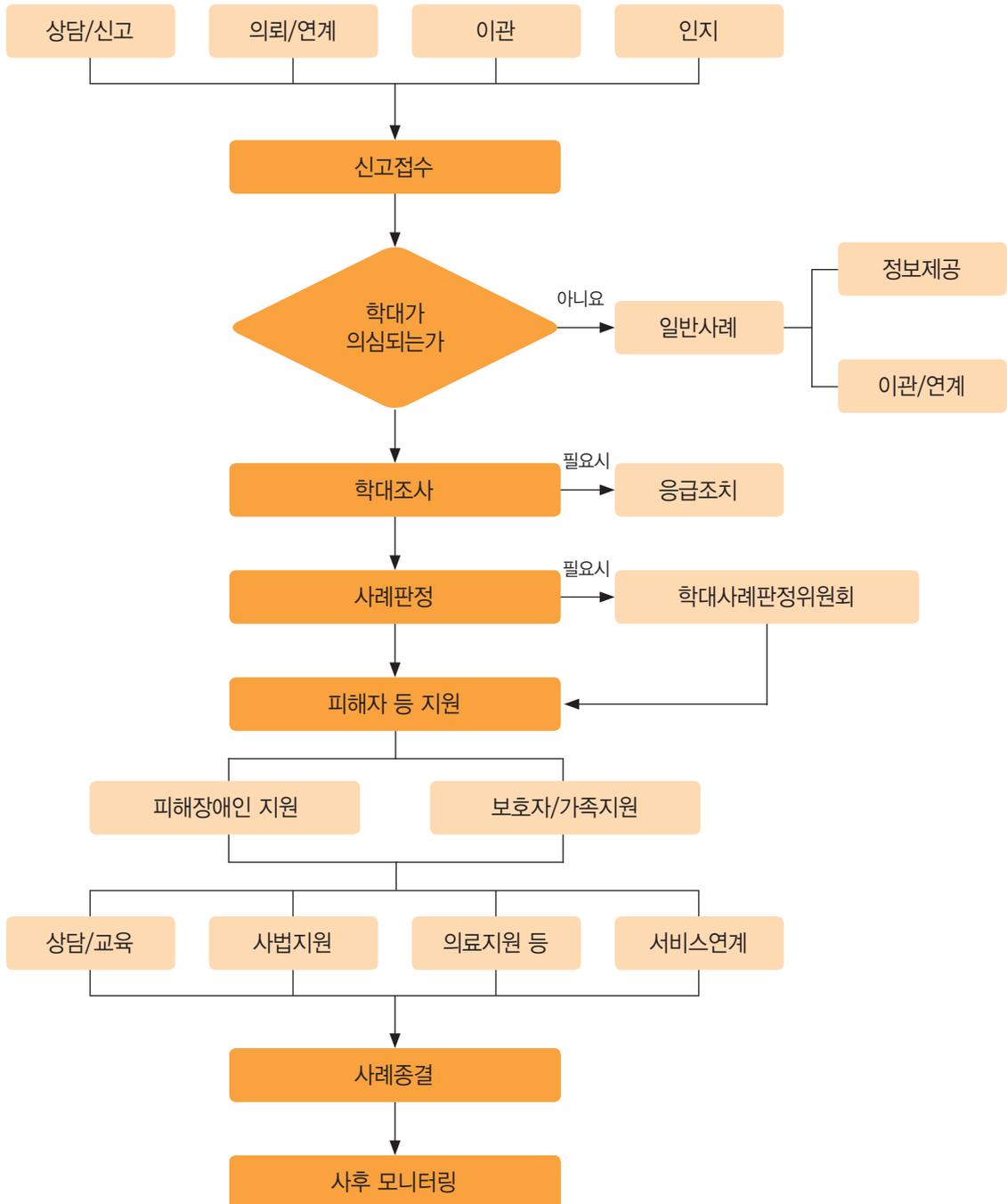
▶ 사례종결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이 마무리되면 사례회의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 완료되었는지 평가하고 사례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 지원 계획을 수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실시한다.

▶ 사후 모니터링

사례를 종결하기로 결정되면 사례종결 이후 일정기간 동안 피해장애인의 재학대 발생 여부나 안정적인 생활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모니터링의 방법, 기간 등 모니터링의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획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료한다.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체계도









주요 현황

주요 현황

- * ** 본 보고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 된 4,376건의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향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업방향과 장애인학대 대응·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 * ** 본 보고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피해장애인 및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분석, 장애인학대 발생현황,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노동력 착취사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를 분석함
- * ** 일부 항목의 경우 각 유형별 현황의 숫자가 많지 않아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항목 간 비교를 통해 많고 적음을 통한 의미 부여보다 추이 파악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을 당부함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신고접수

- ▶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는 전년도(3,658건)보다 19.6% 증가한 총 4,376건임
 - 학대의심사례 1,923건(43.9%), 일반사례 2,453건(56.1%)
- ▶ 지역별 신고접수는 경기도가 981건(2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서울 767건(17.5%), 부산 347건(7.9%) 순이었음
 - 전체 사례 중 학대의심사례의 신고접수는 경기 397건(20.6%), 부산 169건(8.8%) 등의 순이었음

신고접수 방법

- ▶ 신고접수는 전화로 접수되는 경우가 3,524건(80.5%)으로 가장 많았고, 인지신고 249건(5.7%), 내방신고 235건(5.4%) 등의 순이었음

신고자

- ▶ 전체 학대의심사례 1,923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858건(44.6%)이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건(55.4%)임
 - 신고의무자 21개 직군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43.2%(371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35.9%(308건) 등의 순이었음

장애인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 ▶ 학대조사는 학대의심사례로 접수된 1,923건 중 1,721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율은 89.5%로 전년도 조사율(80.6%) 대비 8.9%p 증가한 수치임
- ▶ 학대의심사례 중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945건(49.1%)이며 비학대사례는 783건(40.7%), 잠재위험사례는 195건(10.1%)으로 나타남

상담 및 지원/ 사례종결

- ▶ 2019년 신규 접수사례(1,923건)와 2018년에 접수되어 2019년에 진행 중인 사례(387건) 총 2,310건에 대해 총 24,785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으며 사례 1건당 지원횟수는 평균 10.7회로 나타남
- ▶ 2019년 접수된 학대의심사례의 종결은 총 1,412건이며,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은 73.4%임

지역 및 기관별 상담원 1인당 담당사례

- ▶ 2019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 54명은 총 2,310건의 사례를 담당했으며, 상담원 1인당 평균 42.8건의 사례를 담당, 평균 459.0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함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학대의심사례 중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 945건에 대한 분석 결과임

피해장애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 ▶ 성별 및 연령
 - 피해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52.5%(496명)로 여성 47.5%(449명)보다 5.0%p 높게 나타남
 -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20대 21.7%(205명), 30대 18.6%(176명) 등의 순이었음
- ▶ 장애 유형 및 정도
 - 피해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885건(93.7%)이며, 장애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는 6.3%(60건)이었음
 - 피해장애인의 주장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65.9%(623건)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 7.1%(67건), 뇌병변장애 6.1%(58건), 정신장애 5.8%(55건) 등의 순이었음
 - 피해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은 96.4%(853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은 3.6%(32건)임

학대행위자 인구사회학적 요인

- ▶ 성별 및 연령
 - 학대행위자 성별은 남성이 660명(69.8%)으로 여성 273명(28.9%)보다 약 2.4배 이상 많았음
 - 학대행위자 연령은 50대가 24.4%(231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3.6%(22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를 보면 학대행위자는 타인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관종사자, 가족 및 친인척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지인, 부모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타인의 경우는 지인이 18.3%(173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모르는 사람이 6.8%(64건) 등의 순이었음
 - 기관종사자의 경우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가 7.3%(69건) 등의 순이었음

- 가족 및 친인척의 경우는 부모가 12.0%(113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가 4.4%(42건) 등의 순이었음

▶ 학대행위자의 신고의무자 여부 및 직군

- 학대행위자가 신고의무자인 경우는 30.1%(284건)로 10건 중 3건이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 21개 직군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학대행위자인 경우는 84.9%(241건)로 가장 많았음.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64.4%(183건),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가 20.4%(58건)로 나타났음

장애인학대 발생현황

- ▶ 장애인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의 거주지가 32.8%(310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이 31.2%(295건)로 많았음
- ▶ 장애인학대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인 36.9%(349건)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는 5년 이상 장기간 학대에 노출된 사례가 20.1%(190건)로 많았음
- 장애인학대 발생 지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장애인학대 발생빈도는 1~2회가 87.3%(248건)로 가장 많았음
- 반면, 장애인학대 발생 지속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장애인학대 발생빈도는 거의 매일이 48.8%(103건)로 가장 많았음

장애인학대 유형

▶ 중복 학대 분류에 따른 학대유형

- 중복 학대를 하나의 학대유형으로 분류하여 학대 유형을 분석한(945건) 결과, 중복 학대가 25.8%(244건)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착취 24.4%(231건), 신체적 학대 24.1%(228건), 성적 학대 9.5%(90건), 정서적 학대 9.3%(88건), 방임 6.3%(60건), 유기 0.4%(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복 학대를 하나의 학대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학대 유형을 분석(1,258건)한 결과, 신체적 학대가 33.0%(415건)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착취 26.1%(328건), 정서적 학대 20.1%(253건), 방임 10.2%(128건), 성적 학대 9.5%(119건), 유기 1.2%(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각각 하나의 유형으로 본 1,258건에 대해 분석함
-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중 지체장애인은 신체적 학대 · 경제적 착취가 각각 29.3%(24건)로 가장 많았음

-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적 학대 38.0%(30건), 정서적 학대 22.8%(18건)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지적장애인은 신체적 학대 32.5%(268건), 경제적 착취 27.3%(225건)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자폐성 장애인은 신체적 학대 51.0%(26건), 정서적 학대가 19.6%(10건)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정신장애인은 경제적 착취 32.1%(26건), 정서적 학대 24.7%(20건) 등의 순으로 많았음

▶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

-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각각 하나의 유형으로 본 1,258건에 대해 분석함
- 학대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의 행위자는 기관종사자인 경우가 47.5%(197건)로 가장 높았음. 기관종사자 중에서는 거주시설 종사자가 27.5%(114건), 이용시설 종사자가 10.4%(43건)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정서적 학대의 행위자는 기관종사자인 경우가 44.6%(113건)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종사자 중에서는 거주시설 종사자가 22.5%(57건), 이용시설 종사자가 15.4%(39건)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성적 학대의 행위자는 타인이 73.2%(87건)로 가장 많았으며 타인 중에서는 지인이 39.5%(47건), 모르는 사람이 16.0%(19건) 등의 순으로 높았음
 - 경제적 착취 역시 타인이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56.5%(185건)로 가장 많았으며, 타인 중에서는 지인이 24.7%(81건), 고용주가 12.2%(40건) 등의 순으로 높았음
 - 유기의 경우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53.4%(8건), 방임의 경우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척·기관종사자가 각각 44.5%(57건)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및 학대행위자 유형

- 발생장소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에서는 신체적 학대(32.8%)와 경제적 착취(24.2%) 등의 순으로 많았고, 학대행위자의 거주지에서는 경제적 착취(29.1%)와 신체적 학대(27.3%)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신체적 학대가 35.9%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착취가 22.4%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이용시설에서는 신체적 학대가 44.2%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36.8%로 높게 나타남
 - 직장 및 일터에서는 경제적 착취가 53.3%로 높게 나타났고, 교육기관에서는 신체적 학대가 54.5%, 상업시설에서는 경제적 착취 75.9%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행위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의 경우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8.7%(89건), 학대행위자의 거주지의 경우 학대행위자는 지인이 26.6%(21건)로 가장 높았음
 -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81.5%(181건), 장애인이용시설에서도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75.3%(55건)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장 및 일터의 경우는 고용주(53.9%), 상업시설의 경우는 모르는 사람(45.1%)에 의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 장애인학대 유형에 따른 학대 지속기간을 살펴보면,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유기는 학대 지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많았음. 반면 경제적 착취와 방임은 학대 지속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간 학대를 겪은 경우가 많았음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 응급조치

- 2019년 장애인학대사례 945건 중 응급조치는 106건 실시되었으며 이는 장애인학대사례의 11.2%임
 - 응급조치한 장소는 쉼터가 43건(40.6%), 장애인거주시설이 37건(34.9%), 의료기관이 16건(15.1%), 기타 장소가 10건(9.4%)이었음

▶ 피해장애인 지원

- 피해장애인 지원은 총 1,981건으로 기타지원 911건(46.0%), 사법지원 431건(21.8%), 복지지원 279건(14.1%), 거주지원 143건(7.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법지원이 이루어진 431건 중에서는 주로 고발 및 수사의뢰(43.9%)와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36.8%)이 실시됨
- 2019년 신규 접수 사례(945건) 및 2018년 접수되어 2019년에 진행 중인 사례(269건) 총 1,214건에 대해 17,837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으며, 장애인학대사례 1건당 평균 14.7회의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짐

▶ 사례종결 및 사후 모니터링

- 2019년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945건 중 종결된 사례는 547건으로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은 57.9%로 나타남
- 종결된 사례 중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는 361건으로 사후 모니터링 실시율은 66.0%임
 - 모니터링을 실시한 361건에 대해 총 1,106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사례 1건당 약 3.1회 모니터링이 이뤄짐

특성별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2019년 장애인학대사례 945건 중 680건(72.0%)으로 이는 전년도(626건)대비 8.6% 증가한 수치임

▶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 발달장애인 학대의 신고자 유형을 보면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가 각각 340건(50.0%)으로 나타남
 - 신고의무자의 경우 21개 직군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3.4%(159건)로 가장 많았음
 - 피해장애인 본인이 신고한 경우는 4.0%(27건)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임

▶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52.5%(357명), 여성이 47.5%(323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5.0%p 많았음
-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연령은 20대가 27.1%(184명)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0.4%(139명) 등의 순으로 많았음

▶ 학대행위자 성별 및 피해장애인과 관계

-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의 성별은 남성 68.8%(468명), 여성 29.7%(202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4.7%(168건)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지인 16.6%(113건), 부모 11.9%(81건),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8.1%(55건) 등의 순으로 많았음

▶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현황

- 발달장애인 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장애인복지시설이 36.6%(249건)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장애인 거주지 28.4%(193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8.7%(53건) 등의 순으로 많았음
- 발달장애인의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를 보면 3개월 미만인 39.7%(270건), 5년 이상 장기간 학대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의 사례가 장애인학대사례의 18.8%(128건)이었음

▶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 중복 학대를 하나의 학대유형으로 분류한 680건의 발달장애인 학대유형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 학대 25.6%(174건), 중복 학대 25.1%(171건), 경제적 착취 23.4%(159건), 성적 학대 11.2%(76건), 정서적 학대 8.7%(59건), 방임 5.7%(39건), 유기 0.3%(2건) 순으로 나타남

- 중복 학대를 하나의 학대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은 901건의 발달장애인 학대유형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 학대 34.1%(307건), 경제적 착취 26.1%(235건), 정서적 학대 18.8%(169건), 성적 학대 10.8%(97건), 방임 9.3%(84건), 유기 1.0%(9건) 순으로 나타남

▶ 학대유형별 지속기간

- 발달장애인의 학대유형별 지속기간을 보면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는 3개월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경제적 착취와 방임은 5년 이상 장기간 학대를 겪은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노동력 착취사례

2019년 장애인학대사례 중 노동력 착취사례는 총 94건으로 전체 장애인학대사례 중 약 9.9%이며, 경제적 착취사례 328건 중 28.7%로 나타남

▶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63.8%(60명), 여성이 36.2%(34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8배 많음
-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40대~60대가 주 피해장애인으로 나타남

▶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9.1%(65건), 정신장애 9.6%(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장애인은 전체 노동력 착취 중 79.8%로 10명 중 약 8명임

▶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및 연령

- 노동력 착취 행위자는 남성이 68.1%(64명)로, 여성 30.9%(29명)보다 약 2.2배 이상 많음
- 노동력 착취 행위자의 연령은 40대 34.0%(32명), 50대 27.7%(2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 노동력 착취는 행위자가 타인인 경우가 58.5%(55건)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종사자 38.3%(36건), 가족 및 친인척 3.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가 39.4%(37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36.2%(34건), 지인 7.4%(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발생 현황

- 노동력 착취의 발생장소는 장애인거주시설 41.5%(39건), 피해장애인의 직장 및 일터 37.2%(35건), 피해장애인 거주지 9.6%(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노동력 착취의 지속기간 중 5년 이상 장기간 학대를 겪은 사례가 37.2%(35건)로 가장 많았음
 - 특히 3년 이상 장기간 학대가 지속되는 사례가 전체의 44.7%(42건)로 나타남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는 전체 장애인학대사례(945건)의 37.9%(358건)를 차지함. 장애인거주시설이 62.0%(222건)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이용시설 20.4%(73건), 교육기관 11.5%(41건),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6.1%(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의 피해장애인 성별은 남성이 60.1%(215명)로 여성 39.9%(143명)보다 약 1.5배 이상 많음
- 집단이용시설 사례의 피해장애인 연령은 30대 · 19세 이하가 각각 21.8%(78명)로 가장 많았음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주장애 중심으로 보면 지적장애가 72.1%(258건)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장애 6.7%(24건), 지체장애 5.3%(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학대 신고자

- 집단이용시설에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51.1%(183건)로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 48.9%(175건)보다 신고율이 높았음
 - 신고자의 세부유형별로 보면 비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30.4%)의 신고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28.8%), 사회복지 전담공무원(18.7%), 타인(8.4%), 가족 및 친인척(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하지만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비율은 2.0%(7건)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 집단이용시설의 학대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 46.4%(166건)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경우가 14.0%(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설유형별로 보면 모든 시설에서 학대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으나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는 5년 이상 학대가 지속되는 비율이 21.6%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학대 유형

- 중복 학대를 하나의 학대유형으로 분류한 358건의 집단이용시설 내 장애인학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중복 학대가 35.2%(126건)로 가장 많고, 신체적 학대 29.1%(104건), 경제적 착취 10.3%(37건), 정서적 학대 10.1%(36건), 성적 학대 8.4%(30건), 방임 6.7%(24건), 유기 0.3%(1건)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중복 학대를 하나의 학대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은 520건의 집단이용시설 내 장애인학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 학대가 39.6%(206건)로 가장 많았으며, 정서적 학대 24.2%(126건), 경제적 착취 15.8%(82건), 방임 11.5%(60건), 성적 학대 7.5%(39건), 유기 1.3%(7건)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장애인거주시설 유형 및 규모별 장애인학대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는 주로 장애인거주시설(62.0%)에서 발생함
 - 장애인거주시설을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학대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서 30.6%(68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6.6%(59건), 공동생활가정 24.8%(55건), 단기거주시설 9.9%(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거주시설을 규모별로 보면 장애인학대는 30인 이하 시설에서 65.8%(146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31인~99인 시설 29.7%(66건), 10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 4.5%(10건)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36.9%(45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33.6%(41건)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정서적 학대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서 31.0%(22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3.9%(17건)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성적 학대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서 50.0%(10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35.0%(7건) 등의 순으로 많았음
 - 경제적 착취는 공동생활가정에서 34.2%(26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신고시설·단기거주시설 각각 18.4%(14건)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유기는 미신고시설에서 80.0%(4건)로 가장 많았고, 방임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43.5%(20건)로 가장 많았음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 응급조치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358건 중 응급조치를 한 경우는 8.4%(30건)로, 이 중 장애인거주시설 보호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장애인 쉼터 6건, 기타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피해장애인 지원

- 피해장애인 지원은 총 531건으로 기타지원 233건(43.9%), 사법지원 168건(31.6%), 복지지원 43건(8.1%), 거주지원 34건(6.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법지원이 이루어진 431건 중에서는 주로 고발 및 수사의뢰(61.2%)와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26.2%)이 실시됨



1

서론

1. 발간목적
2. 법적근거
3. 자료수집 및 분석
4. 주요 분석항목

제1장

서론

1. 발간목적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사후 지원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학대 전문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7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시작으로 그해 말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되었으며 2019년 12월 31일 현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18개(2019년 1월 1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 신설)가 운영 중이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피해자 지원, 사후관리 등 장애인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업무를 하고 있으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 관련 연구, 프로그램 개발, 인력개발, 장애인학대 통계 생산 등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및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018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적 차원의 첫 장애인학대 통계를 발표하고, 장애인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였다.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2019년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를 분석하여 장애인학대 현황을 보여줌으로써 장애인학대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2. 법적근거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에 따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인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에 근거하여 발간되는 보고서로, 이번 발간을 위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18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장애인학대사례 정보를 취합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이번 분석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며, 모든 항목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통계는 백분율의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각 항목의 합계가 100.0%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주요 분석항목

본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분석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1-1] 주요 분석항목

분류	분석항목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월별, 지역 및 기관별, 일반사례 신고접수 • 신고접수 방법 • 신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신고자 유형, 신고의무자 유형, 비신고의무자 유형
장애인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 사례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 상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 사례종결 • 지역·기관별 상담원 1인당 담당사례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사회학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장애인(성별, 연령, 장애 유형 및 정도, 거주형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 학대행위자(성별, 연령,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신고의무자 여부, 신고의무자 직군, 피해장애인과와의 동거여부) • 장애인학대 발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 장애인학대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조치, 피해장애인 지원,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사례종결, 사후 모니터링
특성별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 현황,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발달장애인 학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발달장애인 학대 사례지원 • 노동력 착취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노동력 착취 행위자, 노동력 착취 발생 현황, 노동력 착취 피해 장애인 사례지원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집단이용시설사례 피해장애인, 집단이용시설사례 장애인학대 신고자,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학대 지속기간,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2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1. 신고접수
2. 신고접수 방법
3. 신고자

제2장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1. 신고접수

가. 전체 신고접수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를 중심으로 장애인학대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면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이하 학대의심사례)로 분류하고 사례지원 절차에 따라 조사 및 사례판정 등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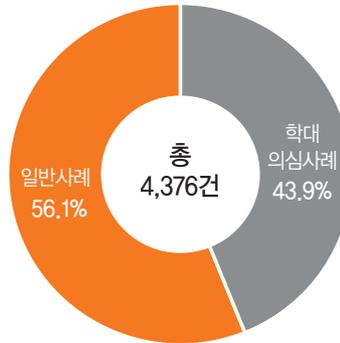
반면 장애인학대가 의심되지 않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차별 관련 사례, 복지 및 일반 법률상담이나 기관문의 등 정보제공이 필요한 사례, 불만이나 하소연을 토로하여 위로나 인정 등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사례, 장애인학대와 무관한 개인 간의 다툼이나 분쟁과 관련된 사례는 ‘일반사례’로 접수된다. 2019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는 전년도 3,658건보다 19.6% 증가한 총 4,376건이다. 이 중 학대가 의심되는 신고는 전년도 1,835건보다 4.8% 증가한 1,923건이며, 2019년 전체 신고의 43.9%를 차지하였다. 일반사례는 전체 신고의 56.1%인 2,453건이었다.

[표 2-1] 신고접수

(단위: 건, %)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계	
1,923	43.9	2,453	56.1	4,376	100.0

[그림 2-1] 신고접수



나. 월별 신고접수

전체 신고접수 현황을 월별로 보면 월 평균 365건(8.3%)의 신고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되었고 7월이 451건(10.3%)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 다음으로 4월 416건(9.5%), 1월 385건(8.8%) 등의 순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 특히 2월 신고접수 건수는 전년도 211건보다 60.7% 증가한 339건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달이었다. 학대의심사례의 신고접수 건수는 전년도 월 평균 153건에서 160건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4월이 197건(10.2%)으로 가장 많았고, 7월 195건(10.1%), 11월 177건(9.2%)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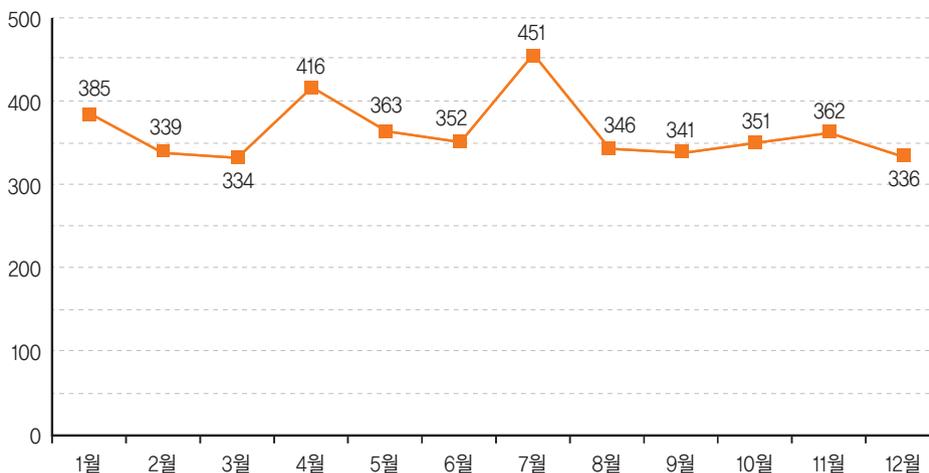
[표 2-2] 월별 신고접수

(단위: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학대	159	163	132	197	170	139	195	138	171	146	177	136	1,923
일반	226	176	202	219	193	213	256	208	170	205	185	200	2,453
계	385	339	334	416	363	352	451	346	341	351	362	336	4,376

[그림 2-2] 월별 신고접수

(단위: 건)



다.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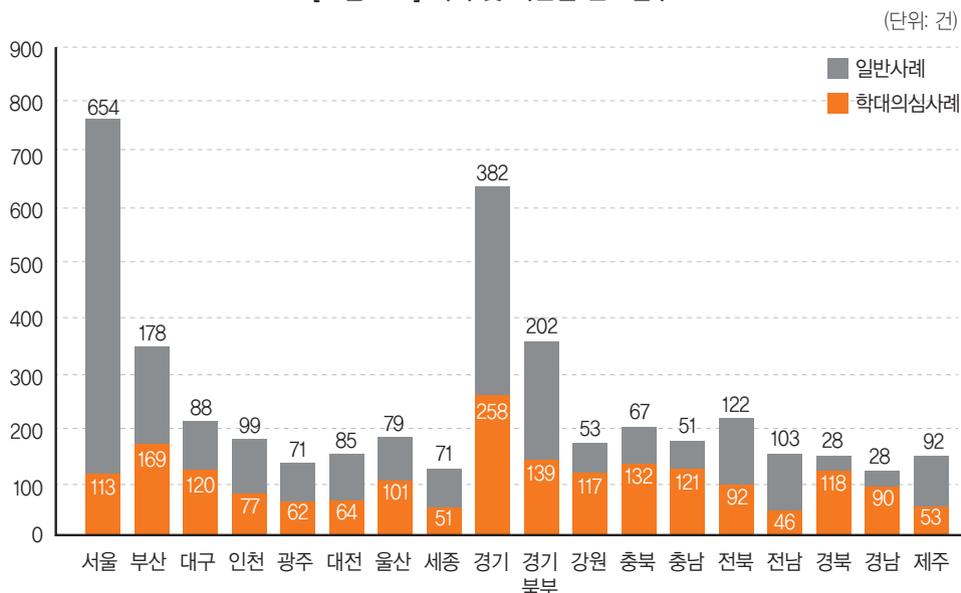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981건(22.4%)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서울 767건(17.5%), 부산 347건(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경기도의 신고접수는 395건에서 981건으로 148.4%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경기도가 2018년도에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도(道)내 북부지역에 자체예산을 편성해 신규 기관을 추가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신고접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남 118건(2.7%)이었으며, 다음으로 세종 122건(2.8%)이었다. 전체 신고접수 사례 중 학대의심사례는 지역별로 평균 106.8건이 접수되었으며 경기도가 397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69건(8.8%), 충북 132건(6.9%) 등의 순이었다. 학대의심사례 접수가 가장 적은 곳은 전남 46건(2.4%), 세종 51건(2.7%) 등의 순이었다.

[표 2-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단위: 건, %)

구분		학대의심사례		일반사례		계	
서울		113	5.9	654	26.7	767	17.5
부산		169	8.8	178	7.3	347	7.9
대구		120	6.2	88	3.6	208	4.8
인천		77	4.0	99	4.0	176	4.0
광주		62	3.2	71	2.9	133	3.0
대전		64	3.3	85	3.5	149	3.4
울산		101	5.3	79	3.2	180	4.1
세종		51	2.7	71	2.9	122	2.8
경기	경기	258	13.4	382	15.6	640	14.6
	경기북부	139	7.2	202	8.2	341	7.8
	소계	397	20.6	584	23.8	981	22.4
강원		117	6.1	53	2.2	170	3.9
충북		132	6.9	67	2.7	199	4.5
충남		121	6.3	51	2.1	172	3.9
전북		92	4.8	122	5.0	214	4.9
전남		46	2.4	103	4.2	149	3.4
경북		118	6.1	28	1.1	146	3.3
경남		90	4.7	28	1.1	118	2.7
제주		53	2.8	92	3.8	145	3.3
계		1,923	100.0	2,453	100.0	4,376	100.0

[그림 2-3] 지역 및 기관별 신고접수



라. 일반사례 신고접수

일반사례는 차별, 정보제공, 정서적 지지, 그 외 장애인학대가 의심되지 않는 기타 사례를 말하며 일반사례에 해당하면 학대조사나 사례회의 없이 상담만으로 그에 맞는 지원을 하고 사례를 종결한다. 단, 시도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나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같이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차별이나 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된 상담을 받고 있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일반사례라도 당사자 면담 및 현장방문, 사례회의 등을 통해 사례를 지원한다.

2019년 신고접수 된 일반사례 2,453건 중 정보제공사례가 1,506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사례 396건(16.1%), 차별사례 331건(13.5%), 정서적 지지와 관련된 사례 220건(9.0%) 순이었다.

[표 2-4] 일반사례 신고접수

(단위: 건, %)

차별		정보제공		정서적 지지		기타		계	
331	13.5	1,506	61.4	220	9.0	396	16.1	2,453	100.0

2. 신고접수 방법

신고는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사무실로 연결되는 전화신고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한 온라인신고, 문자·팩스·우편을 통한 신고, 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내방신고, 언론보도 등 상담원이 사례를 알게 되어 접수하는 인지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다.

2019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는 방법은 전화가 3,524건(80.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신고 없이 상담원이 사례를 인지한 경우가 249건(5.7%), 신고자가 기관에 찾아와 신고하는 내방신고가 235건(5.4%) 등의 순이었다.

[표 2-5] 전체 신고접수 방법

(단위: 건, %)

전화	온라인	문자	팩스	우편	내방	인지	기타	계
3,524	223	12	64	16	235	249	53	4,376
80.5	5.1	0.3	1.5	0.4	5.4	5.7	1.2	100.0

3. 신고자

가. 전체 신고자 유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는 21개 직군의 종사자에게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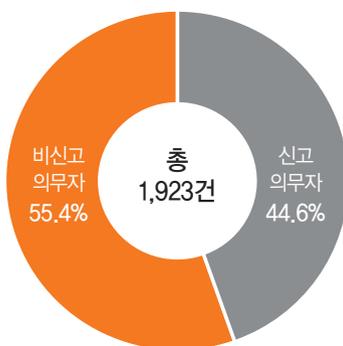
2019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1,923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전년도(802건) 대비 7.0% 증가한 858건(44.6%)이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건(55.4%)이었다.

[표 2-6]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계	
858	44.6	1,065	55.4	1,923	100.0

[그림 2-4] 신고자 유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4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나. 신고의무자 유형

장애인학대 신고에서 신고의무자는 직무 특성상 피해장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 신고의무자의 직군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고 교직원 및 교사, 학원·교습소 강사 및 직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¹⁾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장기요양요원으로 나뉜다.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43.2%(371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가 35.9%(308건)이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253건)에 의한 신고는 46.6% 증가했으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421건)에 의한 신고는 26.8% 감소하였다.

전년도와 비교해 의료기사, 보육교직원, 학원·교습소 강사 및 직원에 의한 신고가 새롭게 접수되었다. 반면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에 의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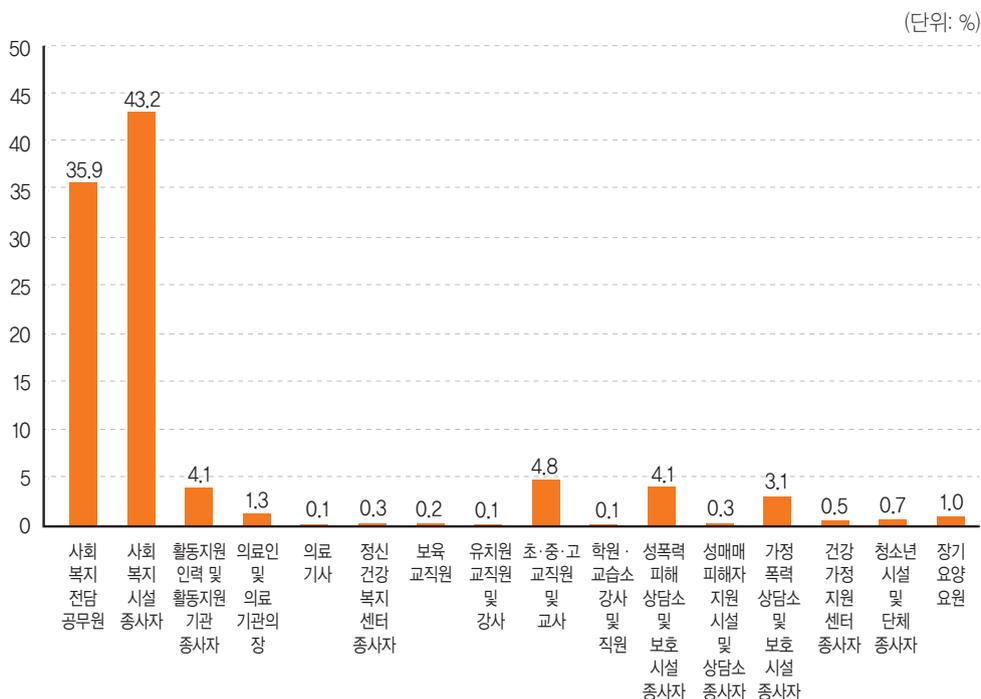
1) 2019. 01. 15.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19. 07. 16. 아동권리보장원이 설립되어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음

[표 2-7]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단위: 건, %)

신고의무자 유형	건수	비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08	35.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71	43.2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35	4.1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1	1.3
의료기사	1	0.1
응급구조사	-	-
구급대의 대원	-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3	0.3
보육교직원	2	0.2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1	0.1
초·중·고 교직원 및 교사	41	4.8
학원·교습소 강사 및 직원	1	0.1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35	4.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3	0.3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27	3.1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4	0.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6	0.7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
장기요양요원	9	1.0
계	858	100.0

[그림 2-5] 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다. 비신고의무자 유형

신고의무자가 아닌 비신고의무자 유형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가족 및 친인척, 기관종사자, 타인, 파악 안 됨으로 분류한다. 가족 및 친인척에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등이 포함되고, 기관종사자는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일반공무원, 신고의무자 아닌 장애인단체·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아동·청소년·여성·노인·이주민 등의 단체 종사자, 사회복지요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은 유관기관 종사자 등을 말한다. 타인이란 동거인, 이웃, 지인, 고용주(근로계약과 무관한 사실상의 고용주 포함), 피해장애인과 관련이 없거나 모르는 사람을 의미하고, 신고자 중 피해장애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악 안 됨으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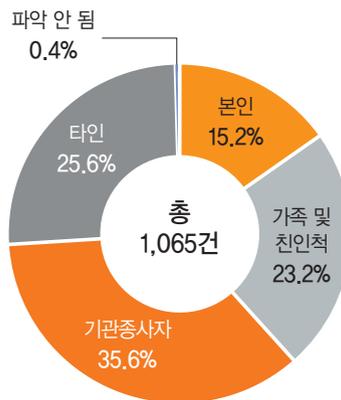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1,065건 중 기관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5.6%(379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타인에 의한 신고가 25.6%(273건)로 많았다. 가족 및 친인척이 신고한 경우는 23.2%(247건),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15.2%(162건)이었다.

[표 2-8]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단위: 건, %)

비신고의무자 유형	건수	비율
본인	162	15.2
가족 및 친인척	247	23.2
기관종사자	379	35.6
타인	273	25.6
파악 안 됨	4	0.4
계	1,065	100.0

[그림 2-6] 비신고의무자 유형에 따른 신고







3

장애인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1. 학대조사
2. 사례판정
3. 상담 및 지원
4. 사례종결
5. 지역·기관별 상담원 1인당 담당사례

제3장

장애인학대조사 및 사례판정

1. 학대조사

가. 전체 학대조사

장애인학대조사란 신고접수 된 사례의 피해자에게 장애인학대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장애인권익 옹호기관의 조사를 말한다. 조사 시에는 피해장애인에 대한 면담, 학대행위자 등 관련자에 대한 면담, 증거와 피해 사항을 확인하며, 필요시 피해자에 대해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학대조사는 1건의 사례를 기준으로 조사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를 여러 차례 하더라도 전체 조사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019년에 접수된 사례의 학대조사가 2020년에 이뤄졌다면 2019년 학대조사 실시율에는 반영되지 않아 2019년 접수 사례의 실제 조사실시율은 더 높을 수 있다.

2019년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1,923건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721건을 조사했으며, 조사실시율은 89.5%로 전년도(1,479건, 80.6%)와 비교했을 때 16.4% 증가하였다.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의심사례로 접수된 모든 사례를 조사해야하므로, 조사 실시율이 100%로 나타나야 하지만, 경찰이나 유관 전문기관에서 조사 중이거나 조사를 완료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나, 피해장애인의 정보가 불확실하여 피해장애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못할 수 있다.

[표 3-1] 전체 학대조사

(단위: 건, %)

학대의심사례	학대조사	당해 연도 조사 실시율
1,923	1,721	89.5

나.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실시율은 대구, 인천, 제주가 100.0%로 가장 높았다. 전남 97.8%, 경북 97.5%, 강원 96.6%, 전북 94.6% 순으로 조사 실시율이 높았으며 경남 74.4%, 경기 79.8% 순으로 조사 실시율이 낮았다. 경기 기관의 경우 조사 실시율(76.4%)이 낮으나, 전년도(51.5%) 대비 24.9%p 증가하였다.

[표 3-2] 지역 및 기관별 학대조사

(단위: 건, %)

구분		학대의심사례	조사건수	실시율
서울		113	104	92.0
부산		169	148	87.6
대구		120	120	100.0
인천		77	77	100.0
광주		62	53	85.5
대전		64	55	85.9
울산		101	92	91.1
세종		51	46	90.2
경기	경기	258	197	76.4
	경기북부	139	120	86.3
	소계	397	317	79.8
강원		117	113	96.6
충북		132	119	90.2
충남		121	110	90.9
전북		92	87	94.6
전남		46	45	97.8
경북		118	115	97.5
경남		90	67	74.4
제주		53	53	100.0
계		1,923	1,721	89.5

2. 사례판정

가. 전체 사례판정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례판정 절차를 통해 판단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회의에서 장애인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비학대사례로 판정하며, 사례회의에서 사례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지역기관별로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거쳐 학대여부를 판정한다.

장애인학대사례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한다. 잠재위험사례는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로 비학대사례이지만 향후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비학대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로 예를 들면 허위신고나 장애와 무관한 다툼 등을 말하며 통상 피해자 지원 없이 사례개입을 종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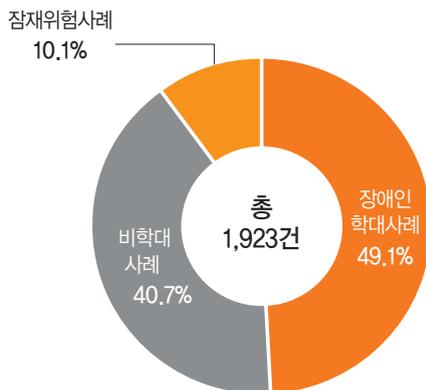
2019년 사례판정 결과, 학대의심사례 1,923건 중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945건으로 전체의 49.1%를 차지했으며, 비학대사례는 783건(40.7%), 잠재위험사례는 195건(10.1%)이었다. 장애인학대사례는 전년도(889건) 대비 6.3% 증가했으며, 잠재위험사례(150건)는 30.0% 증가하였다.

[표 3-3] 전체 사례판정

(단위: 건, %)

장애인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계	
945	49.1	783	40.7	195	10.1	1,923	100.0

[그림 3-1] 전체 사례판정



나.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18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중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비율은 평균 49.1%로 나타났다. 전년도(48.4%) 장애인학대 판정비율과 비교하면 소폭 증가된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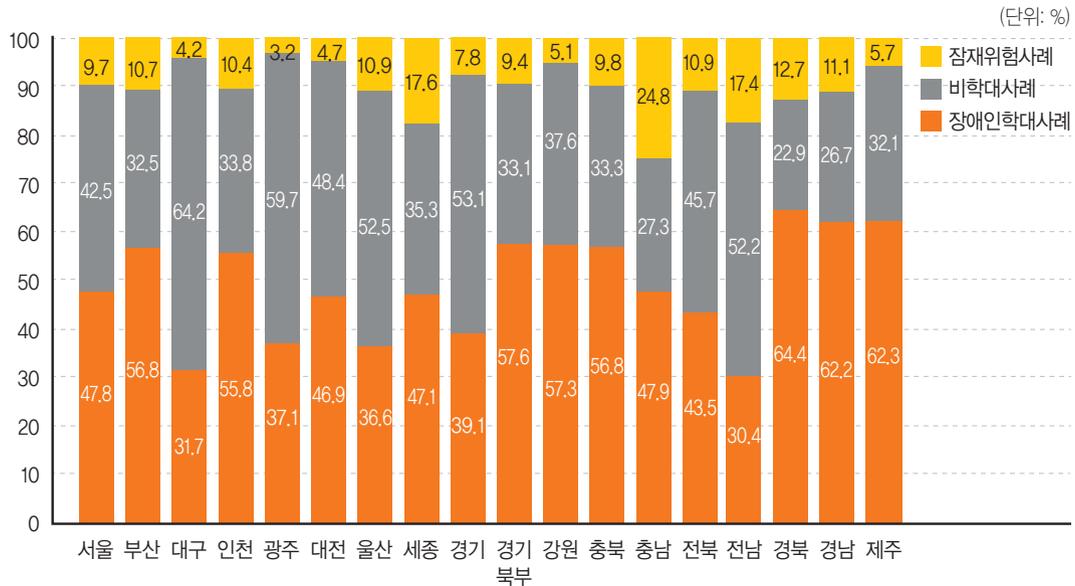
2019년 장애인학대사례 판정 비율이 높은 지역기관은 경북(64.4%)이었으며 비학대사례 판정 비율은 대구(64.2%)가 가장 높았고, 잠재위험사례 판정 비율은 충남(24.8%)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단위: 건, %)

구분		장애인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계	
서울		54	47.8	48	42.5	11	9.7	113	100.0
부산		96	56.8	55	32.5	18	10.7	169	100.0
대구		38	31.7	77	64.2	5	4.2	120	100.0
인천		43	55.8	26	33.8	8	10.4	77	100.0
광주		23	37.1	37	59.7	2	3.2	62	100.0
대전		30	46.9	31	48.4	3	4.7	64	100.0
울산		37	36.6	53	52.5	11	10.9	101	100.0
세종		24	47.1	18	35.3	9	17.6	51	100.0
경기	경기	101	39.1	137	53.1	20	7.8	258	100.0
	경기북부	80	57.6	46	33.1	13	9.4	139	100.0
	소계	181	45.6	183	46.1	33	8.3	397	100.0
강원		67	57.3	44	37.6	6	5.1	117	100.0
충북		75	56.8	44	33.3	13	9.8	132	100.0
충남		58	47.9	33	27.3	30	24.8	121	100.0
전북		40	43.5	42	45.7	10	10.9	92	100.0
전남		14	30.4	24	52.2	8	17.4	46	100.0
경북		76	64.4	27	22.9	15	12.7	118	100.0
경남		56	62.2	24	26.7	10	11.1	90	100.0
제주		33	62.3	17	32.1	3	5.7	53	100.0
계		945	49.1	783	40.7	195	10.1	1,923	100.0

[그림 3-2] 지역 및 기관별 사례판정



3. 상담 및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지만, 당사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학대사례인 경우에도 일부 개입하여 당사자를 지원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 및 지원은 당해 연도에 접수된 사례 이외에 전년도에 접수되어 종결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이번 분석에서는 2019년에 신규로 접수된 사례 외에 2018년에 접수되어 2019년에도 진행 중인 사례를 포함하여 2019년 한 해 동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실시한 상담 및 지원 현황을 알아보려고 한다.

가. 전체 상담 및 지원

2019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2019년 신규 접수 학대의심사례(1,923건)와 2018년에 접수되어 2019년에 진행 중인 학대의심사례(387건) 총 2,310건에 대해 24,785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으며 사례 1건당 지원횟수는 평균 10.7회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사례 1건당 8.7회) 대비 평균 2.0회 증가한 수치이다.

[표 3-5] 2019년에 실시한 상담 및 지원

(단위: 건, 회)

학대의심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횟수
2,310	24,785	10.7

나. 지역 · 기관별 상담 및 지원

2019년 가장 많은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한 지역기관은 전남으로 사례 1건 당 평균 25.7회 실시했으며, 그 다음으로 울산이 사례 1건당 21.1회, 전북이 사례 1건당 16.4회, 광주가 사례 1건당 15.2회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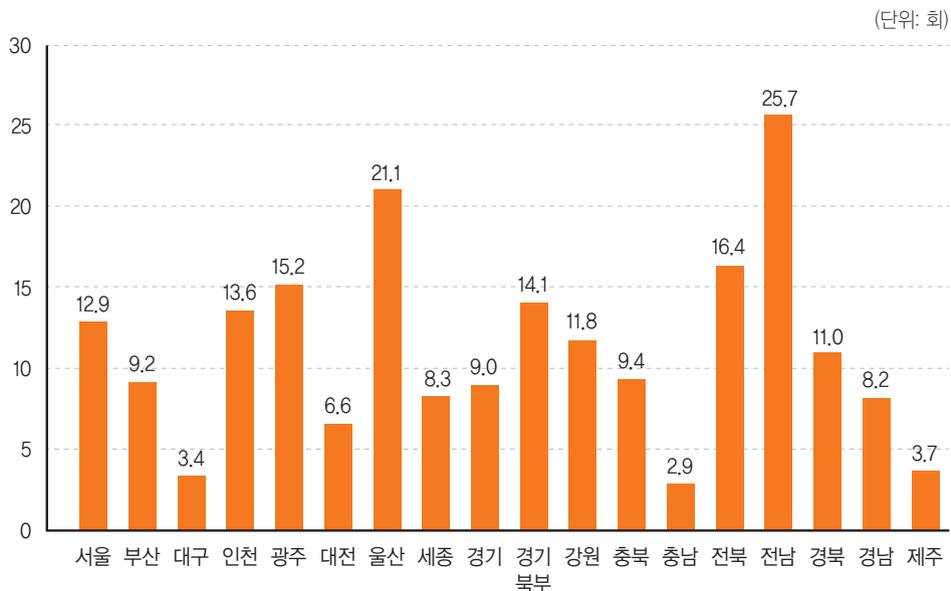
[표 3-6] 지역 · 기관별 상담 및 지원

(단위: 건, 회)

지역	학대의심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횟수	
서울	139	1,787	12.9	
부산	186	1,707	9.2	
대구	129	438	3.4	
인천	79	1,078	13.6	
광주	79	1,201	15.2	
대전	76	498	6.6	
울산	117	2,464	21.1	
세종	63	522	8.3	
경기	경기	359	3,226	9.0
	경기북부 ²⁾	139	1,958	14.1
	소계	498	5,184	10.4
강원	134	1,577	11.8	
충북	154	1,450	9.4	
충남	146	422	2.9	
전북	107	1,757	16.4	
전남	71	1,824	25.7	
경북	152	1,676	11.0	
경남	118	972	8.2	
제주	62	228	3.7	
계	2,310	24,785	10.7	

2)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은 경기도가 2018년도에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도(道)내 북부지역에 자체예산을 편성해 2019년에 설치한 신규 기관으로 2019년 이전 업무 수행 내용이 없음

[그림 3-3] 지역·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4. 사례종결

2019년 학대의심사례 1,923건 중 총 1,412건의 사례가 2019년 12월 31일자로 종결되었으며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은 73.4%로 전년도(69.7%) 대비 3.7%p 증가하였다.

[표 3-7] 사례종결

(단위: 건, %)

학대의심사례	종결사례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
1,923	1,412	73.4

5. 지역 · 기관별 상담원 1인당 담당사례

2019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2019년 신규 접수 된 사례(1,923건)와 2018년에 접수되어 2019년에 진행 중인 사례(387건) 총 2,310건을 담당하였다. 2019년 12월 31일자 기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은 총 54명으로 상담원 1인당 약 42.8건의 사례를 담당했으며, 평균 459.0회의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하였다.

전년도(상담원 총 40명, 상담원 1인당 평균 45.9건, 상담 및 지원횟수 397.1회)와 비교했을 때 상담원의 증가로 상담원 1인당 담당사례 건수는 평균 3.1건 감소하였으나 상담 및 지원횟수는 평균 61.9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원 1인당 담당사례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기관은 부산으로 평균 93.0건이었으며, 충북 77.0건, 경북 76.0건, 충남 73.0건 등의 순이었다. 상담원 1인당 상담 및 지원 횟수는 전남 912.0회, 전북 878.5회, 부산 853.5회, 경북 838.0회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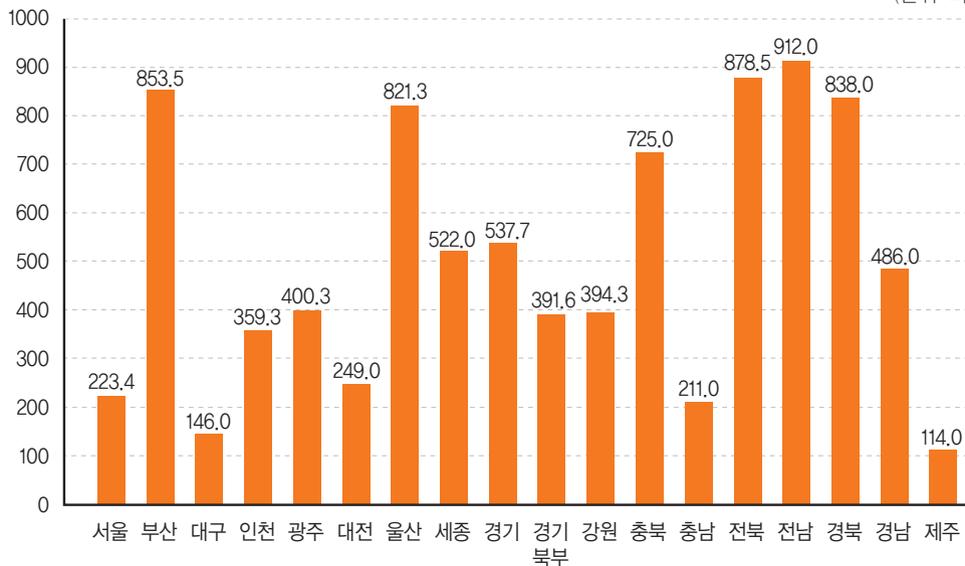
[표 3-8] 지역 · 기관별 상담원 1인당 상담 및 지원

(단위: 명, 건, 회)

구분	상담원 (현원)	학대의심사례	1인당 담당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1인당 상담 및 지원 횟수	
서울	8	139	17.4	1,787	223.4	
부산	2	186	93.0	1,707	853.5	
대구	3	129	43.0	438	146.0	
인천	3	79	26.3	1,078	359.3	
광주	3	79	26.3	1,201	400.3	
대전	2	76	38.0	498	249.0	
울산	3	117	39.0	2,464	821.3	
세종	1	63	63.0	522	522.0	
경기	경기	6	359	59.8	3,226	537.7
	경기북부	5	139	27.8	1,958	391.6
	소계	7	498	71.1	5,184	929.3
강원	4	134	33.5	1,577	394.3	
충북	2	154	77.0	1,450	725.0	
충남	2	146	73.0	422	211.0	
전북	2	107	53.5	1,757	878.5	
전남	2	71	35.5	1,824	912.0	
경북	2	152	76.0	1,676	838.0	
경남	2	118	59.0	972	486.0	
제주	2	62	31.0	228	114.0	
계	54	2,310	42.8	24,785	459.0	

[그림 3-4] 지역·기관별 상담원 1인당 상담 및 지원

(단위: 회)





4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1. 인구사회학적 요인
2. 장애인학대 발생현황
3. 장애인학대 유형
4.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제4장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1.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 피해장애인

1) 피해장애인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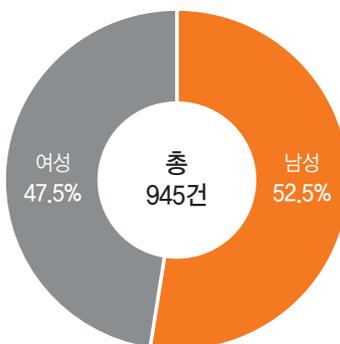
2019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1,923건 중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945건이었다. 피해장애인 945명의 성별은 남성이 52.5%(496명)로 여성 47.5%(449명)보다 5.0%p 높게 나타났다.

[표 4-1]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명, %)

남성		여성		계	
496	52.5	449	47.5	945	100.0

[그림 4-1] 피해장애인 성별



2) 피해장애인 연령

피해장애인 연령은 20대가 21.7%(205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18.6%(176명), 40대 17.7%(167명), 19세 이하가 17.2%(163명)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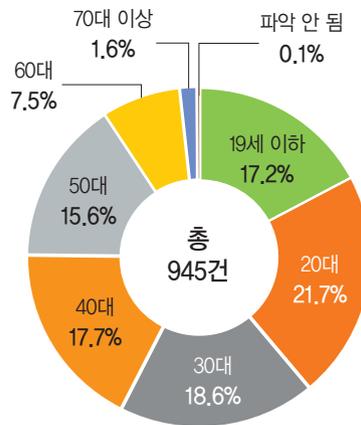
피해장애인 연령이 19세 이하인 경우가 전년도(127명)대비 28.3% 증가했으며 이는 향후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예방과 피해 지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4-2]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명, %)

연령	명수	비율
19세 이하	163	17.2
20대(20~29세)	205	21.7
30대(30~39세)	176	18.6
40대(40~49세)	167	17.7
50대(50~59세)	147	15.6
60대(60~69세)	71	7.5
70대 이상	15	1.6
파악 안 됨	1	0.1
계	945	100.0

[그림 4-2] 피해장애인 연령



3)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 및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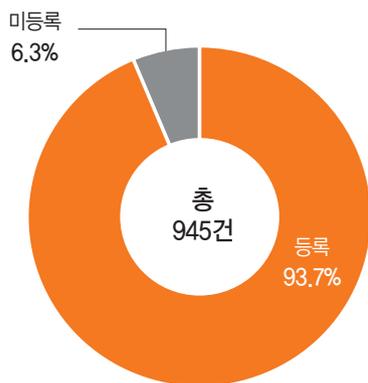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피해자가 미등록 장애인인 경우에도 등록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학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록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945명의 피해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93.7%(885건)이며,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6.3%(60건)이었다.

[표 4-3] 장애인등록 여부

(단위: 건, %)

등록	미등록	계
885	60	945
93.7	6.3	100.0

[그림 4-3] 장애인등록 여부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65.9%(623건)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 7.1%(67건), 뇌병변장애 6.1%(58건), 정신장애 5.8%(5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 중 다수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는 69.8%(660건)이고, 정신장애를 포함하는 정신적 장애는 75.6%(715건)로 나타났다. 전년도(659건, 74.1%)와 비교했을 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례는 8.5%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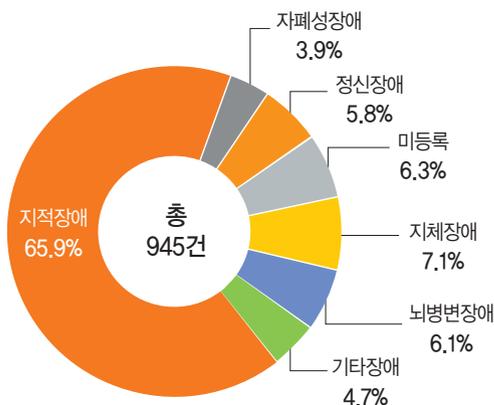
[표 4-4] 피해장애인 주장장애유형³⁾

(단위: 건, %)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67	7.1
뇌병변장애	58	6.1
시각장애	22	2.3
청각장애	13	1.4
언어장애	6	0.6
지적장애	623	65.9
자폐성장애	37	3.9
정신장애	55	5.8
신장장애	1	0.1
심장장애	-	-
호흡기장애	-	-
간장애	-	-
안면장애	-	-
장루·요루장애	-	-
뇌전증장애	3	0.3
미등록	60	6.3
계	945	100.0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피해장애인의 주장에 및 부장애유형 모두 확인하고 있으며 본 장에서는 피해장애인의 주장장애유형을 기초로 분석하였음

[그림 4-4] 피해장애인 주장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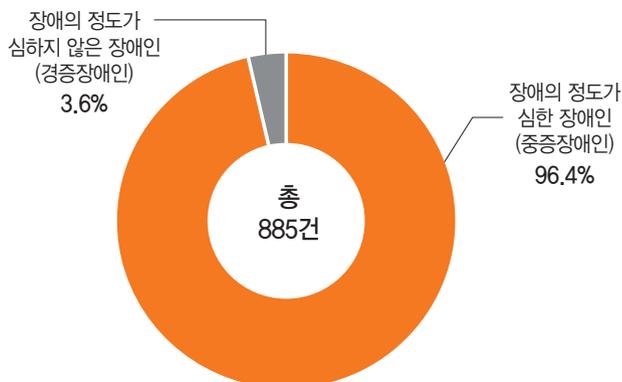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개편되었다. 기존 1~3등급의 장애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으로, 4~6등급의 장애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으로 변경되었다. 피해장애인 중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885건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은 96.4%(85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은 3.6%(32건)이었다. 피해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전년도(790건, 95.4%)와 비교했을 때 8.0% 증가하였다.

[표 4-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단위: 건, %)

장애정도	건수	비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853	96.4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장애인)	32	3.6
계	885	100.0

[그림 4-5]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4) 피해장애인 거주형태

신고 당시 피해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재가와 시설로 분류된다. 시설은 다수가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관리자가 있는 주거형태로 사회복지시설 중 거주시설 혹은 생활시설, 미신고시설, 정신병원, 요양병원 등이 해당한다. 이 외에는 모두 재가로 분류된다. 장애인학대사례 중 재가에서 생활하면서 피해를 겪은 경우는 72.6%(686건)이었고,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피해를 겪은 경우는 27.4%(259건)이었다.

[표 4-6] 피해장애인 거주형태

(단위: 건, %)

재가		시설		계	
686	72.6	259	27.4	945	100.0

5)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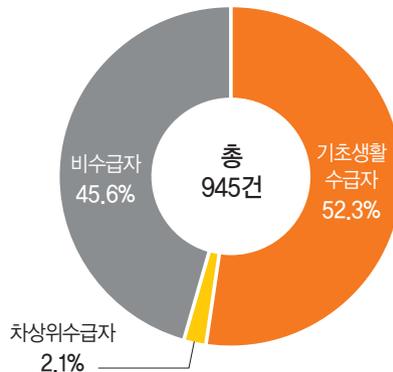
피해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를 살펴보면 피해장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례가 52.3%(494건), 비수급자인 사례가 45.6%(431건), 차상위수급자인 사례가 2.1%(20건)로 나타났다.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에 따른 장애인세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18.1%)과 피해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52.3%)을 비교하면 피해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이 더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단위: 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비수급자	계
494	20	431	945
52.3	2.1	45.6	100.0

[그림 4-6]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나. 학대행위자

1) 학대행위자 성별

장애인학대의 행위자는 하나의 사례에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하나의 사례에 행위자가 다수이더라도 주 행위자 1명에 대한 정보만 통계로 집계하고 있어 본 보고서의 피해장애인 수와 학대행위자 수는 동일하게 945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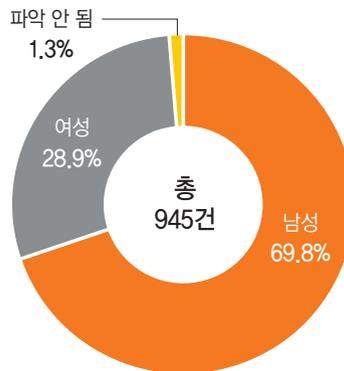
2019년 장애인학대사례 945건의 학대행위자 성별을 보면 남성이 69.8%(660명), 여성이 28.9%(273명), 성별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1.3%(12명)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2.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남성		여성		파악 안 됨		계	
660	69.8	273	28.9	12	1.3	945	100.0

[그림 4-7] 학대행위자 성별



2) 학대행위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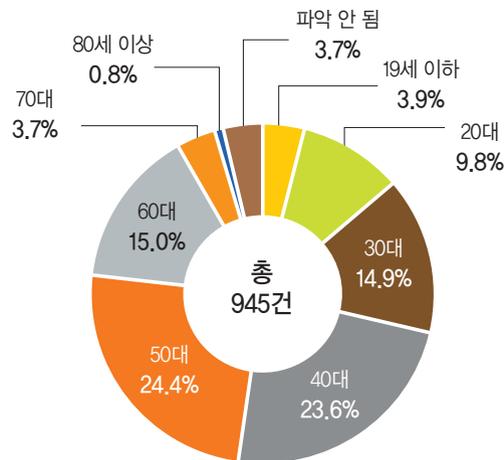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전년도에 비하면 60대(26.2%, 233명)가 가장 많았으나 2019년 학대행위자는 50대(24.4%, 231명)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40대(23.6%, 223명), 60대(15.0%, 14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19세 이하는 11명에서 37명으로 약 3.4배 이상 증가하였고, 40대의 경우는 143명에서 223명 약 1.6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4-9] 학대행위자 연령

(단위: 명, %)

연령	명수	비율
19세 이하	37	3.9
20대(20~29세)	93	9.8
30대(30~39세)	141	14.9
40대(40~49세)	223	23.6
50대(50~59세)	231	24.4
60대(60~69세)	142	15.0
70대(70~79세)	35	3.7
80세 이상	8	0.8
파악 안 됨	35	3.7
계	945	100.0

[그림 4-8] 학대행위자 연령



3)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관계는 가족 및 친인척, 타인, 기관종사자, 파악 안 됨으로 분류하고 있다. 법률적 관계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가족 및 친인척에는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그 외 친척이 포함된다. 타인에는 동거인, 이웃, 지인, 고용주, 모르는 사람이 포함된다. 지인은 직장 동료, 선후배, 친구 등이 포함되며, 고용주는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기관종사자는 피해장애인과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피해장애인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종사자, 장애인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종사자나 그 외 피해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 장애인단체,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같은 사회복지관련 기관의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장애인학대사례 945건 중 학대행위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타인에 의한 학대가 38.6%(365건)로 가장 많았고,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34.0%(321건),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26.8%(2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기관종사자(39.3%) - 가족 및 친인척(30.5%) - 타인(29.7%) 순으로 나타났던 점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타인에 의한 학대는 전년도(264건) 대비 3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보면 학대행위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인 18.3%(173건), 부모 12.0%(1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지인에 의한 학대는 전년도(93건) 대비 86.0%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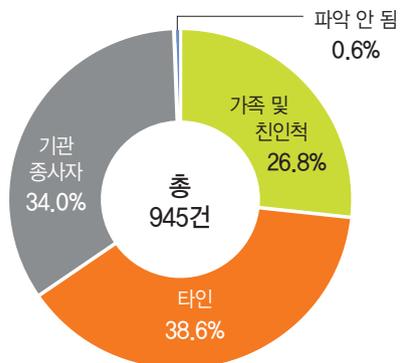
관계별 학대행위자를 보면 가족 및 친인척의 경우 부모가 12.0%(113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가 4.4%(42건), 그 외 친척이 4.3%(41건) 순이었다. 타인의 경우 지인이 18.3%(173건)로 가장 많았으며, 모르는 사람 6.8%(64건), 고용주 5.1%(48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종사자의 경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1.0%(198건)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는 7.3%(69건)로 그 뒤를 이었다.

[표 4-1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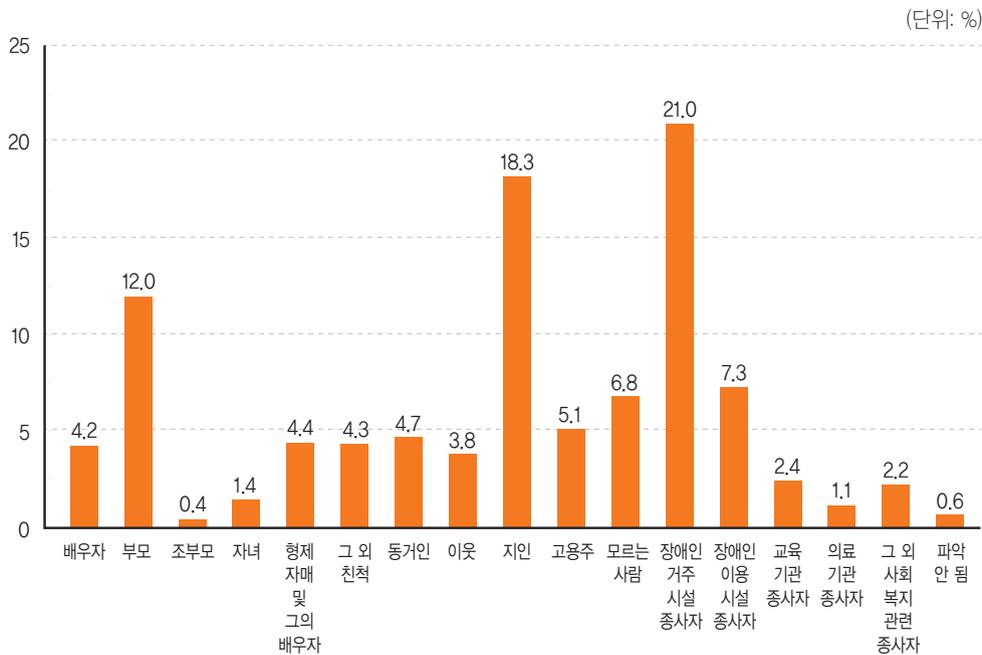
(단위: 건, %)

관계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40	4.2
	부모	113	12.0
	조부모	4	0.4
	자녀	13	1.4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42	4.4
	그 외 친척	41	4.3
	소계	253	26.8
타인	동거인	44	4.7
	이웃	36	3.8
	지인	173	18.3
	고용주	48	5.1
	모르는 사람	64	6.8
	소계	365	38.6
기관종사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198	21.0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69	7.3
	교육기관 종사자	23	2.4
	의료기관 종사자	10	1.1
	그 외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21	2.2
	소계	321	34.0
파악 안 됨		6	0.6
계		945	100.0

[그림 4-9]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가의 관계(대분류)



[그림 4-10]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가의 관계 (단위: %)



4) 학대행위자의 신고의무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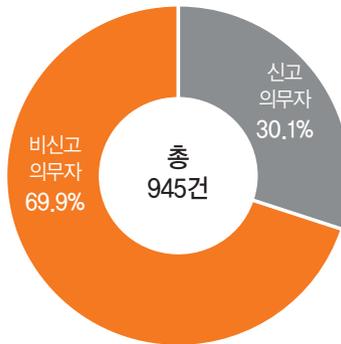
신고의무자는 대부분 가까운 거리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안전을 돌보는 직무특성을 갖고 있다. 2019년 장애인학대사례 945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학대는 30.1%(284건)로 10건의 장애인학대사례 중 3건이 신고의무자에 의해 일어났다. 신고의무자의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학대행위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표 4-11]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단위: 건, %)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계	
284	30.1	661	69.9	945	100.0

[그림 4-11]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 여부



5) 학대행위자의 신고의무자 직군

장애인학대사례 945건 중 학대행위자가 신고의무자인 사례는 284건이었다. 신고의무자 21개 직군 중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가 학대행위자인 경우가 84.9%(241건)로 가장 많았으며, 초·중·고 교직원 및 교사 5.6%(16건) 등의 순이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거주시설 종사자가 64.4%(183건), 이용시설 종사자 20.4%(58건)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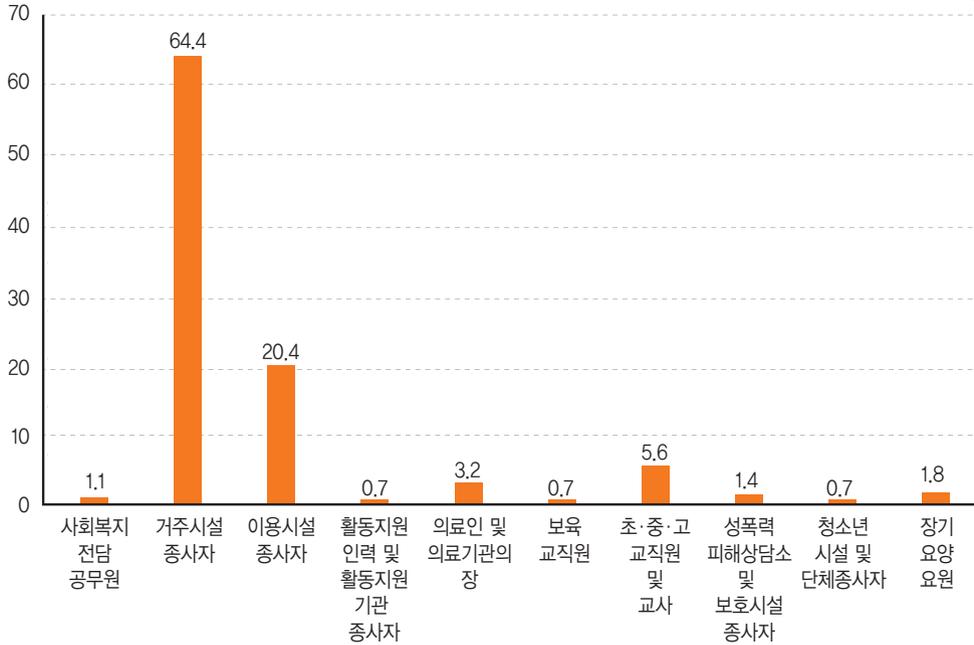
[표 4-12]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 직군

(단위: 건, %)

신고의무자 유형		건수	비율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	1.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거주시설	183	64.4
	이용시설	58	20.4
	소계	241	84.9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2	0.7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9	3.2
의료기사		-	-
응급구조사		-	-
구급대의 대원		-	-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	-
보육교직원		2	0.7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	-
초·중·고 교직원 및 교사		16	5.6
학원·교습소 강사 및 직원		-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4	1.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	-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	-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	-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2	0.7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	-
장기요양요원		5	1.8
계		284	100.0

[그림 4-12] 학대행위자 신고의무자 직군

(단위: %)



6)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동거여부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의 동거여부를 보면 장애인학대사례 945건 중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678건(71.7%)이었으며, 동거하는 경우가 264건(27.9%),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3건(0.3%)이었다.

[표 4-13]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동거여부

(단위: 건, %)

동거		비동거		파악 안 됨		계	
264	27.9	678	71.7	3	0.3	945	100.0

2. 장애인학대 발생현황

가.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장애인학대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유형 및 행위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해장애인 거주지, 학대행위자 거주지, 직장 및 일터,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시설, 종교시설, 상업시설을 주요 학대 발생장소로 보고 있다.

피해장애인 거주지는 피해장애인의 주거 공간에서 학대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학대행위자 거주지는 행위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공간을 말하며 행위자와 피해장애인이 함께 살더라도 행위자의 지배 하에 있는 공간이라면 이는 학대행위자 거주지로 본다.

직장 및 일터는 고용계약과 무관하게 피해장애인이 일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논과 밭, 과수원 등에서 피해장애인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장소에서 학대가 있었다면 논과 밭, 과수원 등을 직장 및 일터로 본다.

교육기관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학원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한 의원, 조산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을 말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거주시설을 말하며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도 이에 포함된다. 장애인이용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상품 판매시설 등을 말한다.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기관, 아동·청소년 등 타 사회복지관련기관과 같은 장애인 거주 및 이용시설을 제외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을 말한다.

종교시설은 교회, 절, 기도원 등을 말한다. 상업시설은 슈퍼·편의점·마트, 식당, 커피전문점, PC방, 노래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이 외에 피해자나 행위자의 집이 아닌 제3자의 집, 길 거리에서도 학대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런 경우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장애인학대가 발생하는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2.8%(310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거주시설과 이용시설을 합친 장애인복지시설이 31.2%(295건), 학대행위자 거주지가 8.4%(79건), 직장 및 일터가 8.0%(7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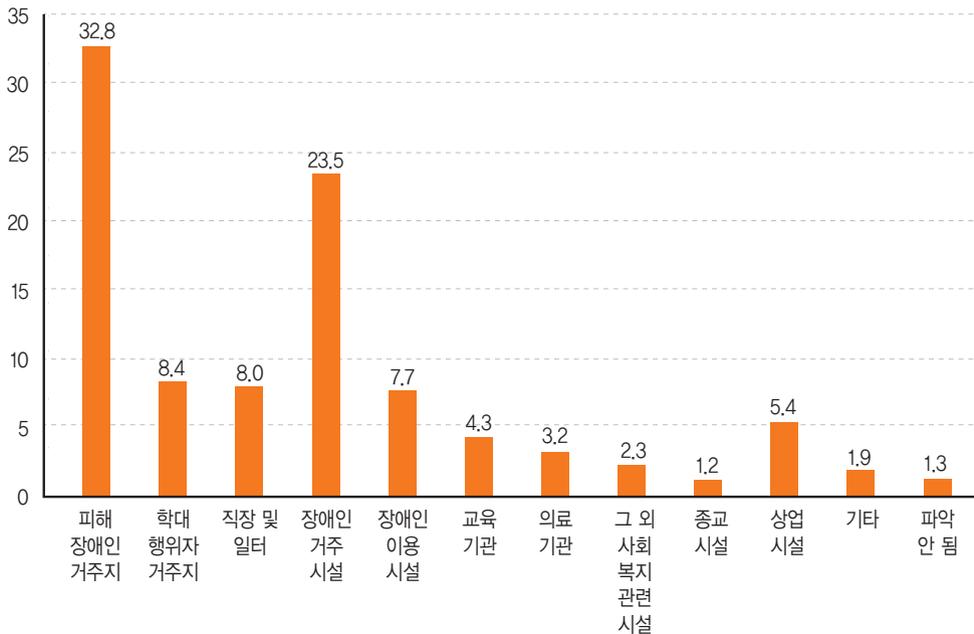
[표 4-14]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310	32.8
학대행위자 거주지		79	8.4
직장 및 일터		76	8.0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222	23.5
	장애인이용시설	73	7.7
	소계	295	31.2
교육기관		41	4.3
의료기관		30	3.2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22	2.3
종교시설		11	1.2
상업시설		51	5.4
기타		18	1.9
파악 안 됨		12	1.3
계		945	100.0

[그림 4-13] 장애인학대 발생장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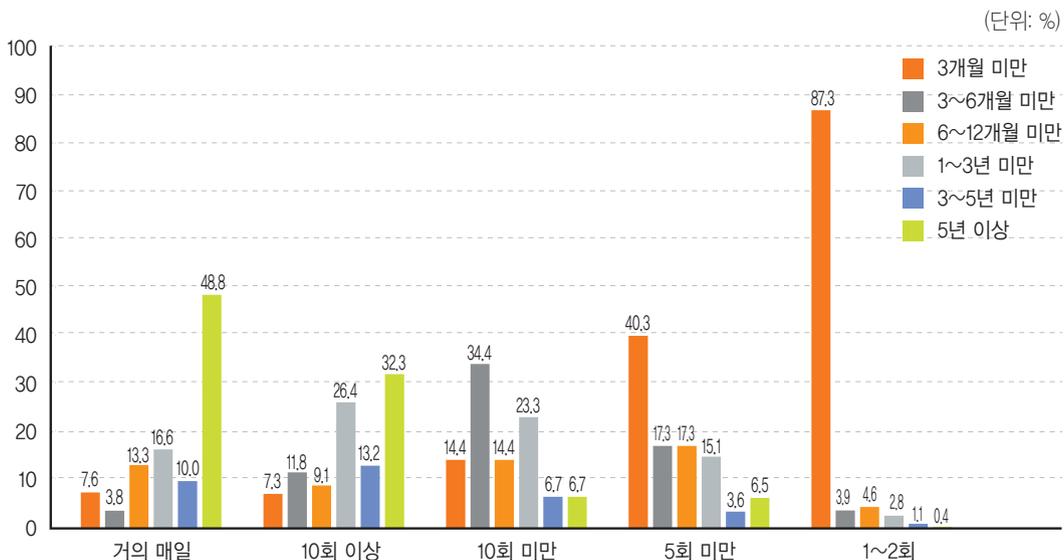


나.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장애인학대 지속기간은 최초 학대가 시작된 시점부터 발견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3개월 미만부터 5년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발생빈도는 장애인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거의 매일, 10회 이상, 10회 미만, 5회 미만, 1~2회로 분류하였다. 장애인학대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 36.9%(349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인학대 지속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가 57.9%(547건)이었다. 5년 이상 장기간 학대에 노출된 사례는 전체의 20.1%(190건)로 3개월 미만인 사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학대 발생빈도와 지속기간을 보면 장애인학대 발생빈도가 1~2회일 때 장애인학대 지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87.3%(248건)로 나타났고, 발생빈도가 10회 이상일 때에는 장애인학대 지속기간이 1~3년 미만인 경우가 26.4%(58건)로 나타났다. 발생빈도가 거의 매일일 때 장애인학대 지속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48.8%(103건)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학대의 지속기간이 길수록 장애인학대 발생빈도가 높으므로 장애인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에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림 4-14]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표 4-15] 장애인학대 지속기간 및 발생빈도

(단위: 건, %)

구분	발생빈도														
	거의 매일		10회 이상		10회 미만		5회 미만		1~2회		파악 안 됨		계		
지 속 기 간	3개월 미만	16	7.6	16	7.3	13	14.4	56	40.3	248	87.3	-	-	349	36.9
	3-6개월 미만	8	3.8	26	11.8	31	34.4	24	17.3	11	3.9	-	-	100	10.6
	6-12개월 미만	28	13.3	20	9.1	13	14.4	24	17.3	13	4.6	-	-	98	10.4
	1-3년 미만	35	16.6	58	26.4	21	23.3	21	15.1	8	2.8	-	-	143	15.1
	3-5년 미만	21	10.0	29	13.2	6	6.7	5	3.6	3	1.1	-	-	64	6.8
	5년 이상	103	48.8	71	32.3	6	6.7	9	6.5	1	0.4	-	-	190	20.1
	파악 안 됨	-	-	-	-	-	-	-	-	-	-	1	100.0	1	0.1
계	211	100.0	220	100.0	90	100.0	139	100.0	284	100.0	1	100.0	945	100.0	

3.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이 정의에 기초하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으로 장애인학대를 분류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유형력)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인 방법(폭언, 헐박, 비하 등)이나 비언어적인 방법(무시, 비웃음 등) 등 다양한 형태로 마음에 상처를 입히거나 심한 수치심, 모욕감,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적 학대는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의 성적 착취, 성희롱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경제적 착취는 장애인의 금전, 가치 있는 물건 등 재산을 힘으로 빼앗거나 장애인을 속여서 스스로 내어 놓도록 함으로써 행위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유기는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후견인 등)이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방임은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보호나 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장애인학대사례를 보면 한 사건에 여러 학대 유형이 동반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 외 피해장애인이 중복하여 경험한 '중복 학대'를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를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로, 중복 학대를 고려하지 않고 피해장애인이 경험한 학대를 각각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분석한 결과를 '장애인학대 유형(중복 학대 미분류)'로 나눠 분석하였다.

가. 장애인학대 유형

1)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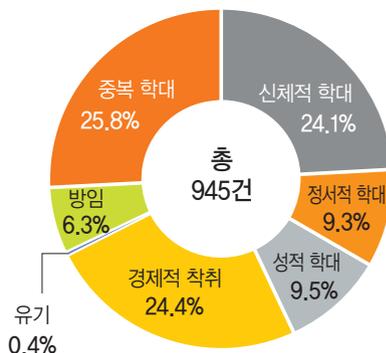
중복 학대를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학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학대사례 945건 중 중복 학대는 25.8%(244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24.4%(231건), 신체적 학대 24.1%(228건), 성적 학대 9.5%(90건), 정서적 학대 9.3%(88건), 방임 6.3%(60건), 유기 0.4%(4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학대유형의 건수가 중복학대(263건) - 경제적 착취(186건) - 신체적 학대(166건) - 방임(130건) - 정서적 학대(70건) - 성적 학대(69건) - 유기(5건) 순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일부 학대유형의 순위가 변경되었으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대유형에는 큰 변화가 없다. 다만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주요 학대 유형 중 신체적 학대는 37.3% 증가했고, 경제적 착취는 2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복 학대는 7.2% 감소하였다.

[표 4-16]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학대 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228	24.1
정서적 학대	88	9.3
성적 학대	90	9.5
경제적 착취	231	24.4
유기	4	0.4
방임	60	6.3
중복 학대	244	25.8
계	945	100.0

[그림 4-15]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피해장애인이 경험한 학대유형을 중복여부의 구분 없이 각각 하나의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총 1,258건이다. 이 중 신체적 학대가 33.0%(415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착취 26.1%(328건), 정서적 학대 20.1%(253건), 방임 10.2%(128건), 성적 학대 9.5%(119건), 유기 1.2%(15건)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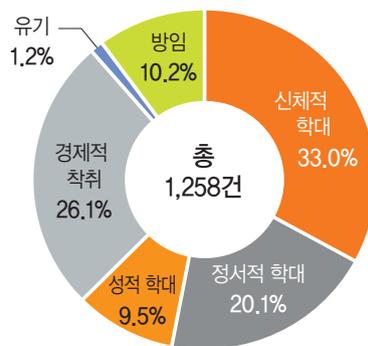
전년도 학대유형의 건수가 신체적 학대(339건) - 경제적 착취(302건) - 방임(229건) - 정서적 학대(221건) - 성적 학대(111건) - 유기(32건) 순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신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를 제외한 나머지 학대유형의 순위에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전년도와 비교해 신체적 학대는 22.4%, 정서적 학대는 14.5%, 경제적 착취는 8.6% 증가하였다.

[표 4-17]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학대 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415	33.0
정서적 학대	253	20.1
성적 학대	119	9.5
경제적 착취	328	26.1
유기	15	1.2
방임	128	10.2
계	1,258	100.0

[그림 4-16]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나. 장애인학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장애인학대 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결과는 별도의 학대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은 1,258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1)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피해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와 방임에서는 각각 17.6%p, 20.2%p, 6.2%p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여성은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에서 각각 4.4%p, 76.4%p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성적 학대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약 7배 이상 높았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신체적 학대(178건)의 경우 남성이 37.1% 증가하였고 경제적 착취(105건)의 경우 여성이 24.8%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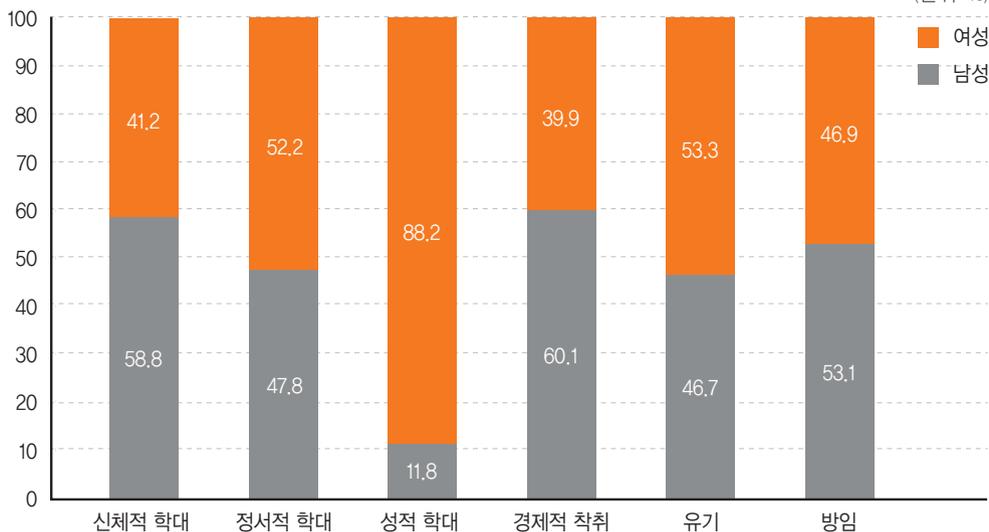
[표 4-18]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남성	244	58.8	121	47.8	14	11.8	197	60.1	7	46.7	68	53.1	651	51.7
여성	171	41.2	132	52.2	105	88.2	131	39.9	8	53.3	60	46.9	607	48.2
계	415	100.0	253	100.0	119	100.0	328	100.0	15	100.0	128	100.0	1,258	100.0

[그림 4-17]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



2)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피해장애인의 연령은 10대부터 70대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의 피해장애인은 19세 이하가 가장 많았고, 30대, 2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의 피해장애인은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9세 이하, 30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의 피해장애인은 2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40대 순으로 많았다. 경제적 착취의 피해장애인은 다른 학대유형과 다르게 5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0대 등의 순이었다. 유기는 50대인 피해장애인이 가장 많았으며, 방임은 19세 이하에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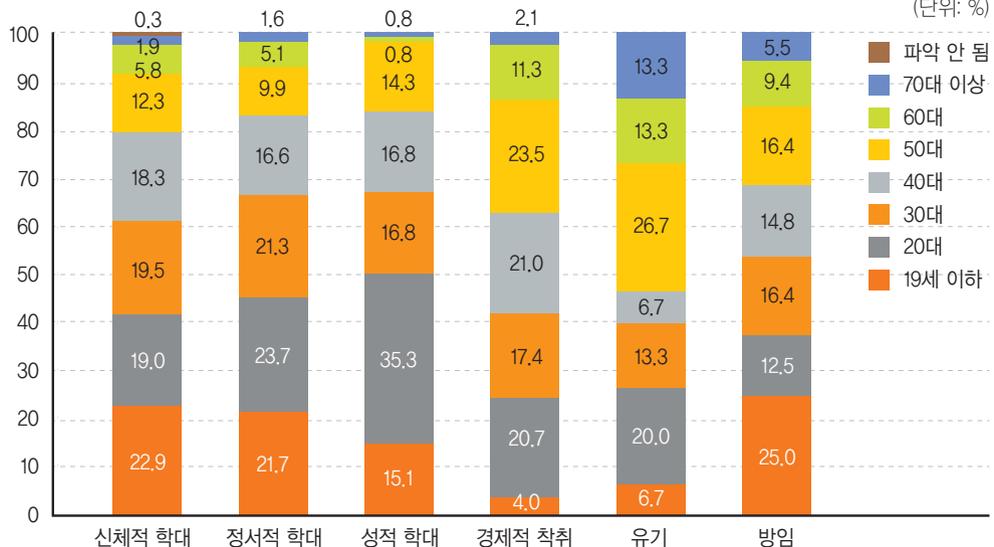
[표 4-19]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명,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19세 이하	95	22.9	55	21.7	18	15.1	13	4.0	1	6.7	32	25.0	214	17.0
20대	79	19.0	60	23.7	42	35.3	68	20.7	3	20.0	16	12.5	268	21.3
30대	81	19.5	54	21.3	20	16.8	57	17.4	2	13.3	21	16.4	235	18.7
40대	76	18.3	42	16.6	20	16.8	69	21.0	1	6.7	19	14.8	227	18.0
50대	51	12.3	25	9.9	17	14.3	77	23.5	4	26.7	21	16.4	195	15.5
60대	24	5.8	13	5.1	1	0.8	37	11.3	2	13.3	12	9.4	89	7.1
70대 이상	8	1.9	4	1.6	1	0.8	7	2.1	2	13.3	7	5.5	29	2.3
파악 안 됨	1	0.3	-	-	-	-	-	-	-	-	-	-	1	0.1
계	415	100.0	253	100.0	119	100.0	328	100.0	15	100.0	128	100.0	1,258	100.0

[그림 4-18]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



3)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유형별 학대 유형을 보면 지체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학대·경제적 착취가 각각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적 학대 38.0%, 정서적 학대 22.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은 신체적 학대 37.1%, 경제적 착취 22.9% 순이었으며,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가 37.5%로 가장 높았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32.5%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착취 27.3%, 정서적 학대 18.9% 순이었다.

자폐성장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51.0%로 가장 높았고, 정서적 학대가 19.6%로 그 뒤를 이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경제적 착취 32.1%, 정서적 학대 24.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0] 장애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지체장애	24	29.3	20	24.4	5	6.1	24	29.3	-	-	9	11.0	82	100.0
뇌병변장애	30	38.0	18	22.8	5	6.3	14	17.7	2	2.5	10	12.7	79	100.0
시각장애	13	37.1	7	20.0	1	2.9	8	22.9	-	-	6	17.1	35	100.0
청각장애	5	31.2	6	37.5	-	-	5	31.2	-	-	-	-	16	100.0
언어장애	3	37.5	2	25.0	-	-	3	37.5	-	-	-	-	8	100.0
지적장애	268	32.5	156	18.9	93	11.3	225	27.3	9	1.1	73	8.9	824	100.0
자폐성장장애	26	51.0	10	19.6	1	2.0	6	11.8	-	-	8	15.7	51	100.0
정신장애	19	23.5	20	24.7	7	8.6	26	32.1	2	2.5	7	8.6	81	100.0
신장장애	-	-	-	-	-	-	-	-	-	-	1	100.0	1	100.0
안면장애	-	-	-	-	-	-	-	-	-	-	-	-	-	100.0
뇌전증장애	3	100.0	-	-	-	-	-	-	-	-	-	-	3	100.0
미등록	24	30.8	14	17.9	7	9.0	17	21.8	2	2.6	14	17.9	78	100.0
계	415	33.0	253	20.1	119	9.5	328	26.1	15	1.2	128	10.2	1,258	100.0

4)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피해장애인의 거주유형은 주로 재가였으며 특히 정서적 학대(72.3%)와 성적 학대(84.0%)는 재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장애인학대 유형별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재가	273	65.8	183	72.3	100	84.0	233	71.0	8	53.3	78	60.9	875	69.6
시설	142	34.2	70	27.7	19	16.0	95	29.0	7	46.7	50	39.1	383	30.4
계	415	100.0	253	100.0	119	100.0	328	100.0	15	100.0	128	100.0	1,258	100.0

5)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학대행위자는 기관종사자가 36.6%(460건)로 나타났으며, 타인이 36.1%(454건), 가족 및 친인척이 26.9%(338건),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0.5%(6건)이었다.

학대유형별로 신체적 학대에서 행위자가 기관종사자인 경우는 47.5%(197건)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족 및 친인척 29.8%(124건), 타인 22.4%(93건)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기관종사자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7.5%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가 10.4%로 그 뒤를 이었다. 가족 및 친인척 중 부모는 14.0%, 타인 중 지인이 행위자인 경우는 10.4%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에서 행위자가 기관종사자인 경우는 44.6%(113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인 29.3%(74건), 가족 및 친인척 26.2%(66건)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기관종사자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2.5%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는 15.4%로 뒤를 이었다. 타인 중에서는 지인이 12.3%, 가족 및 친인척 중 부모가 11.9%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의 행위자는 타인이 73.2%(87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타인 중 지인은 39.5%로 가장 높았으며, 모르는 사람은 16.0%, 이웃은 10.1%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의 행위자는 타인인 경우가 56.5%(185건)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관종사자가 24.1%(79건)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타인 중 지인이 행위자인 경우가 24.7%로 가장 높았고, 고용주가 12.2%로 그 뒤를 이었다. 기관종사자 중 행위자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인 경우는 22.3%로 높게 나타났다.

유기의 경우 학대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이 53.4%(8건)로 가장 높았으며 세부적으로 배우자가 20.0%, 부모가 13.3%로 나타났다.

방임의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 기관종사자가 각각 44.5%(57건)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 및 친인척 중 행위자는 부모가 27.3%, 기관종사자 중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8.9%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2] 장애인학대 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장애인가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27	6.5	17	6.7	5	4.2	3	0.9	3	20.0	10	7.8	65	5.2
	부모	58	14.0	30	11.9	7	5.9	14	4.3	2	13.3	35	27.3	146	11.6
	조부모	1	0.2	1	0.4	-	-	1	0.3	-	-	1	0.8	4	0.3
	자녀	10	2.4	4	1.6	-	-	1	0.3	1	6.7	1	0.8	17	1.4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0	4.8	4	1.6	2	1.7	22	6.7	1	6.7	7	5.5	56	4.5
	그 외 친척	8	1.9	10	4.0	6	5.0	22	6.7	1	6.7	3	2.3	50	4.0
	소계	124	29.8	66	26.2	20	16.8	63	19.2	8	53.4	57	44.5	338	26.9
타인	동거인	22	5.3	11	4.3	7	5.9	18	5.5	5	33.3	6	4.7	69	5.5
	이웃	5	1.2	10	4.0	12	10.1	14	4.3	-	-	-	-	41	3.3
	지인	43	10.4	31	12.3	47	39.5	81	24.7	-	-	4	3.1	206	16.4
	고용주	10	2.4	12	4.7	2	1.7	40	12.2	-	-	-	-	64	5.1
	모르는 사람	13	3.1	10	4.0	19	16.0	32	9.8	-	-	-	-	74	5.9
	소계	93	22.4	74	29.3	87	73.2	185	56.5	5	33.3	10	7.8	454	36.1
기관 종사자	장애인거주 시설 종사자	114	27.5	57	22.5	8	6.7	73	22.3	1	6.7	37	28.9	290	23.1
	장애인이용 시설 종사자	43	10.4	39	15.4	2	1.7	2	0.6	-	-	6	4.7	92	7.3
	교육기관 종사자	18	4.3	5	2.0	2	1.7	-	-	1	6.7	7	5.5	33	2.6
	의료기관 종사자	8	1.9	1	0.4	-	-	-	-	-	-	2	1.6	11	0.9
	그 외 사회복지 관련종사자	14	3.4	11	4.3	-	-	4	1.2	-	-	5	3.9	34	2.7
	소계	197	47.5	113	44.6	12	10.1	79	24.1	2	13.4	57	44.5	460	36.6
파악 안 됨	1	0.2	-	-	-	-	1	0.3	-	-	4	3.1	6	0.5	
계	415	100.0	253	100.0	119	100.0	328	100.0	15	100.0	128	100.0	1,258	100.0	

다.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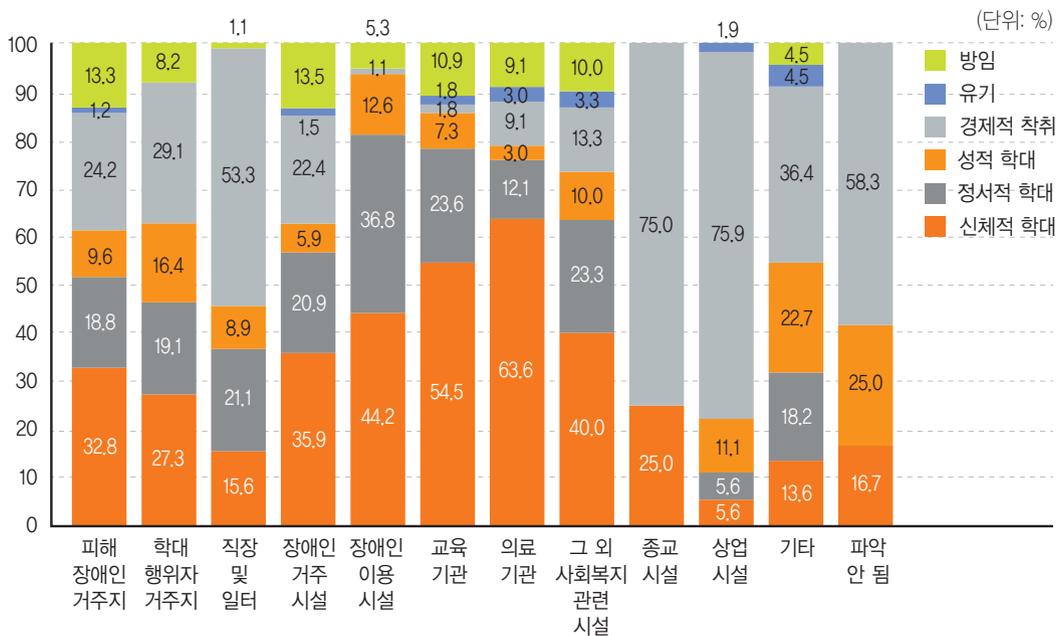
발생장소에 따른 장애인학대 유형을 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에서 신체적 학대(32.8%)와 경제적 착취(24.2%)의 발생비율이 높았으며, 학대행위자 거주지에서는 경제적 착취(29.1%)와 신체적 학대(27.3%)가 높게 나타났다. 직장 및 일터에서 경제적 착취(53.3%)와 정서적 학대(21.1%)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신체적 학대(35.9%)와 경제적 착취(22.4%)가 주로 발생했고, 장애인이용시설에서도 신체적 학대(44.2%)와 정서적 학대(36.8%)의 발생비율이 높았다. 교육기관에서는 신체적 학대(54.5%)와 정서적 학대(23.6%)가 주로 발생했고, 상업시설에서는 경제적 착취(75.9%)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피해장애인 거주지	133	32.8	76	18.8	39	9.6	98	24.2	5	1.2	54	13.3	405	100.0
학대행위자 거주지	30	27.3	21	19.1	18	16.4	32	29.1	-	-	9	8.2	110	100.0
직장 및 일터	14	15.6	19	21.1	8	8.9	48	53.3	-	-	1	1.1	90	100.0
장애인거주시설	122	35.9	71	20.9	20	5.9	76	22.4	5	1.5	46	13.5	340	100.0
장애인이용시설	42	44.2	35	36.8	12	12.6	1	1.1	-	-	5	5.3	95	100.0
교육기관	30	54.5	13	23.6	4	7.3	1	1.8	1	1.8	6	10.9	55	100.0
의료기관	21	63.6	4	12.1	1	3.0	3	9.1	1	3.0	3	9.1	33	100.0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시설	12	40.0	7	23.3	3	10.0	4	13.3	1	3.3	3	10.0	30	100.0
종교시설	3	25.0	-	-	-	-	9	75.0	-	-	-	-	12	100.0
상업시설	3	5.6	3	5.6	6	11.1	41	75.9	1	1.9	-	-	54	100.0
기타	3	13.6	4	18.2	5	22.7	8	36.4	1	4.5	1	4.5	22	100.0
파악 안 됨	2	16.7	-	-	3	25.0	7	58.3	-	-	-	-	12	100.0
계	415	33.0	253	20.1	119	9.5	328	26.1	15	1.2	128	10.2	1,258	100.0

[그림 4-19] 발생장소별 장애인학대 유형



라.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장애인 학대사례 945건의 발생장소에 따른 학대행위자 유형을 보면 피해장애인 거주지에서는 부모가 28.7%로 가장 높았으며, 지인 15.5%, 배우자 10.6%, 그 외 친척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거주지에서는 지인에 의한 학대가 26.6%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가 17.7%로 그 뒤를 이었다.

직장 및 일터에서는 고용주가 53.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인이 19.7%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81.5%,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7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업시설의 경우는 모르는 사람이 45.1%, 지인이 37.3%로 나타났다.

[표 4-24] 발생장소별 학대행위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피해 장애인 거주지	학대 행위자 거주지		직장 및 일터	장애인복지시설				교육 기관	의료 기관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시설	종교 시설	상업 시설	기타	파악 안 됨	계												
		장애인 거주지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33	10.6	3	3.8	1	1.3	-	-	-	-	-	-	2	6.7	-	-	-	-	1	2.0	-	-	-	-	40	4.2	
	부모	89	28.7	14	17.7	3	3.9	2	0.9	1	1.4	-	-	1	3.3	1	4.5	-	-	1	2.0	1	5.6	-	-	113	12.0	
	조부모	4	1.3	-	-	-	-	-	-	-	-	-	-	-	-	-	-	-	-	-	-	-	-	-	-	-	4	0.4
	자녀	11	3.5	1	1.3	-	-	-	-	-	-	-	-	-	-	-	-	-	-	-	1	2.0	-	-	-	-	13	1.4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7	8.7	10	12.7	1	1.3	-	-	-	-	-	-	-	1	3.3	-	-	-	-	1	2.0	-	-	2	16.7	42	4.4
	그 외 친척	32	10.3	6	7.6	-	-	1	0.5	-	-	-	-	-	1	3.3	-	-	-	-	1	2.0	-	-	-	41	4.3	
	소계	196	63.2	34	43.0	5	6.6	3	1.4	1	1.4	-	-	5	16.7	1	4.5	-	-	5	9.8	1	5.6	2	16.7	253	26.8	
타인	동거인	21	6.8	2	2.5	1	1.3	14	6.3	-	-	-	-	-	-	-	1	9.1	3	5.9	2	11.1	-	-	44	4.7		
	이웃	16	5.2	10	12.7	3	3.9	2	0.9	1	1.4	1	2.4	-	-	-	-	-	1	2.0	2	11.1	-	-	36	3.8		
	지인	48	15.5	21	26.6	15	19.7	11	5.0	12	16.4	19	46.3	2	6.7	3	13.6	9	81.8	19	37.3	5	27.8	9	75.0	173	18.3	
	고용주	4	1.3	3	3.8	41	53.9	-	-	-	-	-	-	-	-	-	-	-	-	-	-	-	-	-	-	48	5.1	
	모르는 사람	14	4.5	7	8.9	4	5.3	-	-	3	4.1	-	-	3	10.0	1	4.5	1	9.1	23	45.1	7	38.9	1	8.3	64	6.8	
	소계	103	33.2	43	54.4	64	84.2	27	12.2	16	21.9	20	48.8	5	16.7	4	18.2	11	100.0	46	90.2	16	88.9	10	83.3	365	38.6	
기관 종사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1	0.3	-	-	-	-	181	81.5	-	-	-	-	10	33.3	6	27.3	-	-	-	-	-	-	-	-	198	21.0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2	0.6	1	1.3	4	5.3	5	2.3	55	75.3	-	-	-	-	2	9.1	-	-	-	-	-	-	-	69	7.3		
	교육기관 종사자	-	-	-	-	1	1.3	1	0.5	1	1.4	20	48.8	-	-	-	-	-	-	-	-	-	-	-	23	2.4		
	의료기관 종사자	-	-	-	-	-	-	-	-	-	-	-	-	10	33.3	-	-	-	-	-	-	-	-	-	-	10	1.1	
	그 외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3	1.0	1	1.3	2	2.6	5	2.3	-	-	-	-	-	-	9	40.9	-	-	-	-	1	5.6	-	-	21	2.2	
	소계	6	1.9	2	2.5	7	9.2	192	86.5	56	76.7	20	48.8	20	66.7	17	77.3	-	-	-	-	1	5.6	-	-	321	34.0	
파악 안 됨	5	1.6	-	-	-	-	-	-	-	-	1	2.4	-	-	-	-	-	-	-	-	-	-	-	-	-	6	0.6	
계	310	100	79	100	76	100	222	100	73	100	41	100	30	100	22	100	11	100	51	100	18	100	12	100	945	100		

마.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중복 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1,258건의 장애인학대사례에 대하여 장애인학대 유형에 따른 지속기간을 살펴 보았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의 경우 지속기간이 3개월 미만에서 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착취와 방임은 지속기간이 5년 이상인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장애인학대 유형별 지속기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3개월 미만	184	44.3	79	31.2	71	59.7	60	18.3	6	40.0	20	15.6	420	33.4
3-6개월 미만	36	8.7	29	11.5	12	10.1	32	9.8	-	-	16	12.5	125	9.9
6-12개월 미만	38	9.2	49	19.4	9	7.6	45	13.7	-	-	10	7.8	151	12.0
1-3년 미만	57	13.7	33	13.0	9	7.6	76	23.2	2	13.3	31	24.2	208	16.5
3-5년 미만	20	4.8	23	9.1	5	4.2	32	9.8	2	13.3	15	11.7	97	7.7
5년 이상	80	19.3	40	15.8	12	10.1	83	25.3	5	33.3	36	28.1	256	20.3
파악 안 됨	-	-	-	-	1	0.8	-	-	-	-	-	-	1	0.1
계	415	100.0	253	100.0	119	100.0	328	100.0	15	100.0	128	100.0	1,258	100.0

4.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조사 후 학대여부를 판정한 뒤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다. 조사 및 지원 과정에서 피해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응급조치를 통해 안전한 곳에 일시보호하거나 의료적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한다. 이후 학대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맞춤형 피해자 지원을 실시하고 학대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개입을 종료한다.

가. 응급조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에 따르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필요시 응급조치로 피해장애인 쉼터 등으로 연계하거나 의료기관 인도를 통해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다.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피해장애인 쉼터 외 성폭력 및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노인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및 아동쉼터, 발달장애인법에 따른 위기발달장애인쉼터, 노숙인복지지원법에 따른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현재 피해장애인 쉼터의 수가 전국적으로 부족하여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거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자립홈, 체험홈을 이용하고 있으며, 피해장애인의 가족 및 친인척의 집과 같은 기타 공간에서 피해장애인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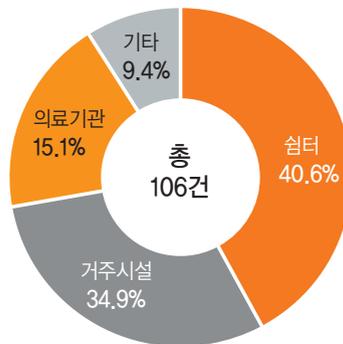
2019년 장애인학대사례 945건 중 응급조치는 106건(전체 사례의 11.2%) 실시되었으며 전년도(107건, 12.0%)와 유사한 수치이다. 응급조치 시 피해장애인이 쉼터를 이용한 경우는 43건(40.6%)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거주시설 37건(34.9%), 의료기관 16건(15.1%), 기타 10건(9.4%)이었다. 응급조치 장소로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한 경우가 전년도(19건)와 비교해 크게 증가하였다.

[표 4-26] 응급조치

(단위: 건, %)

쉼터	거주시설	의료기관	기타	계
43	37	16	10	106
40.6	34.9	15.1	9.4	100.0

[그림 4-20] 응급조치



나. 피해장애인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기타 등 6개 영역으로 나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한 사례에 여러 가지의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지원은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 등의 치료와 피해의 회복을 돕는 것으로 통원치료나 검진 등을 말한다. 심리지원은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심리진단, 심리상담,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지원은 피해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는 지원으로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신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법지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학대로 인하여 피해장애인이 입게 된 손해의 회복, 학대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견인 선임 등 사법절차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복지지원은 장애인등록,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제도, 활동지원서비스, 취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자원을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지원은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 간 중개, 피해장애인에 대한 교육 연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감사나 행정처분 요구, 피해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이뤄지는 상담 등을 말한다.

2019년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945건에 대해 피해장애인 지원은 총 1,981건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도(1,201건) 대비 64.9% 증가한 수치이다.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은 기타지원이 911건(46.0%)으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사법지원 431건(21.8%), 복지지원 279건(14.1%), 거주지원 143건(7.2%) 등의 순으로 실시하였다.

[표 4-27]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건,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기타	계
111	106	143	431	279	911	1,981
5.6	5.4	7.2	21.8	14.1	46.0	100.0

*중복지원포함

피해장애인의 회복을 위한 여러 지원 중 사법지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적극적 조치수단 중 하나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여러 장애인학대 유형 중 범죄로 볼 수 있는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사법지원은 고발 및 수사의뢰, 후견인 선임 및 연계,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소송구조, 기타로 나뉘며 사례에 따라 중복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고발 및 수사의뢰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행위자를 고발하거나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견인 선임은 피해장애인을 위해 후견인을 직접 선임하거나 선임을 위해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은 학대사건에 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피해장애인과 동행 및 동석, 필요시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구조는 피해장애인을 대리하여 직접 고소를 하거나 민사·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 또는 소송구조기관에 연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지원이 이루어진 431건의 세부적 사법지원 유형을 보면 행위자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가 43.9%(236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36.8%(198건), 기타지원 13.2%(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체 사법지원 건수는 420건에서 538건으로 28.1% 증가하였다. 또한, 전년도(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42.4%, 고발 및 수사의뢰 40.0%)와 비교하여, 고발 및 수사의뢰가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보다 증가했다는 점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법지원이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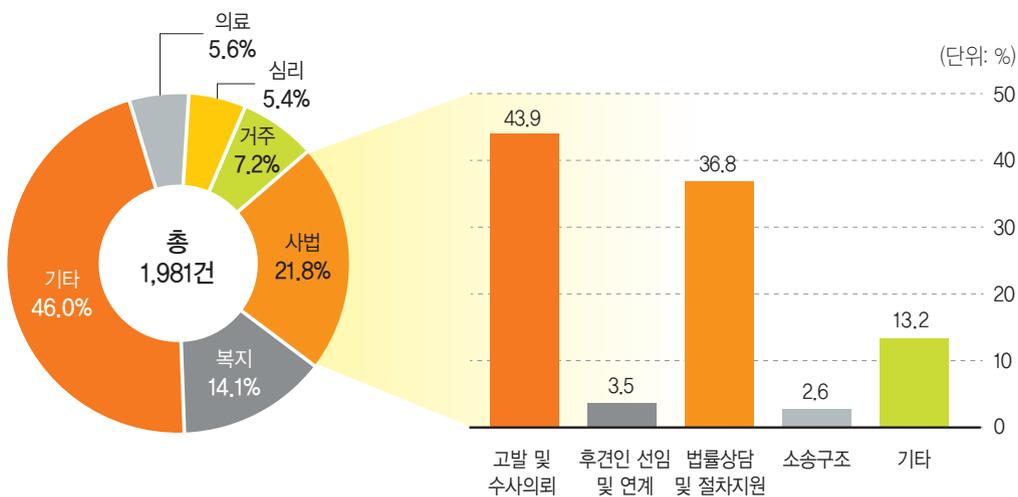
[표 4-28]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단위: 건, %)

고발 및 수사의뢰	후견인 선임 및 연계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소송구조	기타	계
236	19	198	14	71	538
43.9	3.5	36.8	2.6	13.2	100.0

*중복지원포함

[그림 4-21]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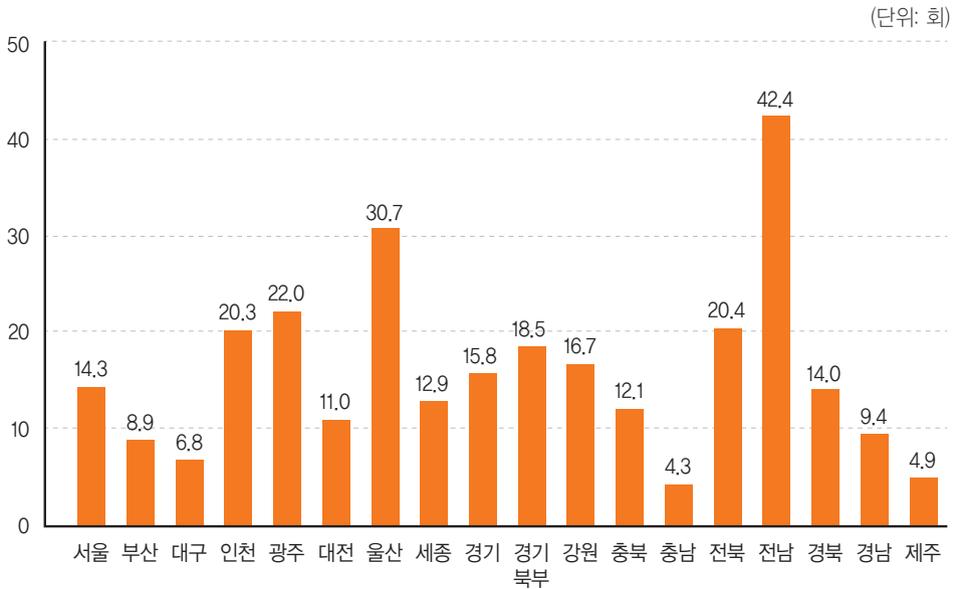


다. 지역 · 기관별 상담 및 지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로 판정된 2019년 신규 접수 사례(945건)와 2018년 접수되어 2019년에 진행 중인 사례(269건) 총 1,214건에 대해 17,837회의 상담 및 지원을 했으며, 장애인학대사례 1건당 평균 14.7회의 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는 전년도(11,083회) 대비 상담 및 지원이 60.9% 증가한 것이고, 학대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횟수(12.5회)는 17.6% 증가하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2019년 장애인학대사례(14.7회)를 학대의심사례(10.7회)보다 평균 4.0회 더 많이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및 기관별로 보면 전남이 사례 1건당 평균 42.4회로 가장 많은 상담 및 지원을 실시했으며, 울산이 사례 1건당 30.7회, 광주가 사례 1건당 22.0회, 전북이 사례 1건당 20.4회, 인천이 사례 1건당 20.3회 순으로 상담 및 지원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2] 지역 · 기관별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표 4-29] 지역·기관별 상담 및 지원

(단위: 건, 회)

구분	장애인학대사례	상담 및 지원 횟수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횟수
서울	71	1,016	14.3
부산	112	1,002	8.9
대구	45	306	6.8
인천	44	891	20.3
광주	31	681	22.0
대전	40	439	11.0
울산	47	1,445	30.7
세종	29	375	12.9
경기	경기	153	2,422
	경기북부	80	1,479
	소계	233	3,901
강원	83	1,390	16.7
충북	93	1,128	12.1
충남	73	312	4.3
전북	54	1,103	20.4
전남	34	1,441	42.4
경북	105	1,465	14.0
경남	78	735	9.4
제주	42	207	4.9
계	1,214	17,837	14.7

라. 사례종결

2019년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945건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결한 사례는 547건으로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은 57.9%로 나타났다. 학대의심사례의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73.4%)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에 장기적으로 사례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0] 사례종결

(단위: 건, %)

장애인학대사례	종결사례	당해 연도 사례종결율
945	547	57.9

마. 사후 모니터링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마친 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피해장애인의 안전과 재학대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사후 모니터링 기간 동안 최소 1회 이상 피해장애인을 직접 만나거나 소통하여 안전 및 학대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례가 종결되는 시점에 사후 모니터링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고, 피해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고 있다. 장애인학대사례로 판정했음에도 피해장애인이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피해장애인의 사망 및 수감, 국외 이주, 다른 지역기관으로 사례가 이관된 경우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는다.

2019년 종결된 장애인학대사례 547건 중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는 361건으로, 당해 연도 사후 모니터링 실시 비율은 66.0%로 나타났다. 2019년 실시한 사후 모니터링 횟수는 총 1,106회로 1건의 사례 당 약 3.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표 4-31] 사후 모니터링

(단위: 건, %, 회)

사후 모니터링 실시 사례	당해 연도 사후 모니터링 실시 비율	사후 모니터링 실시 횟수
361	66.0%	1,106





5

특성별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2. 노동력 착취사례
3.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제5장

특성별 장애인학대사례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장애인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에서 발달장애인 사례와 경제적 착취 중 노동력 착취사례, 장애인복지 시설 및 특수학교 등에서 발생한 집단이용시설 사례를 별도로 분석하였다.

1.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그리고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 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학대 피해장애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학대피해를 말한다.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2019년 전체 장애인학대사례의 72.0%(680건)⁴⁾로 전년도 626건과 비교해 8.6% 증가하였다. 발달장애인은 장애인학대의 주 피해자로 전체 장애유형 중 학대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618,918명이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241,614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9.2%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년 3.6%)에 있다.

4) 본 장에서는 학대피해 장애인의 주장에 또는 부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였다. 주장애의 유형을 보면 지적장애 623건(91.6%), 자폐성장애 37건(5.4%), 지체장애·뇌병변장애 7건(1.0%), 정신장애 3건(0.4%), 청각·신장·뇌전증장애 1건(0.1%) 등의 순이었으며, 부장애의 유형은 지적장애 19건, 지체장애 11건, 뇌병변장애 7건, 청각·정신장애 각각 6건, 뇌전증장애 3건, 시각장애 2건, 언어·자폐성장애 1건 등의 순이었다.

가.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학대피해 발달장애인(680명)의 지역기관별 현황을 보면 부산이 80명(11.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경기 76명(11.2%), 경기북부 62명(9.1%), 경북 56명(8.2%), 강원 52명(7.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적장애인이 9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지역별로는 부산(42명), 대구(9명), 경기(56명), 강원(32명)의 경우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5-1] 지역 및 기관별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단위: 명, %)

구분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	35	5.6	1	2.7	36	5.3	
부산	76	11.7	4	10.8	80	11.8	
대구	23	3.7	4	10.8	27	4.0	
인천	25	3.5	5	10.8	30	4.4	
광주	14	2.2	3	8.1	17	2.5	
대전	24	3.5	-	-	24	3.5	
울산	22	3.2	1	2.7	23	3.4	
세종	15	2.2	1	2.7	16	2.4	
경기	경기	73	11.4	3	8.1	76	11.2
	경기북부	61	9.5	1	2.7	62	9.1
	소계	134	20.9	4	10.8	138	20.3
강원	50	7.9	2	5.4	52	7.6	
충북	41	6.6	5	13.5	46	6.8	
충남	39	6.3	1	2.7	40	5.9	
전북	26	4.2	2	5.4	28	4.1	
전남	12	1.9	-	-	12	1.8	
경북	55	8.8	1	2.7	56	8.2	
경남	33	5.0	-	-	33	4.9	
제주	18	2.7	4	10.8	22	3.2	
계	642	100.0	38	100.0	680	100.0	

나.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발달장애인 학대의 신고자 유형을 보면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가 각각 340건(50.0%)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의 경우 21개 직군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3.4%(159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5.9%(108건), 초·중·고 교직원 2.6%(18건) 등의 순이었다. 비신고의무자의 경우는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관종사자가 24.7%(168건)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및 친인척 10.9%(74건), 타인 10.0%(6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학대사례와 비교하면 발달장애인 학대사례에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학대사례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44.6%였다.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학대피해자인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한 비율이다. 발달장애인 본인의 신고율은 4.0%(27건)로 전체 학대사례의 본인 신고율 6.3%, 전체 학대의 심사례의 본인 신고율 8.4%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이다. 전년도 발달장애인 본인에 의한 신고율 2.9%(18건)보다는 다소 높아졌다.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유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학대를 인지하여 신고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그들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학대예방·신고 프로그램 및 홍보 자료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5-2]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신고 의무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108	15.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59	23.4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12	1.7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4	0.6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3	0.4
	보육교직원	1	0.1
	유치원교직원	1	0.1
	초·중·고 교직원	18	2.6
	학원 및 교습소 강사 및 지원	1	0.1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6	2.4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및 상담소 종사자	1	0.1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13	1.9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3	0.4
	소계	340	50.0
비신고 의무자	본인	27	4.0
	가족 및 친인척	74	10.9
	기관종사자	168	24.7
	타인	68	10.0
	파악 안 됨	3	0.4
	소계	340	50.0
계		680	100.0

다.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1)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357명(52.5%), 여성이 323명(47.5%)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5.0%p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84명(27.1%)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39명(20.4%), 40대 117명(17.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장애인학대 피해장애인의 성별 및 연령 분포와 차이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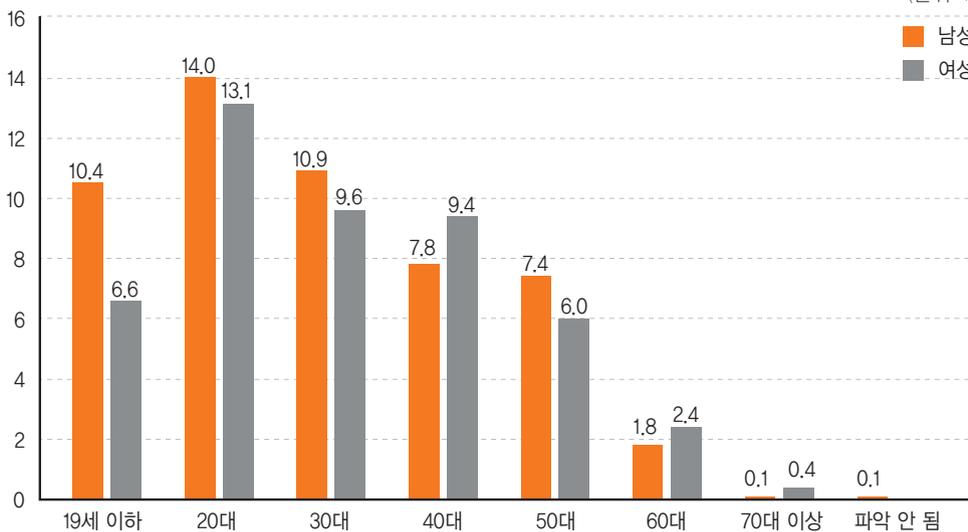
[표 5-3]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명, %)

구분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파악 안 됨		계	
남성	71	10.4	95	14.0	74	10.9	53	7.8	50	7.4	12	1.8	1	0.1	1	0.1	357	52.5
여성	45	6.6	89	13.1	65	9.6	64	9.4	41	6.0	16	2.4	3	0.4	-	-	323	47.5
계	116	17.1	184	27.1	139	20.4	117	17.2	91	13.4	28	4.1	4	0.6	1	0.1	680	100.0

[그림 5-1]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



2)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거주유형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거주유형은 재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69.7%(474건)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정신병원, 요양원 등 다수가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관리자가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30.3%(206건)로 나타났다.

[표 5-4]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거주유형

(단위: 건, %)

재가		시설		계	
474	69.7	206	30.3	680	100.0

3)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55.6%(378건)로 가장 많았으며, 비수급자 42.4%(288건), 차상위수급자 2.1%(14건)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학대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전체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인 52.3% 보다 3.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단위: 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비수급자	계
378	14	288	680
55.6	2.1	42.4	100.0

라.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1)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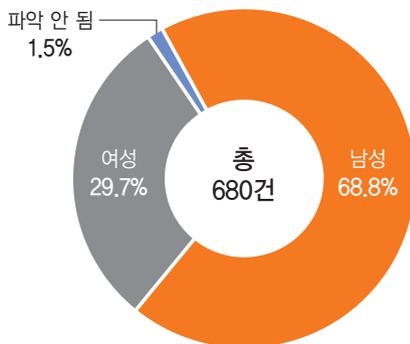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의 성별은 남성이 68.8%(468명)이며, 여성은 29.7%(202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장애인학대사례와 유사한 비율이다.

[표 5-6]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단위: 명, %)

남성		여성		파악 안 됨		계	
468	68.8	202	29.7	10	1.5	680	100.0

[그림 5-2] 발달장애인 학대행위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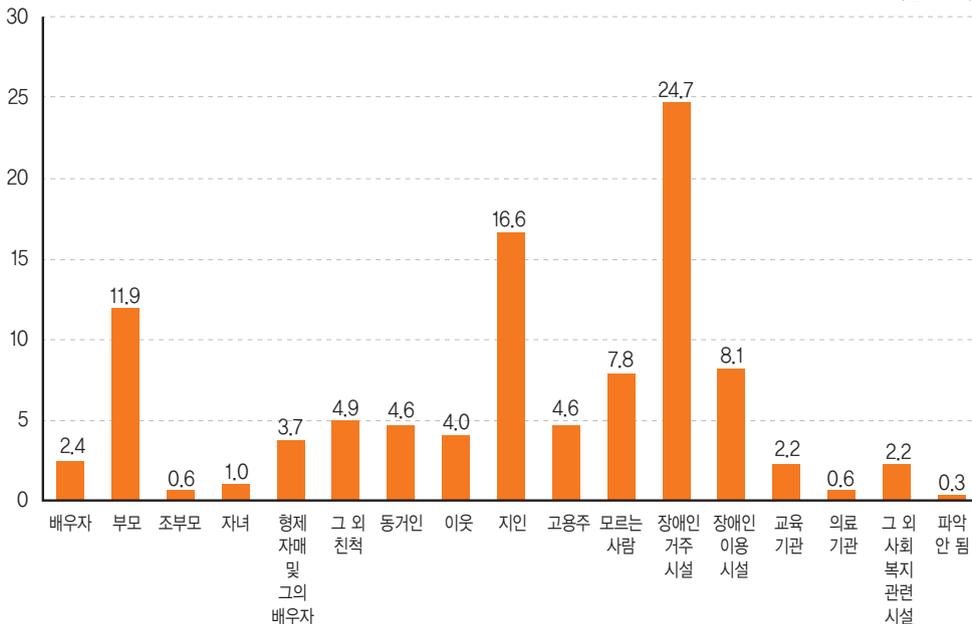
2)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발달장애인 학대사례에서 학대행위자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가 24.7%(16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인 16.6%(113건), 부모 11.9%(81건),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8.1%(5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를 보면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37.8%(257건)로 가장 많았고, 타인 37.5%(255건), 가족 및 친인척 24.4%(16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거주·이용시설) 종사자에 의해 주로 일어나,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10건 중 3건 이상이 이들에 의해 발생하였다. 전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달장애인 학대사례(240건, 38.3%)와 비교하면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사례(168건, 24.7%)의 경우는 여전히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전체 학대사례(166건, 24.4%)보다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 및 친인척인 학대행위자는 세부적으로 보면 부모(11.9%), 그 외 친척(4.9%),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타인인 학대행위자는 지인(16.6%), 모르는 사람(7.8%), 동거인 및 고용주(4.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인의 경우 전년도(55건, 8.8%)와 비교해 약 2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



[표 5-7]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16	2.4
	부모	81	11.9
	조부모	4	0.6
	자녀	7	1.0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5	3.7
	그 외 친척	33	4.9
	소계	166	24.4
타인	동거인	31	4.6
	이웃	27	4.0
	지인	113	16.6
	고용주	31	4.6
	모르는 사람	53	7.8
	소계	255	37.5
기관종사자	장애인거주시설	168	24.7
	장애인이용시설	55	8.1
	교육기관	15	2.2
	의료기관	4	0.6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15	2.2
	소계	257	37.8
파악 안 됨		2	0.3
계		680	100.0

마.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현황

1)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발달장애인 학대사례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36.6%(249건)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장애인 거주지 28.4%(193건), 학대행위자 거주지 8.7%(53건), 직장 및 일터 7.5%(5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학대 사례의 발생장소와 비교하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발달장애인 학대사례가 5.4%p 높게 나타났고, 피해장애인 거주지에서 발생한 사례는 4.4%p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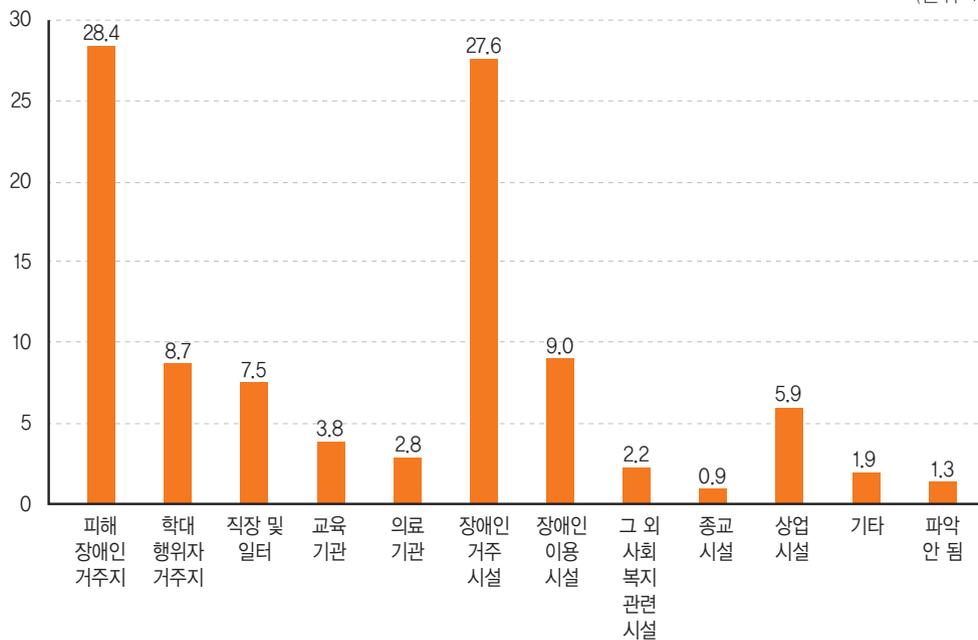
[표 5-8]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발생장소		건수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193	28.4
학대행위자 거주지		53	8.7
직장 및 일터		51	7.5
교육기관		26	3.8
의료기관		19	2.8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188	27.6
	장애인이용시설	61	9.0
	소계	249	36.6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시설		15	2.2
종교시설		6	0.9
상업시설		40	5.9
기타		13	1.9
파악 안 됨		9	1.3
계		680	100.0

[그림 5-4] 발달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단위: %)



2)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발달장애인의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를 보면 3개월 미만이 39.7%(270건)로 가장 높았으며, 학대 지속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가 전체의 60.1%이었다. 5년 이상 장기간 학대에 노출된 발달장애인의 사례가 전체 사례의 18.8%(128건)에 이른다. 특히 5년 이상 장기간 학대에 노출된 사례의 경우는 50.5%(70건)가 거의 매일 학대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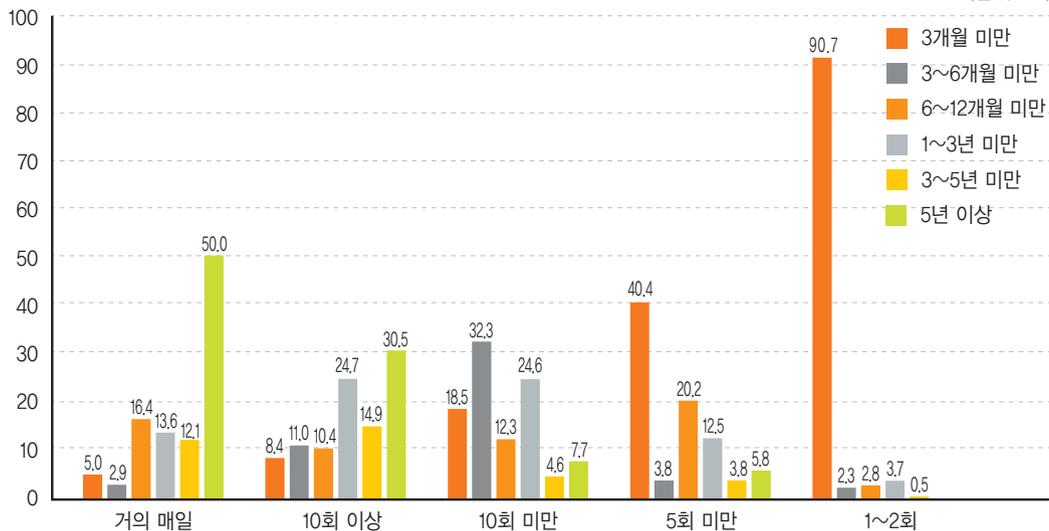
[표 5-9]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단위: 건, %)

구분	발생빈도														
	거의 매일	10회 이상	10회 미만	5회 미만	1~2회	파악 안 됨	계								
지속 기간	3개월 미만	7	5.0	13	8.4	12	18.5	42	40.4	196	90.7	-	-	270	39.7
	3~6개월 미만	4	2.9	17	11.0	21	32.3	18	3.8	5	2.3	-	-	65	9.6
	6~12개월 미만	23	16.4	16	10.4	8	12.3	21	20.2	6	2.8	-	-	74	10.9
	1~3년 미만	19	13.6	38	24.7	16	24.6	13	12.5	8	3.7	-	-	94	13.8
	3~5년 미만	17	12.1	23	14.9	3	4.6	4	3.8	1	0.5	-	-	48	7.1
	5년 이상	70	50.0	47	30.5	5	7.7	6	5.8	-	-	-	-	128	18.8
	파악 안 됨	-	-	-	-	-	-	-	-	-	-	1	100.0	1	0.1
	계	140	100.0	154	100.0	65	100.0	104	100.0	216	100.0	1	100.0	680	100.0

[그림 5-5] 발달장애인 학대 지속기간별 발생빈도

(단위: %)



바.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발달장애인의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5.6%(17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복 학대 25.1%(171건), 경제적 착취 23.4%(159건), 성적 학대 11.2%(76건), 정서적 학대 8.7%(59건), 방임 5.7%(39건), 유기 0.3%(2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에서는 중복 학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순으로 나타나 발달장애인 학대 유형 분포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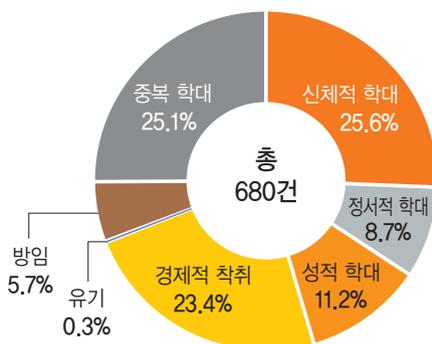
전년도 발달장애인 학대유형은 중복 학대(27.3%, 171건) - 경제적 착취(20.9%, 131건) - 신체적 학대·방임(각 17.6%, 110건) - 성적 학대(9.3%, 58건) - 정서적 학대 (6.9%, 43건) - 유기(0.5%, 3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0]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174	25.6
정서적 학대	59	8.7
성적 학대	76	11.2
경제적 착취	159	23.4
유기	2	0.3
방임	39	5.7
중복 학대	171	25.1
계	680	100.0

[그림 5-6]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2)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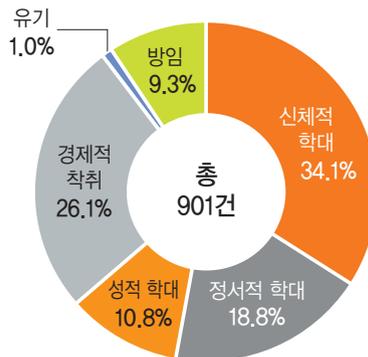
발달장애인 학대 총 680건 중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유형을 각각의 유형으로 보면 총 901건이다. 신체적 학대가 34.1%(307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26.1%(235건), 정서적 학대 18.8%(169건), 성적 학대 10.8%(97건), 방임 9.3%(84건), 유기 1.0%(9건) 순이었다. 이는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의 발생빈도 순위와 동일하다.

[표 5-11]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학대유형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307	34.1
정서적 학대	169	18.8
성적 학대	97	10.8
경제적 착취	235	26.1
유기	9	1.0
방임	84	9.3
계	901	100.0

[그림 5-7]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사. 발달장애인 학대유형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교차분석

발달장애인 학대유형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교차분석은 학대피해 사례 총 680건 중 발달장애인이 중복해서 경험한 학대유형 총 901건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1)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은 성적 학대를 제외하면 모든 학대유형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학대를 겪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남성과 여성의 학대피해 양상은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 남·여 간의 격차가 조금 좁혀졌으며, 특히 경제적 착취의 경우 전년도(남성 139건, 여성 71건)와 비교해 여성의 비율이 33.8% 늘어났다.

[표 5-12]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성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남성	184	59.9	88	52.1	12	12.4	140	59.6	6	66.7	47	56.0	477	52.9
여성	123	40.1	81	47.9	85	87.6	95	40.4	3	33.3	37	44.0	424	47.1
계	307	100.0	169	100.0	97	100.0	235	100.0	9	100.0	84	100.0	901	100.0

2)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은 20대가 방임을 제외한 모든 학대유형에서 가장 많은 학대피해를 겪고 있으며, 방임은 19세 이하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학대는 20대, 30대, 40대, 19세 이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30대의 젊은 청년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체 학대피해 장애인의 연령대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20대 피해자 비율이 전체장애인 20대 장애인학대 피해자 비율보다 5.5%p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3] 학대유형별 피해 발달장애인 연령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유기		방임		계	
19세 이하	62	20.2	36	21.3	16	16.5	11	4.7	1	11.1	21	25.0	147	16.3
20대	73	23.8	57	33.7	36	37.1	60	25.5	3	33.3	16	19.0	245	27.2
30대	64	20.8	36	21.3	19	19.6	47	20.0	1	11.1	13	15.5	180	20.0
40대	60	19.5	23	13.6	14	14.4	46	19.6	-	-	12	14.3	155	17.2
50대	40	13.0	14	8.3	11	11.3	47	20.0	3	33.3	15	17.9	130	14.4
60대	5	1.6	1	0.6	-	-	22	9.4	-	-	5	6.0	33	3.7
70대 이상	2	0.7	2	1.2	1	1.0	2	0.9	1	11.1	2	2.4	10	1.1
파악 안 됨	1	0.3	-	-	-	-	-	-	-	-	-	-	1	0.1
계	307	100.0	169	100.0	97	100.0	235	100.0	9	100.0	84	100.0	901	100.0

3) 발달장애인 학대유형별 지속기간

발달장애인 학대의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별 지속기간을 보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의 경우 3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지만, 경제적 착취와 방임의 경우 5년 이상 장기간 학대를 받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학대발생 지속기간별 발달장애인 학대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3개월 미만	142	46.3	63	37.3	58	59.8	45	19.1	3	33.3	15	17.9	326	36.2
3~6개월 미만	23	7.5	15	8.9	9	9.3	20	8.5	-	-	10	11.9	77	8.5
6~12개월 미만	33	10.7	33	19.5	6	6.2	33	14.0	-	-	7	8.3	112	12.4
1~3년 미만	37	12.1	22	13.0	9	9.3	53	22.6	1	11.1	18	21.4	140	15.5
3~5년 미만	15	4.9	14	8.3	5	5.2	26	11.1	1	11.1	12	14.3	73	8.1
5년 이상	57	18.6	22	13.0	9	9.3	58	24.7	4	44.4	22	26.2	172	19.1
파악 안 됨	-	-	-	-	1	1.0	-	-	-	-	-	-	1	0.1
계	307	100.0	169	100.0	97	100.0	235	100.0	9	100.0	84	100.0	901	100.0

4)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발달장애인의 학대행위자는 영역별로는 기관종사자, 타인, 가족 및 친인척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지인, 부모,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 순이다.

학대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 기관종사자(52.2%)에 의해 주로 발생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32.9%)가 가장 많고, 부모(14.0%),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11.4%) 등의 순이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는 기관종사자(51.5%)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26.6%), 장애인이용시설 종사자(17.8%), 부모와 지인(1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는 타인(73.2%)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지인(37.1%), 모르는 사람(18.6%), 이웃(11.3%),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7.2%) 등의 순이다.

경제적 착취는 타인(55.9%)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23.0%)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그 다음으로 타인에 속하는 지인(22.6%), 고용주 및 모르는 사람(11.1%), 그 외 친척(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임은 기관종사자(51.2%)에 의한 경우가 많았으며, 세부적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33.3%), 부모(2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5] 학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가족 및 친인척	배우자	11	3.6	6	3.6	4	4.1	2	0.9	-	-	3	3.6	26	2.9
	부모	43	14.0	18	10.7	6	6.2	11	4.7	2	22.2	24	28.6	104	11.5
	조부모	1	0.3	1	0.6	-	-	1	0.4	-	-	1	1.2	4	0.4
	자녀	6	2.0	2	1.2	-	-	-	-	-	-	1	1.2	9	1.0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	13	4.2	2	1.2	2	2.1	13	5.5	1	11.1	4	4.8	35	3.9
	그 외 친척	6	2.0	7	4.1	6	6.2	18	7.7	1	11.1	3	3.6	41	4.6
	소계	80	26.1	36	21.4	18	18.6	45	19.2	4	44.4	36	43	219	24.3
타인	동거인	17	5.5	7	4.1	5	5.2	15	6.4	3	33.3	3	3.6	50	5.5
	이웃	3	1.0	7	4.1	11	11.3	11	4.7	-	-	-	-	32	3.6
	지인	27	8.8	18	10.7	36	37.1	53	22.6	-	-	2	2.4	136	15.1
	고용주	8	2.6	7	4.1	1	1	26	11.1	-	-	-	-	42	4.7
	모르는 사람	11	3.6	7	4.1	18	18.6	26	11.1	-	-	-	-	62	6.9
	소계	66	21.5	46	27.1	71	73.2	131	55.9	3	33.3	5	6	322	35.7
기관 종사자	장애인 거주시설	101	32.9	45	26.6	7	7.2	54	23.0	1	11.1	28	33.3	236	26.2
	장애인 이용시설	35	11.4	30	17.8	1	1.0	1	0.4	-	-	4	4.8	71	7.9
	교육기관	11	3.6	4	2.4	-	-	-	-	1	11.1	6	7.1	22	2.4
	의료기관	2	0.7	1	0.6	-	-	-	-	-	-	1	1.2	4	0.4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시설	11	3.6	7	4.1	-	-	3	1.3	-	-	4	4.8	25	2.8
	소계	160	52.2	87	51.5	8	8.2	58	24.7	2	22.2	43	51.2	358	39.7
파악 안 됨		1	0.3	-	-	-	-	1	0.4	-	-	-	-	2	0.2
계		307	100.0	169	100.0	97	100.0	235	100.0	9	100.0	84	100.0	901	100.0

아. 발달장애인 학대 사례지원

1)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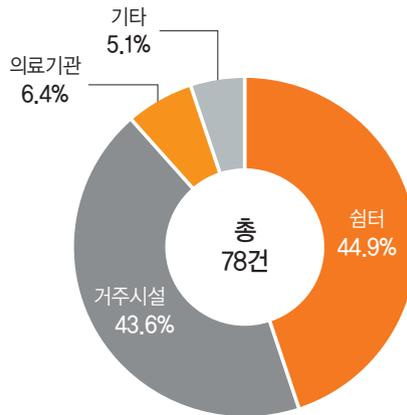
발달장애인 학대사례 총 680건 중에서 응급조치를 한 경우는 11.5%(78건)이었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쉼터(44.9%)를 많이 이용했으며, 다음으로 장애인거주시설(43.6%), 의료기관(6.4%), 기타(5.1%) 순으로 응급조치를 하였다. 전년도(79건)와 비교하면 응급조치 실시 건수는 유사하였으나 쉼터의 부족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친인척의 집 등에서 임시보호를 받은 비율이 39.3%에서 48.7%로 늘어났다.

[표 5-16]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단위: 건, %)

쉼터	거주시설	의료기관	기타	계
35	34	5	4	78
44.9	43.6	6.4	5.1	100.0

[그림 5-8]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응급조치



2)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학대피해 발달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은 각종 상담 등의 기타지원이 38.3%(41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법지원 27.2%(295건), 복지지원 13.6%(148건), 거주지원 9.0%(98건), 심리지원 6.3%(68건), 의료지원 5.6%(6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7]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건,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기타	계
61	68	98	295	148	416	1,086
5.6	6.3	9.0	27.2	13.6	38.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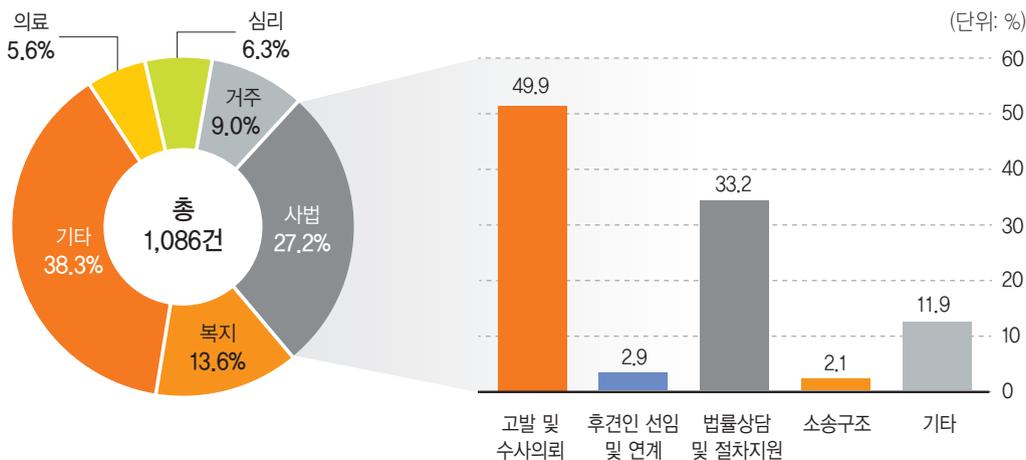
발달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중 기타지원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법지원은 총 385건이 이루어졌다. 사법 지원의 세부지원 중에는 고발 및 수사의뢰가 49.9%(192건)로 가장 많았으며,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33.2%(12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사법지원에 있어 고발 및 수사의뢰는 전년도(129건)와 비교해 4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사법지원 유형

(단위: 건, %)

고발 및 수사의뢰	후견인 선임 및 연계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소송구조	기타	계
192	11	128	8	46	385
49.9	2.9	33.2	2.1	11.9	100.0

[그림 5-9]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지원 유형



2. 노동력 착취사례

2019년 장애인학대사례 중 노동력 착취사례는 총 94건이다. 전체 장애인학대사례 중 약 9.9%이며, 경제적 착취 사례 328건 중 28.7%가 노동력 착취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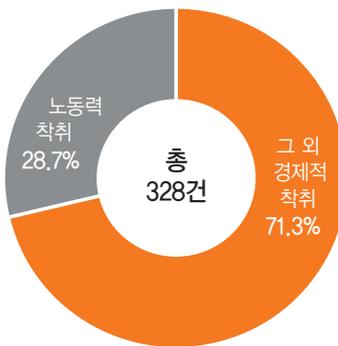
노동력 착취는 경제적 착취의 대표적 행위의 하나로 일명 ‘노예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력 착취는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력 착취는 지난 2014년 ‘염전 노예사건’ 이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표 5-19] 노동력 착취 발생

(단위: 건, %)

경제적 착취			장애인학대사례 중 노동력 착취	경제적 착취 사례 중 노동력 착취
노동력 착취 포함	노동력 착취 미포함	계		
94	234	328	9.9	28.7

[그림 5-10] 노동력 착취 발생



가.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피해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63.8%(60명), 여성이 36.2%(34명)로 남성 피해자가 여성보다 약 1.8배 많았다. 연령대로는 40대~60대가 주 피해자로 나타났다. 전체 경제적 착취 피해장애인의 비율과 비교하면 남성 피해자(60.1%)가 노동력 착취에서 조금 더 많이 나타났고, 20대 피해자(20.7%)는 조금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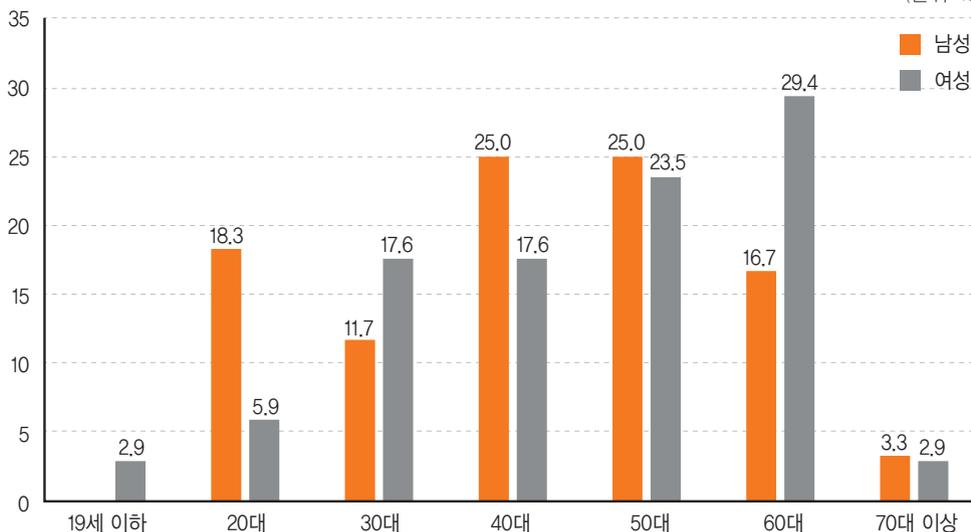
[표 5-2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건, %)

구분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남성	0	0	11	18.3	7	11.7	15	25.0	15	25.0	10	16.7	2	3.3	60	100.0
여성	1	2.9	2	5.9	6	17.6	6	17.6	8	23.5	10	29.4	1	2.9	34	100.0
계	1	1.1	13	13.8	13	13.8	21	22.3	23	24.5	20	21.3	3	3.2	94	100.0

[그림 5-1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



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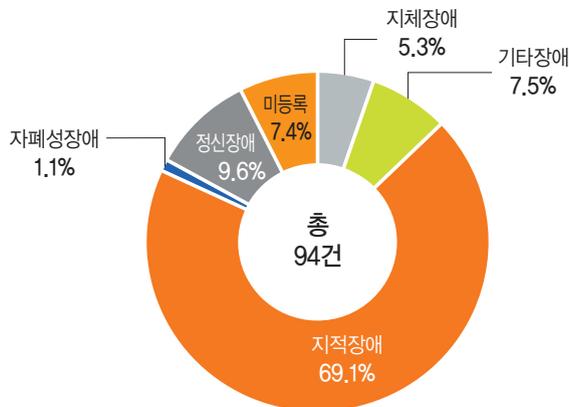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69.1%(65건)로 전체 장애유형 중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신장애 9.6%, 미등록 7.4%, 지체장애 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는 지적·자폐성·정신장애는 전체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79.8%로 10명 중 8명이다.

[표 5-2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단위: 건, %)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5	5.3
뇌병변장애	1	1.1
시각장애	3	3.2
청각장애	2	2.1
언어장애	1	1.1
지적장애	65	69.1
자폐성장애	1	1.1
정신장애	9	9.6
미등록	7	7.4
계	94	100.0

[그림 5-1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3)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거주유형은 재가가 58.5%(55건)이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등 시설이 41.5%(39건)로 나타났다.

[표 5-2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거주유형

(단위: 건, %)

재가		시설		계	
55	58.5	39	41.5	94	100.0

4)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가 60.6%(57건)로 가장 많았으며, 비수급자 35.1%(33건), 차상위수급자 4.3%(4건)로 나타났다.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전체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52.3%)보다 8.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3]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부

(단위: 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비수급자	계
57	4	33	94
60.6	4.3	35.1	100.0

나. 노동력 착취 행위자

1)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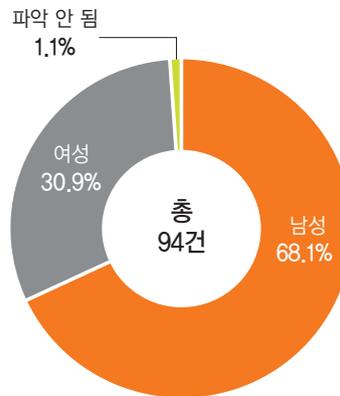
노동력 착취 행위자는 남성이 68.1%(64명)이며, 여성은 30.9%(29명)로 학대행위자는 주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2.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4]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단위: 명, %)

남성		여성		파악 안 됨		계	
64	68.1	29	30.9	1	1.1	94	100.0

[그림 5-13] 노동력 착취 행위자 성별



2)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노동력 착취 행위자의 연령은 40대가 34.0%(32명)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27.7%(26명), 60대 22.3%(2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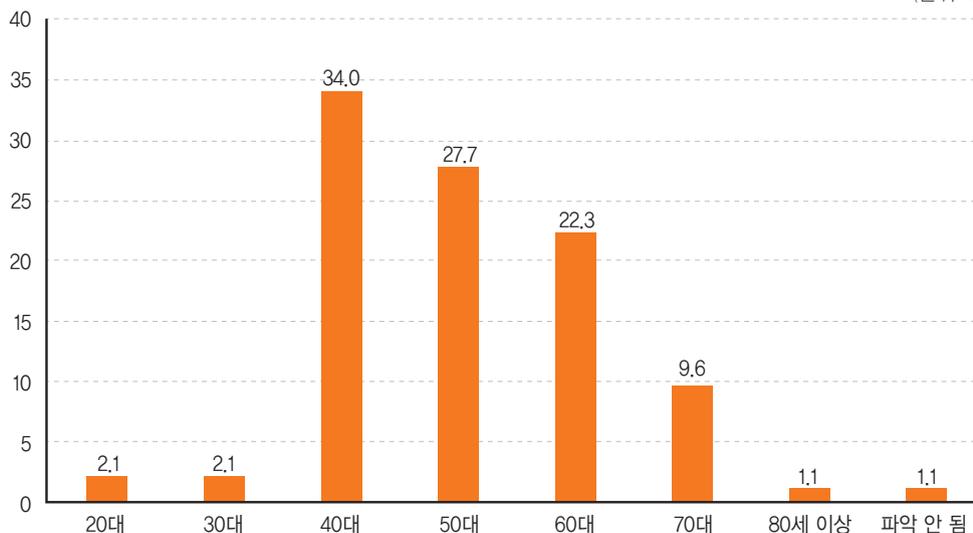
[표 5-25]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단위: 건, %)

연령	건수	비율
20대(20~29세)	2	2.1
30대(30~39세)	2	2.1
40대(40~49세)	32	34.0
50대(50~59세)	26	27.7
60대(60~69세)	21	22.3
70대(70~79세)	9	9.6
80세 이상	1	1.1
파악 안 됨	1	1.1
계	94	100.0

[그림 5-14] 노동력 착취 행위자 연령

(단위: %)



3)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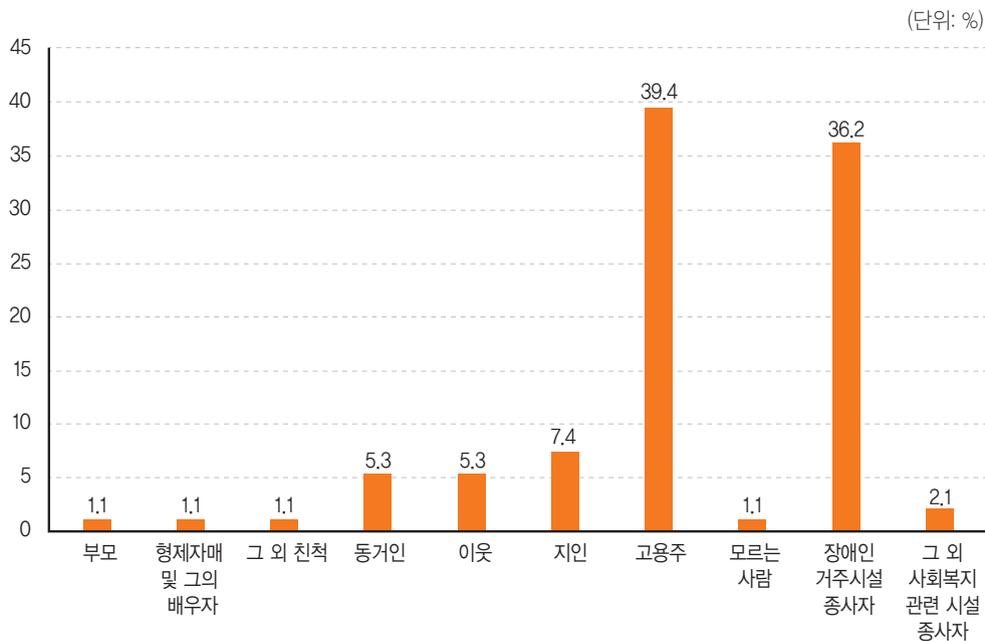
노동력 착취는 행위자가 타인인 경우가 58.5%(55건)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종사자 38.3%(36건), 가족 및 친인척 3.3%(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가 39.4%(37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36.2%(34건), 지인 7.4%(7건), 이웃·동거인 각각 5.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력 착취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나 이웃, 지인 등 타인에 의해 주로 일어나고 있지만, 거주·요양·돌봄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복지시설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치료와 프로그램을 이유로 노동력 착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표 5-26]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와의 관계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가족 및 친인척	부모	1	1.1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1.1
	그 외 친척	1	1.1
	소계	3	3.3
타인	동거인	5	5.3
	이웃	5	5.3
	지인	7	7.4
	고용주	37	39.4
	모르는 사람	1	1.1
	소계	55	58.5
기관 종사자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34	36.2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종사자	2	2.1
	소계	36	38.3
계		94	100.0

[그림 5-15] 노동력 착취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



다. 노동력 착취 발생 현황

1)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노동력 착취의 발생장소는 장애인거주시설이 41.5%(39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피해장애인의 직장 및 일터 37.2%(35건), 피해장애인 거주지 9.6%(9건), 행위자 거주지 8.5%(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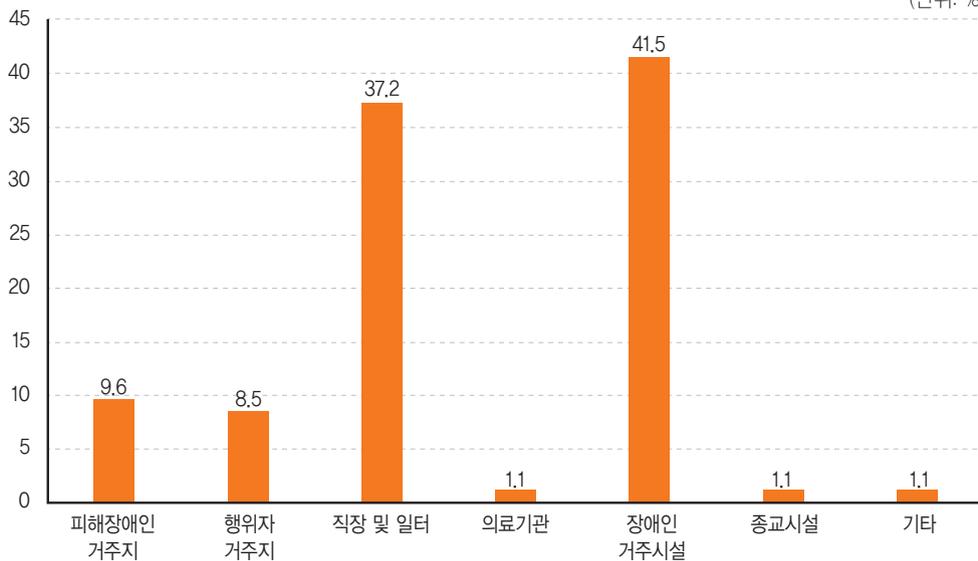
[표 5-27]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피해장애인 거주지	9	9.6
행위자 거주지	8	8.5
직장 및 일터	35	37.2
의료기관	1	1.1
장애인거주시설	39	41.5
종교시설	1	1.1
기타	1	1.1
계	94	100.0

[그림 5-16] 노동력 착취 발생장소

(단위: %)



2)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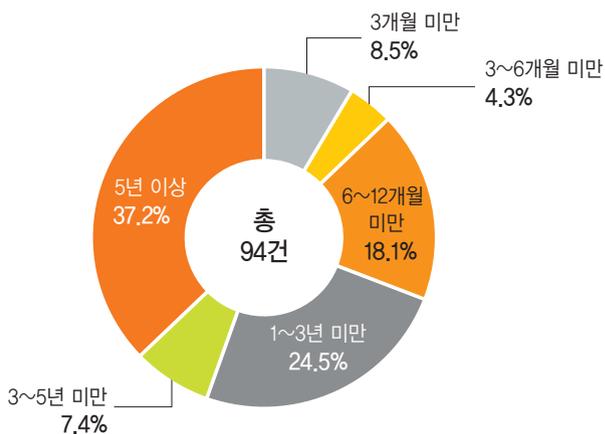
노동력 착취의 지속기간은 5년 이상 장기간 학대를 겪은 사례가 37.2%(35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3년 미만 24.5%(23건), 6~12개월 미만 18.1%(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 이상 장기간 학대가 지속되는 사례가 44.7%(42건)로 나타났다. 노동력 착취는 신체적 학대 등 다른 유형의 학대와 달리 피해자들이 이를 학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 지속기간이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긴 사례가 많다.

[표 5-28]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단위: 건, %)

구분	건수	비율
3개월 미만	8	8.5
3~6개월 미만	4	4.3
6~12개월 미만	17	18.1
1~3년 미만	23	24.5
3~5년 미만	7	7.4
5년 이상	35	37.2
계	94	100.0

[그림 5-17] 노동력 착취 지속기간



라.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사례지원

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노동력 착취사례 총 94건 중에서 응급조치를 한 경우는 14건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는 거주시설 이용(7건), 피해장애인 쉼터 입소(6건), 기타(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29]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응급조치

(단위: 건, %)

쉼터	거주시설	기타	계
6	7	1	14
42.9	50.0	7.1	100.0

2)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은 각종 상담 등의 기타지원(62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법지원(44건), 복지지원(24건), 거주지원(15건), 의료지원(10건), 심리지원(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0]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단위: 건,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기타	계
10	1	15	44	24	62	156
6.4	0.6	9.6	28.2	15.4	39.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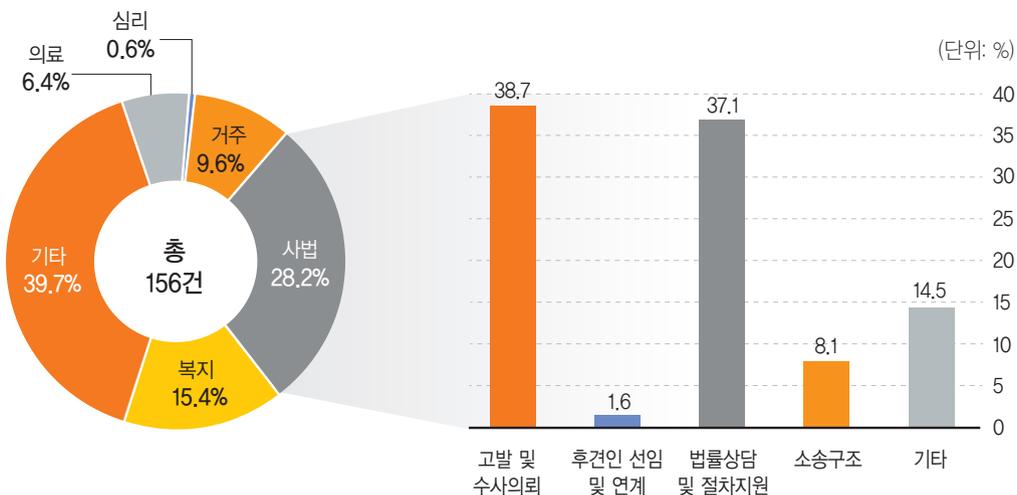
노동력 착취사례는 피해사실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강제근로나 임금 미지급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은 총 44건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고발 및 수사의뢰가 38.7%(24건)로 가장 많았고,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37.1%(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1]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사법지원

(단위: 건, %)

고발 및 수사의뢰	후견인 선임 및 연계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소송구조	기타	계
24	1	23	5	9	62
38.7	1.6	37.1	8.1	14.5	100.0

[그림 5-18]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 지원 유형



3.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

집단이용시설 사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학대로 판단한 사례 중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다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례를 말하며, 미신고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도 포함된다.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은 1,527개로 총 30,152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체육관 등)은 1,373개이며, 의료재활시설은 19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651개로 총 18,205명이 이용하고 있다.

가.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1)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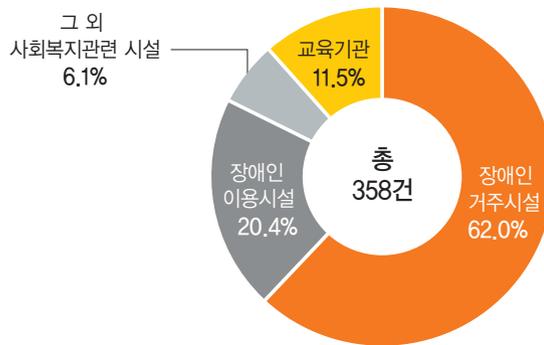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는 2019년 전체 장애인학대사례의 37.9%(358건)이었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사례가 62.0%(222건)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이용시설 20.4%(73건), 특수학교 등 교육기관 11.5%(41건),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6.1%(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장애인거주시설(195건, 62.3%)의 장애인학대는 13.8% 증가했고, 장애인이용시설(50건, 16.0%)은 46.0% 증가하였다.

[표 5-32]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단위: 건, %)

시설유형	건수	비율
장애인거주시설	222	62.0
장애인이용시설	73	20.4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22	6.1
교육기관	41	11.5
계	358	100.0

[그림 5-19]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2) 지역별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4.9%(8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 10.9%(39건), 대구 7.8%(28건), 경북 7.5%(27건), 충북·제주 각각 7.0%(25건), 서울·인천 각각 6.4%(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경북(82건)과 전북(63건)은 줄었고, 경기(33건)와 부산(10건), 대구(4건)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경기의 경우 2019년도에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규 설치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사례는 경기도가 20.4%(73건)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북 각각 7.3%(26건), 제주 7.0%(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 기준,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 수와 거주 장애인 수는 경기(313개, 6,111명)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276개, 3,738명), 경남(94개, 1,920명), 경북(88개, 2,548명) 등의 순이다.

장애인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는 대구(6.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천(3.6%) 부산(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학대는 강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천 등의 순이었다.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경기도가 233개로 가장 많고, 서울(208개), 경북(113개), 경남(104개) 등의 순이다.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사례는 경기·충북이 가장 많고, 부산, 경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9월 기준, 전국

의 특수학교는 177개이며 경기도가 36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30개), 부산(15개), 전북·충북·경남(10개) 등의 순이다. 특수학급은 11,105개가 설치·운영되어 있으며 경기도(2,955개)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1,358개), 경남(820개), 충남(684개) 등의 순이다.

[표 5-33] 지역별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단위: 건, %)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시설		교육기관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서울	22	6.1	1	0.3	-	-	-	-	23	6.4	
부산	26	7.3	8	2.2	-	-	5	1.4	39	10.9	
대구	4	1.1	23	6.4	-	-	1	0.3	28	7.8	
인천	4	1.1	13	3.6	5	1.4	1	0.3	23	6.4	
광주	-	-	5	1.4	-	-	1	0.3	6	1.7	
대전	4	1.1	-	-	1	0.3	2	0.6	7	2.0	
울산	2	0.6	1	0.3	-	-	3	0.8	6	1.7	
세종	-	-	-	-	1	0.3	2	0.6	3	0.8	
경기	경기	47	13.1	3	0.8	3	0.8	5	1.4	58	16.2
	경기북부	26	7.3	3	0.8	-	-	2	0.6	31	8.7
	소계	73	20.4	6	1.6	3	0.8	7	2	89	24.9
강원	6	1.7	5	1.4	6	1.7	2	0.6	19	5.3	
충북	10	2.8	6	1.7	2	0.6	7	2.0	25	7.0	
충남	10	2.8	1	0.3	3	0.8	3	0.8	17	4.7	
전북	4	1.1	1	0.3	1	0.3	2	0.6	8	2.2	
전남	4	1.1	-	-	-	-	-	-	4	1.1	
경북	26	7.3	-	-	-	-	1	0.3	27	7.5	
경남	2	0.6	3	0.8	-	-	4	1.1	9	2.5	
제주	25	7.0	-	-	-	-	-	-	25	7.0	
계	222	62.0	73	20.4	22	6.1	41	11.5	358	100.0	

나. 집단이용시설사례 피해장애인

1) 시설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집단이용시설사례 피해장애인 성별은 남성이 60.1%(215명)이며, 여성이 39.9%(143명)로 남성이 여성보다 약 1.5배 더 많았다. 시설유형별로도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장애인이용시설은 약 2배, 교육기관은 약 3.6배 이상 남성이 더 많았다.

[표 5-34]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성별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시설		교육기관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남성	127	35.5	49	13.7	7	2.0	32	8.9	215	60.1
여성	95	26.5	24	6.7	15	4.2	9	2.5	143	39.9
계	222	62.0	73	20.4	22	6.1	41	11.5	358	100.0

2) 시설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집단이용시설사례 피해장애인 연령은 30대 · 19세 이하가 각각 21.8%(7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대 20.7%(74명), 40대 16.5%(5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30대 피해장애인이 15.4%(55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3.1%(47명), 50대 11.2%(40명), 20대 10.6%(3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용시설은 20대 피해자가 8.4%(30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 19세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피해장애인 연령대는 50대 · 19세 이하, 40대 등의 순이었고, 교육기관은 19세 이하의 학령기에서 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5]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연령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시설		교육기관		계	
	명	%	명	%	명	%	명	%	명	%
19세 이하	23	6.4	13	3.6	5	1.4	37	10.3	78	21.8
20대	38	10.6	30	8.4	3	0.8	3	0.8	74	20.7
30대	55	15.4	20	5.6	2	0.6	1	0.3	78	21.8
40대	47	13.1	8	2.2	4	1.1	-	-	59	16.5
50대	40	11.2	1	0.3	5	1.4	-	-	46	12.8
60대	12	3.4	1	0.3	2	0.6	-	-	15	4.2
70대 이상	6	1.7	-	-	1	0.3	-	-	7	2.0
파악 안 됨	1	0.3	-	-	-	-	-	-	1	0.3
계	222	62.0	73	20.4	22	6.1	41	11.5	358	100.0

3) 시설유형별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집단이용시설학대 피해장애인의 장애유형을 주장에 중심으로 보면 지적장애가 72.1%(25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폐성장애 6.7%(24건), 지체장애 5.3%(19건), 정신장애 5.0%(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시설유형에서 지적장애인이 가장 많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6]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장애유형

(단위: 건, %)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시설		교육기관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지체장애	12	3.4	3	0.8	2	0.6	2	0.6	19	5.3
뇌변병장애	7	2.0	4	1.1	1	0.3	3	0.8	15	4.2
시각장애	7	2.0	1	0.3	-	-	-	-	8	2.2
청각장애	1	0.3	1	0.3	-	-	2	0.6	4	1.1
언어장애	-	-	2	0.6	-	-	1	0.3	3	0.8
지적장애	175	48.9	50	14.0	13	3.6	20	5.6	258	72.1
자폐성장애	8	2.2	10	2.8	1	0.3	5	1.4	24	6.7
정신장애	11	3.1	1	0.3	5	1.4	1	0.3	18	5.0
미등록	1	0.3	1	0.3	-	-	7	2.0	9	2.7
계	222	62.0	73	20.4	22	6.1	41	11.5	358	100.0

집단이용시설의 피해장애인의 장애정도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98.6%(344건)이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4%(5건)로 피해장애인은 대부분 중증장애인으로 나타났다.

[표 5-37]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피해장애인 장애정도

(단위: 건, %)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시설		교육기관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중증장애)	221	63.3	70	20.0	22	6.3	31	8.9	344	98.6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장애)	-	-	2	0.6	-	-	3	0.9	5	1.4
계	221	63.3	72	20.6	22	6.3	34	9.7	349	100.0

다.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신고자

집단이용시설 장애인학대 신고자를 유형별로 보면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51.1%(183건)이고,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48.9%(175건)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높았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신고의무자(116건)에 의한 신고율은 57.8% 증가하였다. 신고자의 세부유형별로 보면 비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30.4%)의 신고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28.8%), 사회복지 전담공무원(18.7%), 타인(8.4%), 가족 및 친인척(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비율은 2.0%(7건)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경우는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높았고, 교육기관은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높았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학대 신고자는 비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23.2%)의 신고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16.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15.1%)에 의한 신고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이용시설은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8.7%)의 신고율이 가장 높았고,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 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2.8%)의 신고율이 높았다. 교육기관은 비신고의무자인 가족 및 친인척(5.0%)의 신고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38]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신고자

(단위: 건, %)

구분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시설		교육기관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신고 의무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54	15.1	8	2.2	5	1.4	-	-	67	18.7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58	16.2	31	8.7	10	2.8	4	1.1	103	28.8
	활동지원인력 및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1	0.3	-	-	-	-	-	-	1	0.3
	초·중·고 교직원	5	1.4	-	-	-	-	3	0.8	8	2.2
	학원 및 교습소 강사 및 직원	1	0.3	-	-	-	-	-	-	1	0.3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	-	-	-	-	1	0.3	1	0.3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	-	-	-	-	-	1	0.3	1	0.3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1	0.3	-	-	-	-	-	-	1	0.3
	소계	120	33.5	39	10.9	15	4.2	9	2.5	183	51.1
비신고 의무자	본인	2	0.6	2	0.6	-	-	3	0.8	7	2.0
	가족 및 친인척	3	0.8	5	1.4	1	0.3	18	5.0	27	7.5
	기관종사자	83	23.2	11	3.1	5	1.4	10	2.8	109	30.4
	타인	12	3.4	16	4.5	1	0.3	1	0.3	30	8.4
	파악 안 됨	2	0.6	-	-	-	-	-	-	2	0.6
	소계	102	28.5	34	9.5	7	2.0	32	8.9	175	48.9
계	222	62.0	73	20.4	22	6.1	41	11.5	358	100.0	

라.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학대 지속기간

집단이용시설의 학대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 46.4%(166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경우가 14.0%(50건), 6~12개월 미만 12.8%(4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모든 시설에서 학대 지속기간은 3개월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1년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는 5년 이상 장기간 학대가 지속되는 비율이 21.6%로 높게 나타나 다른 시설유형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5-39]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학대 지속기간

(단위: 건, %)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시설		교육기관		계	
3개월 미만	83	37.4	48	65.8	10	45.5	25	61.0	166	46.4
3~6개월 미만	19	8.6	8	11.0	-	-	4	9.8	31	8.7
6~12개월 미만	29	13.1	7	9.6	2	9.1	8	19.5	46	12.8
1~3년 미만	34	15.3	3	4.1	1	4.5	4	9.8	42	11.7
3~5년 미만	9	4.1	7	9.6	7	31.8	-	-	23	6.4
5년 이상	48	21.6	-	-	2	9.1	-	-	50	14.0
계	222	100.0	73	100.0	22	100.0	41	100.0	358	100.0

마.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1)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집단이용시설의 장애인학대 유형은 중복학대가 35.2%(126건)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29.1%(104건), 경제적 착취 10.3%(37건), 정서적 학대 10.1%(36건), 성적 학대 8.4%(30건), 방임 6.7%(24건), 유기 0.3%(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의 중복학대(25.8%) - 경제적 착취(24.4%) - 신체적 학대(24.1%) - 성적 학대(9.5%) - 정서적 학대(9.3%) - 방임(6.3%) - 유기(0.4%) 등의 발생 순서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복학대와 신체적 학대는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에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의 경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시설유형별 학대유형의 발생순위인 중복학대 - 방임 - 신체적 학대 - 경제적 착취 - 정서적 학대 - 성적 학대 - 유기 등과 비교하여도 학대유형에 있어 일부 변화가 있었다.

집단이용시설의 학대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중복학대가 37.8%(84건), 신체적 학대 26.6%(59건) 등의 순이며, 장애인이용시설은 중복학대 · 신체적 학대가 각각 30.1%(22건)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20.5%(1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은 중복학대 36.4%(8건), 신체적 학대·경제적 착취 각각 18.2%(4건) 등의 순이며, 교육기관은 신체적 학대 40.4%(19건), 중복학대 29.3%(12건) 등의 순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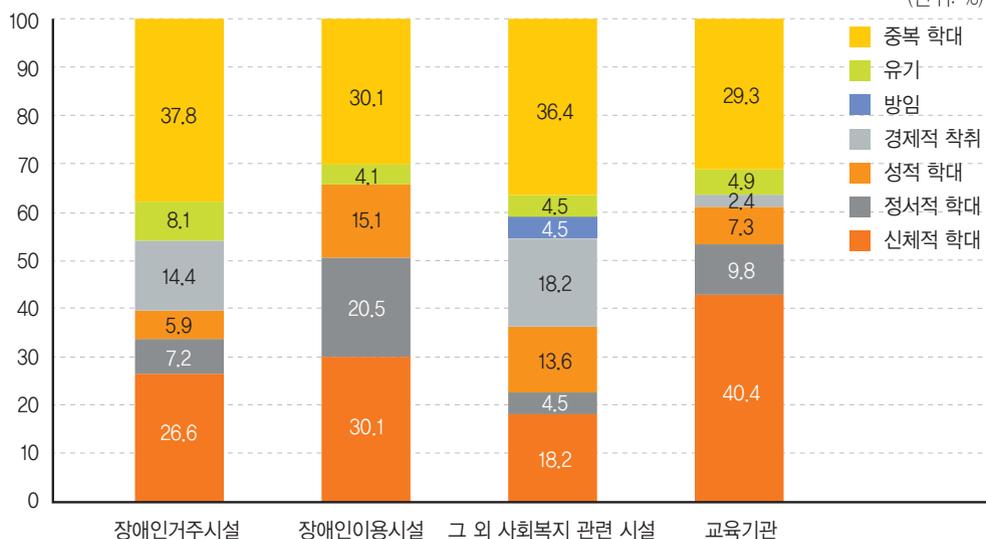
[표 5-40]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건, %)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시설		교육기관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59	26.6	22	30.1	4	18.2	19	40.4	104	29.1
정서적 학대	16	7.2	15	20.5	1	4.5	4	9.8	36	10.1
성적 학대	13	5.9	11	15.1	3	13.6	3	7.3	30	8.4
경제적 착취	32	14.4	-	-	4	18.2	1	2.4	37	10.3
유기	-	-	-	-	1	4.5	-	-	1	0.3
방임	18	8.1	3	4.1	1	4.5	2	4.9	24	6.7
중복 학대	84	37.8	22	30.1	8	36.4	12	29.3	126	35.2
계	222	100.0	73	100.0	22	100.0	41	100.0	358	100.0

[그림 5-20]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 (중복 학대 별도분류)

(단위: %)



2) 시설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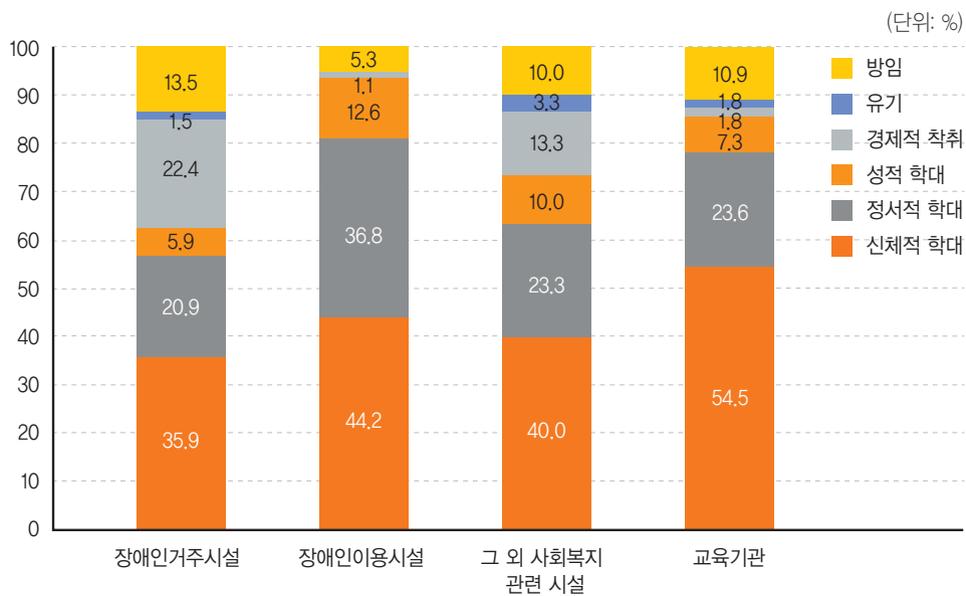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는 총 358건이다. 이중 학대피해 장애인이 중복하여 경험한 학대를 각각의 학대 유형으로 나누어 분류하면 총 520건이다. 장애인학대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가 39.6%(206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4.2%(126건), 경제적 착취 15.8%(82건), 방임 11.5%(60건), 성적 학대 7.5%(39건), 유기 1.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학대 유형과 비교하면 신체적 학대(33.0%)의 비율은 6.6%p 높고, 경제적 착취(26.1%)의 비율은 10.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을 집단이용시설별로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신체적 학대가 35.9%(122건)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착취 22.4%(76건), 정서적 학대 20.9%(71건) 등의 순이며, 장애인이용시설은 신체적 학대 44.2%(42건), 정서적 학대 36.8%(3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그 외 사회복지관련 시설은 신체적 학대 40.0%(12건), 정서적 학대 23.3%(7건) 등의 순이며, 교육기관은 신체적 학대 54.5%(30건), 정서적 학대 23.6%(13건) 등의 순으로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1]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단위: 건, %)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시설		교육기관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신체적 학대	122	35.9	42	44.2	12	40.0	30	54.5	206	39.6
정서적 학대	71	20.9	35	36.8	7	23.3	13	23.6	126	24.2
성적 학대	20	5.9	12	12.6	3	10.0	4	7.3	39	7.5
경제적 착취	76	22.4	1	1.1	4	13.3	1	1.8	82	15.8
유기	5	1.5	-	-	1	3.3	1	1.8	7	1.3
방임	46	13.5	5	5.3	3	10.0	6	10.9	60	11.5
계	340	100.0	95	100.0	30	100.0	55	100.0	520	100.0

[그림 5-21]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II (중복 학대 미분류)



바.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1)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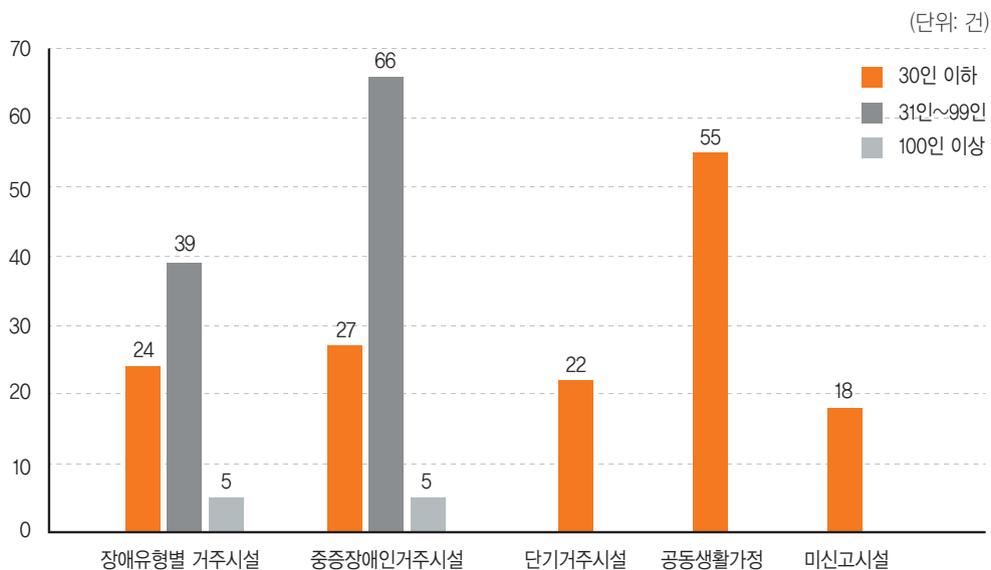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는 주로 장애인거주시설(62.0%, 222건)에서 발생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로 보면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이 30.6%(68건)로 가장 많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6.6%(59건), 공동생활가정 24.8%(55건), 단기거주시설 9.9%(22건), 미신고시설 8.1%(18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 규모별로 보면 30인 이하 시설이 65.8%(146건)로 가장 많았고, 31인~99인 시설 29.7%(66건), 10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 4.5%(10건) 순으로 나타났다. 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미신고시설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을 기준으로 할 때 31인~99인 시설(66건)에서 장애인학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인 이하 시설(51건), 100인 이상 시설(10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장애인의 34.2%(76건)는 31인 이상 거주시설에서 학대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2]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단위: 건, %)

구분		30인 이하		31인~99인		100인 이상		계	
장애 유형별	지체장애인	-	-	1	0.5	3	1.4	4	1.8
	시각장애인	-	-	1	0.5	2	0.9	3	1.4
	지적장애인	24	10.8	37	16.7	-	-	61	27.5
	소계	24	10.8	39	17.6	5	2.3	68	30.6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7	12.2	27	12.2	5	2.3	59	26.6
계		51	23.0	66	29.7	10	4.5	127	57.2
단기거주시설		22	9.9	-	-	-	-	22	9.9
공동생활가정		55	24.8	-	-	-	-	55	24.8
미신고시설		18	8.1	-	-	-	-	18	8.1
총계		146	65.8	66	29.7	10	4.5	222	100.0

[그림 5-22] 장애인거주시설 규모 및 유형별 장애인학대



2) 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유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학대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36.9%(45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33.6%(41건) 등의 순이며, 정서적 학대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31.0%(22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3.9%(1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는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는 공동생활가정 34.2%(26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신고시설·단기거주시설이 각각 18.4%(14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유기는 미신고시설이 80.0%(4건)로 많았고, 방임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 43.5%(20건)로 가장 많았으며, 공동생활가정 32.6%(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기 및 공동생활가정, 미신고시설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학대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와 방임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3] 장애인거주시설 유형별 장애인학대 유형

(단위: 건, %)

구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계	
장애 유형별 거주 시설	지체장애인	3	2.5	-	-	1	5.0	-	-	-	-	-	-	4	1.2
	시각장애인	3	2.5	2	2.8	-	-	-	-	-	-	-	-	5	1.5
	지적장애인	35	28.7	20	28.2	9	45.0	11	14.5	-	-	3	6.5	78	22.9
	소계	41	33.6	22	31.0	10	50.0	11	14.5	-	-	3	6.5	87	25.6
중증장애인거주시설		45	36.9	17	23.9	7	35.0	11	14.5	-	-	20	43.5	100	29.4
계		86	70.5	39	54.9	17	85.0	22	28.9	-	-	23	50.0	187	55.0
단기거주시설		9	7.4	16	22.5	-	-	14	18.4	-	-	2	4.3	41	12.1
공동생활가정		20	16.4	7	9.9	2	10.0	26	34.2	1	20.0	15	32.6	71	20.9
미신고시설		7	6.0	9	12.7	1	5.0	14	18.4	4	80.0	6	13.0	41	12.1
총계		122	100.0	71	100.0	20	100.0	76	100.0	5	100.0	46	100.0	340	100.0

사.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1) 시설유형별 응급조치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는 358건이며, 이 중 응급조치를 한 경우는 8.4%(30건)이었다. 피해장애인 응급조치는 장애인거주시설 보호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피해장애인 쉼터 6건, 기타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6건)와 비교하면 거주시설로 응급조치를 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5-44]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응급조치

(단위: 건, %)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시설		교육기관		계	
쉼터	5	19.2	-	-	1	25.0	-	-	6	20.0
거주시설	18	69.2	-	-	3	75.0	-	-	21	70.0
기타	3	11.5	-	-	-	-	-	-	3	10.0
계	26	100.0	-	-	4	100.0	-	-	30	100.0

2)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집단이용시설 학대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은 각종 상담 등의 기타지원이 43.9%(23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법지원 31.6%(168건), 복지지원 8.1%(43건), 거주지원 6.4%(34건), 심리지원 5.6%(30건), 의료지원 4.3%(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45]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

(단위: 건, %)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시설	교육기관	계	
의료	21	-	1	1	23	4.3
심리	13	11	2	4	30	5.6
거주	28	-	6	-	34	6.4
사법	110	40	7	11	168	31.6
복지	25	7	2	9	43	8.1
기타	136	51	14	32	233	43.9
계	333	109	32	57	531	100.0

기타지원을 제외한 집단이용시설 피해장애인 지원에서 사법지원은 총 168건으로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사법지원의 세부지원을 보면 고발 및 수사의뢰가 61.2%(126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26.2%(54건),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이용시설의 사법지원에 있어 고발 및 수사의뢰는 전체 장애인학대사례의 경우와 비교하면 17.3%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81건)와 비교하면 5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6] 집단이용시설 유형별 사법지원

(단위: 건, %)

구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용시설		그 외 사회복지 관련 시설		교육기관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고발 및 수사의뢰	91	64.5	24	57.1	7	87.5	4	26.7	126	61.2
후견인 선임 및 연계	1	0.7	-	-	-	-	-	-	1	0.5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	41	29.1	5	11.9	1	12.5	7	46.7	54	26.2
소송구조	2	1.4	-	-	-	-	1	6.7	3	1.5
기타	6	4.3	13	31.0	-	-	3	20.0	22	10.7
계	141	100.0	42	100.0	8	100.0	15	100.0	206	100.0





6

정책 제언

제6장

정책 제언

2019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4,376건으로 대폭 늘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의 신고 역시 1,923건으로 전년보다 증가되었다. 장애인학대의 양상은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발달장애인의 학대피해가 두드러졌고, 장애인거주시설 등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역시 소폭 증가하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부터 장애인학대 신고 활성화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피해자 지원 업무 기반 마련에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장애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우선, 장애인학대 신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래동화(심청전)를 각색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영상(“어서와 신고는 처음이지?”)을 제작하였고, 장애인 신고번호가 담긴 신고스티커를 제작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배포하였다. 또한, 읽기 쉬운 자료 ‘장애인학대 예방과 신고’와 학대사례를 각색한 애니메이션 ‘그곳이 알고 싶다. 수상한 식당’을 제작하여 장애인학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신고의무자를 위한 교육용 소책자와 PPT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신고의무자를 포함한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으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센터와 공동으로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도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학대를 알리고 신고를 독려했다.

2019년 7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인에 대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등 장애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화되었다. 그 결과 장애인학대 신고는 2018년 3,658건에서 2019년 4,376건,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018년 802건에서 2019년 858건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신고의무자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신고는 2018년 253건에서 2019년 371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진행하였고, 각 기관의 사례지원 경험과 대응방법을 논의하는 사례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연 1회 각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을 점검하여 업무수행 체계를 확립하고 상담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현장조사 시 수사기관 동행 권한이 신설되었고, 현장 출동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관계인에게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과 현장조사의 절차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학대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되어 학대 조사 시 어려움이 일부 개선되었다.

상담원의 업무 역량 강화와 사명의식, 제도개선에 힘입어 학대조사율은 2018년 80.6%에서 2019년 89.5%로 증가하였고, 학대사례 판정건수 역시 2018년 889건에서 2019년 945건으로 늘었다. 지역 및 기관별 학대사례 판정 편차는 2018년 60.6%에서 2019년 34.0%로 크게 줄었다. 또한 사례지원과정에 필수적인 상담 및 지원은 2018년 15,885회에서 2019년 24,785회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사례 1건당 상담 및 지원 역시 2018년 8.7회에서 2019년 10.7회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인식개선과 홍보강화, 신고 활성화

발달장애인 피해자 비율은 2018년의 70.4%보다 더 증가하여 2019년에는 전체의 72.0%에 달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학대 예방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당사자 대상 홍보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의 감소는 전체 장애인학대의 감소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당사자에 대한 교육, 홍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장애인학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민감도를 높여 스스로 학대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알게 된 사람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인식개선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매년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 없이는 어떠한 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 대국민 인식 개선과 홍보를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 국가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신고 활성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년 농인을 위한 문자신고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당사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학대사례에서 피해자 본인의 신고 비율이 6.3%, 발달장애인 학대사례의 경우 4.0%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인이 아닌 신고

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특히 중요하다.

모든 학대는 시간이 지날 경우 피해를 입증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 둔감해진다.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적극적 홍보와 신고 활성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집단이용시설 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집단이용시설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37.9%(358건)에 이르며, 이 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한 비율이 62.0%에 달한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비율이 전체 등록장애인의 2%가 되지 않는 점⁵⁾을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다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방적 측면에서,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거주시설 인권교육 등 여러 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학대 예방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신고의무자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도록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이 대폭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거주시설의 경우 인권지킴이단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한 인권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의 연령과 교육수준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인식개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에 있어서는 장애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정책적 측면에서,

집단이용시설에서 가장 빈발하는 학대는 신체적 학대이며 장애인거주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이용시설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가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스트레스 해소,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소진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각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는 대규모 시설을 소규모화하고, 세계적 흐름인 탈시설-자립지원 패러다임에 맞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체계 마련, 탈시설 로드맵 구축 정책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 2019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 2,618,918명,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30,152명

이와 함께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신고의무자인 학대행위자의 처벌 강화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가중 처벌되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학대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가중처벌이나 취업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신고의무자가 학대행위자인 경우 다른 행위자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더 이상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의 정비가 시급하다.

3. 경제적 착취 예방과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장애인학대 유형 중 눈에 띄는 학대유형은 경제적 착취이다. 경제적 착취의 분석 결과를 보면 피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58.3%에 달한다. 특히 노동력 착취사례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노동력 착취의 경우 피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69.1%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절반 이상의 경제적 착취 피해자가 1년 이상 장기간 피해를 입고 있지만 신고되거나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피해 기간이 10년, 15년, 심지어는 20년 이상인 사례도 흔히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착취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금융기관의 종사자 등을 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는 타인과 동행한 장애인이 이례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나, 후견인이 권한을 이용하여 배임적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곳이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한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20년 3월)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경찰에서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경찰 통보 제도가 시행되었다. 통보 대상은 장애인 사망,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으로 경제적 착취 사건 중에도 특히 노동력 착취의 경우 경찰의 통보 대상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 향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경제적 착취가 19.2%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가족의 화평을 위해 가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서 사법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가족 내의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한 친족상도례 규정을 통해 행위자가 면책되는 경우가 많다. 친족상도례 규정의 전면적 폐지가 어렵다면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경우나 해당 가족·친인척이 후견인인 경우만이라도 명시적 적용 배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가정폭력사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시대와 가족관의 변화를 고려할 때 법률 개정이나 헌법재판 등을 통한 적극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이 성숙되었다.

경제적 착취 사건에 있어 실제 적용이 어려운 노동력 착취 관련 금지행위 규정(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제2의2호)이나, 장애인 노동력 착취가 단순 임금체불사건으로 다루어져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사례, 심지어는 노동력 착취를 품앗이 등으로 평가하여 기소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면 근로감독관 등 수사 인력의 교육이나 인식개선을 위

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노동력착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대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4. 응급보호 및 자립지원 기반 마련

피해장애인 쉼터는 2020년 6월 현재 전국에 13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2019년 응급조치 실시 현황을 보면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한 비율이 2018년보다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응급조치 실시 건수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비율이 높아진 가장 큰 원인은 쉼터의 부족이다. 특히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 여성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쉼터에는 입소할 수가 없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또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에서 장애를 이유로 입소를 거절하는 상황 역시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장애인 쉼터는 전국 17개 지자체에 피해장애인의 성별을 고려하여 최소 2개 이상 설치되어야 하며, 운영을 위한 예산 등도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집단이용시설 확대 근절을 위한 대책에서도 언급되었지만 3개월에서 6개월의 쉼터 보호 이후 피해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갈 곳이 없어서 재가에서 생활하던 피해자가 거주시설에 입소하거나 또다시 학대 현장으로 돌아가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서비스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지원, 피해자의 욕구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 고립을 막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지지체계 마련에도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5.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 인력 확대 및 권한 강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전체 예산과 인력은 설치 초기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다. 기관별 상담원은 기관장과 업무 지원 인력을 제외하면 3인 수준에 불과하고, 상담원 1인당 담당사례는 40건이 넘고 있으며 상담 및 지원횟수는 연간 459.0회에 이른다.

인력과 기관 숫자의 증가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진다. 장애인학대는 특성상 빠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이 흐지부지되거나 피해를 제대로 밝히기 힘든 경우가 태반이다. 피해자 지원 또한 필요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시기를 놓쳐 효과를 보기 어렵다. 2019년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이 경기도의 지원으로 신규 개관하였다. 경기지역 전체의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2018년 395건에서 2019년 981건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조사 실시비율 또한 24.9% 높아졌다. 단순히 기관이 하나 신설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기관이 늘어나고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숨겨져 있었던 문제가 드러나고, 양질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성과가 확산될수록 장기간 장애인학대가 드러나지 않고 수년간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예산과 인력 확대가 필요한 이유이다.

2019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대응이 향후 공공중심으로 개편된다.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장애인학대인 동시에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아동 학대사건에도 개입하고 있으며, 2019년 피해자가 아동인 학대사례는 2018년에 비해 증가되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후 장애아동 학대사례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담당하게 될 지자체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어떠한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지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아동 학대사례에 개입하면서도 미성년자인 피해아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목적과 설치 배경을 고려할 때 장애아동 지원에 필요한 권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록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개 및 현황

-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권리옹호 목적으로 2017. 1. 1.부터 설치·운영되는 법적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연구, 프로그램 개발, 지역기관 지원 등을 담당,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개별 학대사건에 대한 지원을 실시

구분	주요 업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능력개발 •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정책의 개발 •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제공 • 장애인권익옹호에 관한 국제 교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피해장애인 보호 및 피해회복 •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현황(2020. 6. 1. 기준, 19개)

기관명	전화	주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6951-1790	(우 07205)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선유도코오롱디지털타워 1412호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3453-9527	(우 06278)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대치동)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1-715-8295	(우 47511) 부산 연제구 법원로16번길 10, 금복빌딩 6층(거제동)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3-716-8295	(우 41242)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2, 서한코보스카운티 403호(신천동)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2-425-0900	(우 22134)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타워 1801호(주안동)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2-716-1633	(우 61960) 광주 서구 상무대로 719, 나라빌딩 2층(치평동)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2-631-5667	(우 34541) 대전 동구 계족로 499, 루루빌딩 3층(용전동)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2-260-8295	(우 44669) 울산 남구 중앙로 311, 연세타워 2층(신정동)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4-905-8295	(우 30150) 세종 한누리대로 2143, 금강시티타워 1동 604호(보람동)
경기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1-287-1134	(우 16639)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리 208호(오목천동)
경기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1-851-1007	(우 11813) 경기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0, 성산타워 301호(민락동)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033-264-8296	(우 24390) 강원 춘천시 퇴계로 199, 경림빌딩 2층(석사동)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3-287-8295	(우 28797)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63번길 61-54, 라데팡스타워 303호(분평동)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41-551-8295	(우 31106)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2길9, 팰리스피아 110호(두정동)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3-227-8295	(우 5496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석산2길 17-9, 화린빌딩, 4층(효자동3가)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1-285-8298	(우 58615) 전남 목포시 영산로 633, 힐링타워 2층(석현동)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4-282-8295	(우 37662)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4-5(대잠동)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055-603-8295	(우 51515)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5, 리제스타워 210호(중앙동)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064-900-9695	(우 63256) 제주 제주시 청굴로5길 21, 1층(일도이동)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인 쇄 일: 2020년 6월

발 행 일: 2020년 6월

발 행 인: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편 집 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은종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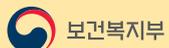
편집위원: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나영, 김정혜, 이미현, 이정민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12)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02-6951-1790)

인 쇄: 블루애드(02-6082-7076)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